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무역클레임 및 중재
50문 50답

C O N T E N T S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무역클레임 및 중재
50문 50답

발행인 손경식
편집인 이동근

발행처 대한상공회의소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전화 02-6050-3374
팩스 02-6050-3700

디자인 (주)고신미디어
전화 02-428-9461

I 수출입계약 관련 클레임

Q1 대리점계약과 판매점계약	10
Q2 FOB조건과 CIF조건	12
Q3 독점대리점 계약	14
Q4 구두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16
Q5 수출대행계약	20
Q6 오퍼상의 당사자 적격문제	23
Q7 OEM 수출에서의 권리침해	25
Q8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합리적 대응	28

II 대금결제 관련 클레임

Q 9 각종 미수금의 해결 방안	34
Q 10 중국 무역 분쟁 해결 방안	37
Q 11 송금방식 거래 시 유의사항	41
Q 12 D/A조건 수출계약시 은행의 담보 요청	43
Q 13 D/P에 의한 결제방식의 문제점	46
Q 14 추심은행의 실수에 의한 물품대금 미회수	49
Q 15 수입자가 서명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신용장 조건	52
Q 16 개설은행의 서류 불일치 통지 시한	54
Q 17 은행의 L/G발급 후 지급거절 가능 여부	56
Q 18 신용장의 조건 변경	58
Q 19 하자 네고와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61
Q 20 신용장의 유효기일	64

C O N T E N T S

III 무역운송 관련 클레임

Q21 B/L의 발행일	68
Q22 동일항차, 동일선박상에 이루어진 분할선적	70
Q23 앞선 할부선적 위반시 뒤의 선적분에 대한 계약 해제 여부	72
Q24 운송인의 화물 분실 시 책임 소재	74
Q25 컨테이너의 하자로 인한 화물손상 책임	77
Q26 CIF조건에서의 화물멸실 책임	79
Q27 운송회사의 도착지연에 관한 클레임	82
Q28 B/L과 FCR의 차이	85
Q29 Surrender B/L과 수입화물선취보증서	89
Q30 항공운송 중 박스 손상 발생	92

IV 전자무역 관련 클레임

Q31 온라인 무역업체의 카드사기	98
Q32 전자무역에서의 대금지급 거절	100
Q33 가격 오기에 따른 계약 취소 청구	103
Q34 구매한 물품이 표시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급된 경우	106

V 무역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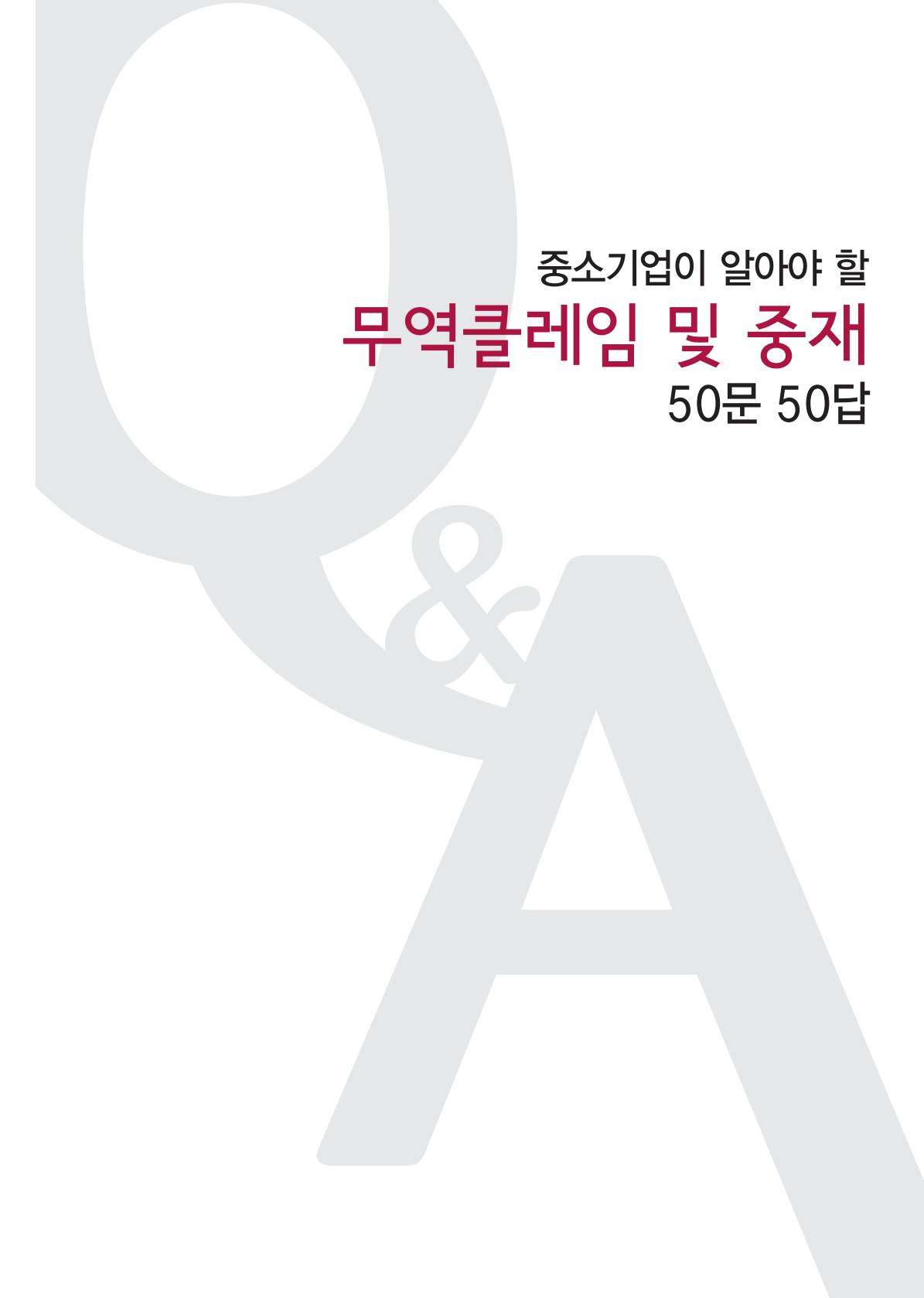
Q35 사기거래로 법원에서 지급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110
Q36 지급거절된 수입물품의 반송	112
Q37 위조된 서류에 대한 대금지급정지 가처분신청	114
Q38 선하증권 원본을 수입상에게 직송하도록 한 신용장	116
Q39 운송서류 위조	118
Q40 품질하자로 이유로 대금결제 거부	120

VI 중재와 클레임 제기 절차

Q41 중재란?	126
Q42 소송과 비교하여 무슨 장점이 있는지?	130
Q43 계약서 작성시 중재조항 내용은 어떻게?	132
Q44 표준중재조항에 반대할 경우 대처 방법은?	134
Q45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138
Q46 뉴욕협약	140
Q47 중재판정 취소는 가능한지?	142
Q48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클레임 해결 방법은?	146
Q49 알선을 활용하려면?	148
Q50 클레임을 제기받을 때와 제기할 때 대처 방안은?	153

Appendix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157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무역클레임 및 중재
50문 50답

I 수출입계약 관련 클레임

Q1 대리점계약과 판매점계약	10
Q2 FOB조건과 CIF조건	12
Q3 독점대리점 계약	14
Q4 구두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16
Q5 수출대행계약	20
Q6 오퍼상의 당사자 적격문제	23
Q7 OEM 수출에서의 권리침해	25
Q8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합리적 대응	28

Q & A

Q1

대리점계약과 판매점계약

대리점계약과 판매점계약의 법적 차이점?

사례

독일기업의 제품에 대한 한국내 판매를 위해 독일기업과 협상을 해오던 한국의 수입상은 최근 계약체결단계에서 계약서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독일기업과 논의 중이다. 당연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믿었던 한국의 수입상은 독일 측에서 대리점계약이 아닌 판매점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대리점계약과 판매점 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A

대리점계약은 대리점에게 법률상의 대리권이 부여되나 판매점계약은 판매인에게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대리점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본인(매도인) 대 대리인이라는 관계에서 본인(매도인)이 대리점에 본인(매도인)의 대리인으로서 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수권행위에 의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본인(매도인)과 대리점간에는 상품의 매매가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매수인이 별도로 존재한다.

판매점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매도인 대 매수인 간 특정상품에 관하여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정한 계약으로서 개개의 매매계약의 기본조건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판매점은 자신의 이름과 비용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직접 매수하여 제3자(고객)에게 전매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리점계약의 경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실수요자이므로 매도인과 대리점 간에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리점은 매도인을 대신하여 상품을 팔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이다. 따라서 대리점계약은 본인(매도인)의 대리점에 대한 수권행위에 기하여 본인과 대리점 간의 내부관계를 규정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판매점계약에서는 매도인과 판매점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이다. 따라서 매도인과 실수요자는 직접적인 당사자관계가 아니다.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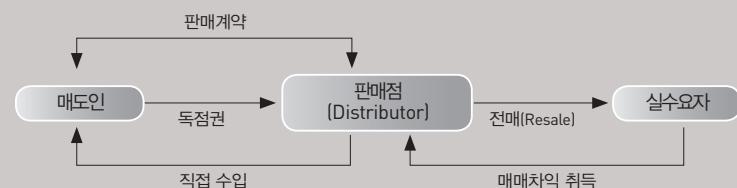
대리인에 관한 민법규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② 전 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참고

대리점과 판매점의 비교



대리점과 판매점 계약서 자료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무역상담/실무 → 서식 · 계약사례 → 국제무역계약사례 → 매매관련용역
- 대한상사증재원(www.kcab.or.kr) → 계약서 작성 → 표준계약서

Q2 FOB 및 CIF 계약

사례

저희는 중국에 의류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Offer 상에 가격을 제시할 때 FOB와 CIF 중 수출상 입장에서 어떤 조건이 유리한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FOB조건과 CIF조건에서는 양자가 공히 수출상과 수입상의 책임분기점이 수출항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이다. FOB조건은 수출항에서 선적비용까지만 가격에 포함되었고, CIF조건은 도착항까지 해상운임과 보험료까지 가격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어느 가격이 유리하고 불리한 것은 없다. 다만 수출상은 FOB조건은 가격책정이 보다 간편하고, CIF조건은 운송료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이익이 될 것이다.

TIP

CIF와 FOB의 차이점

무역거래에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수출상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디까지이고, 자신의 이익은 얼마로 할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세분하면 (1) 매입원가(또는 제조원가), (2) 공장으로부터 상품을 인수하여 선적을 완료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 즉, 선적제비용(수출용 포장비+국내운송비용+검사비용+창고료+수출통관비용+선적비용), (3) 수출경비(통신비+금리+점비) 및 수출상의 이익, (4) 수출지에서 수입지까지의 운송비 및 보험료 등이 있다. 이중에서 FOB 가격은 수출상이 (1)+(2)+(3)의 비용과 이익만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가격이고, CIF조건은 FOB 가격+(4)의 비용까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정하는 가격이다.

용어

INCOTERMS(인코텀스; 무역조건해석에 관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당사자 간 무역조건의 해석기준에 가장 많이 채용되는 대표적인 국제상관습규칙이다. 제정목적은 세계 각국에서 관용되고 있는 무역조건의 용어나 약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무역업자 간에 발생하는 오해나 분쟁 및 마찰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가마다 다른 거래관행에 대한 불안전성을 해소하고 국제무역거래의 관습 및 용어의 국제적 통일을 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현재 인코텀스 2000은 ICC에 의해 제6차로 개정된 2000년판 INCOTERMS가 적용되고 있다.

FOB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물품이 지정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CIF 운임보험료포함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무역조건이며 매도인이 지정한 목적항 구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한다.

Offer(청약)

청약은 청약자(offerer)가 피청약자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이다.

Q3

독점 대리점(Exclusive Agent)계약

독점 AGENT계약을 체결한 후 동 AGENT를 통하지 아니하고 해당지역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가?

사례

한국기업 A사는 자사 물품에 대한 미국 내 판매를 위해 미국기업 B사와 협상을 통하여 독점 Agent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A사는 홍콩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동 물품을 홍콩에 수출하였고, 홍콩바이어는 동 물품을 다시 미국기업 C사로 수출을 하였다. 이 경우에 홍콩바이어가 미국의 Agent인 B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해당지역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가?

A

독점계약에서 통상 독점계약자 이외의 자를 통한 공급은 금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지만, 수출상 본인이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수출상이 직접 공급하여도 문제가 없다. 이러한 모든 것은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런데 수출상이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고 수출상으로부터 공급받은 제3자가 수출상과 아무런 협의 없이 독점 지역에 동일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계약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 독점 계약서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나, 규정이 없을 경우 수출상의 관여 없이 제3자가 임의로 동일 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수출상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통상 독점계약서에는 직·간접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모든 경우에 수출상과 독점대리점사이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건에서도 분명 그러한 조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독점지역이 아닌 제3지역으로 매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매수인이 독점 지역으로 재판매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고 수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TIP

독점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독점계약은 한번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방과 배타적으로 서로 구속되어 되므로 신중하게 체결하여야 하며 독점계약 체결시 특히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독점기간

독점권을 주는 경우와 받는 경우가 서로 다르다. 주는 경우에는 자신의 품목이 상당기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짧게 하고, 별로 경쟁력이 없는 경우에는 기간을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 독점권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2. 독점지역

독점권을 받는 경우에는 지역을 넓고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 미국, 중국 혹은 미주지역, 유럽지역 등으로 받으면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좁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북경지역, 뉴욕지역 등으로 부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독점품목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Item No. 000과 같이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독점권을 부여받는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독점권자가 취급하고 있는 모든 품목 내지 항후 신제품이 개발되는 경우에는 그 신제품까지로 해두면 유리하다.

4. 최소 주문량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최소 주문량을 규정해두는 것이 좋다. 이 규정방법도 한번에 많이 규정할 수도 있으나 점차적으로 늘려서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다.

5. 계약의 취소권

상대방이 어떠한 계약위반을 하면 나에게 계약의 본래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인지 판단하여 그러한 행위를 상대방이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두는 것이 좋다.

6. 손해배상의 예정 및 위약금

상대방이 독점권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리인 자신의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전에 계약상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두거나 위약금규정을 두면 편리하다.

Q4 구두계약 구두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

사례

해외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국내 수요자들에게 공급해 오던 A사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B사로부터 해외에 좋은 원자재가 있으나 신용장을 개설할 입장이 되지 못하여 수입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자신을 대신하여 수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사는 B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의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였다.

A사의 물품 수입은 특별한 계약서 없이 단순히 한국 B사가 이 물품을 인수한다는 구두 상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 졌는데, 막상 물품 수입이 완료되고 물품을 검사한 한국의 B사는 물품이 자신들이 원하던 품질의 물품이 아니라고 하면서 물품 인수를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수입상인 A사는 해외의 공급사에게 품질불량에 관한 클레임을 제기하였으나 해외 공급사는 계약시 제품의 품질에 관한 특정한 명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A사의 클레임 수락을 거절하였다. 이 경우 A사는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상받아야 하는가?

A

무역거래, 특히 국내거래에 있어 실제 수요자가 아닌 수입상사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실제 수요자와 품질 및 상품 인수 등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친분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두계약으로 물품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이러한 경우 수입상에게 어떠한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위 사례는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본래 계약은 구두로 체결되어도 그 효력이 있으나,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계약관련 분쟁 발생시 입증문제이다. 본 건과 같이 물품 하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A사와 B사의 권리·의무관계 등은 서면으로 작성해 놓지 않으면 후일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다.

두 번째로는 구두로 합의할 수 없는 조항들이 있다. 그 하나가 관할조항으로서의 중재 조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그 법적효력이 있다. 그 외에도 준거법, 불가항력, 완전 조항 등은 구두로 체결될 조항들이 아니다.

TIP

무역계약의 성립에 관한 민법규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 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② 전 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31조(격지자 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532조(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33조(교차청약)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 한다.

참고

무역계약서 작성요령

무역계약에서 계약조항이란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계약당사자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 당사자가 이러한 조항들을 이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확실하게 서면으로 약정한 계약서가 없을 경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첫 거래인 경우는 물론 상호간에 신뢰가 쌓였다고 해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통상 무역계약의 7대 조건이라는 품질, 수량, 가격, 결제, 선적, 포장 및 보험조건은 다른 계약의 조건들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무역의 특성을 잘 고려하여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에 계약의 일반조건들은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 이행 시 그 구제방법에 대한 내용들로서 클레임조건 및 분쟁해결 조건(중재, 준거법, 불가항력, 완전조항 등) 등을 잘 작성하여야 한다.

무역계약은 해외시장조사, 거래선 확보 및 거래제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회 등을 통해 계약당사자가 정해진 다음 거래당사자 쌍방이 계약 조건 내용에 관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 등의 협상 단계를 거쳐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이러한 계약은 결국 당사자들의 협상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무역실무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알고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

무역계약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항

계약당사자,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문언, 계약체결일자, 유효기간, 날인 또는 서명

2. 물품에 대한 조항

- 품질조건 : 품명, 규격, 등급 등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품질결정시기 그리고 품질결정방법 등
- 수량조건 : 중량, 용량, 개수, 길이 등의 표시단위로 수량 확정, 별크화물의 경우 과부족 용인약관(M/L Clause), 개산수량조건 등
- 가격조건 : 구체적 통화로 표기된 물품의 단가를 정하고, 요소비용 부담의 책임을 정하기 위해 INCOTERMS상 13개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를 선택(FOB, CIF 등)
- 포장조건 : 포장재, 포장방법, 포장의 크기, 확인 등

3. 계약이행조항

- 선적조건 : 선적일자(기한), 선적일자 입증방법, 선적수단 등 선적방법, 선적항 및 도착항, 분할선적 또는 환적 허용여부 등
- 결제조건 : 신용장 방식, 추심결제방식(D/A, D/P), T/T 송금방식 등 결제방법 및 환위험 회피를 위한 결제 통화 그리고 선불, 일람불(at sight), 후불 등 지급시기
- 보험조건 : 보험금액, 보험비율, 보부범위(ICC A clause, B clause, C clause 혹은 A/R, WA, FPA) 등

4. 계약불이행과 권리구제 등 기타 관련 조항

- 클레임조항 : 클레임 제기 기한 및 제기 방법 등의 명시
- 중재조항 : 소송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중재로 해결한다는 조항. 국내기업은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
- 손해배상액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민법 398조 1항). 이와 같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목적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의 발생과 그 금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은 실제 곤란하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생길 염려가 있게 되므로, 그러한 입증의 곤란을 배제하고 다툼을 예방하여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하고, 또 손해배상액을 예정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의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자유로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민법 398조 2항), 또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당사자의 경솔·무경험 등을 이용하는 폭력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무효가 된다(104조).
- 불가항력조항 : 계약체결 후 인력으로는 통제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당사자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계약에 정해져 있는 의무의 이행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연된다든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이를 보통 불가항력이라고 부른다. 불가항력을 영어로는 'Act of God'이라고 하나 오늘날의 국제계약에서는 이 말보다 프랑스어인 'Force Majeure'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자는 천

재지변 등 전통적인 불가항력적 사태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개념인데 반해 후자는 그들 외에 전쟁, 동맹파업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태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이다.

- 준거법 : 계약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하며, 계약내용 및 그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러한 분쟁을 해석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된다. 국제거래는 2국 이상의 국가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국제거래에서의 분쟁에 있어서 법적 기준은 준거법(governing law; applicable law)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준거법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므로 주의를 요하고 있다.

국제사법에 의하여 어떤 법률관계에 적용될 법률. 예컨대 능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본국법을,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주소지법을 적용한다고 한 경우에 그 적용될 본국법·주소지법을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이라 한다.

준거법 중 중요한 것으로 법정지법(法廷地法)·본국법(本國法)·주소지법·소재지법·행위지법·불법행위지법 등이 있다. 국제사법은 이러한 준거법을 지정하는 법이다.

- 완전조항(entire agreement) 등 : '완전합의' 조항은 합의된 내용은 모두 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체결 이전의 합의조항은 서면에 기재된 것이든 구두에 의한 것이든 모두 무효라는 것을 나타내는 조항이다.

Q5 수출대행계약 수출대행자의 책임

사례

스위스의 A사는 한국의 O사로부터 탄력붕대 12,000개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 O사를 수익자로 하는 양도가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국내 O사는 무역경험이 없어 국내의 K사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신용장을 K사에 양도하여 K사가 서류상의 수출자로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계약물품을 수출하였다.

그러나 A사는 도착된 물품을 검사한 결과 전량이 불량품임을 발견하였다. 이에 A사는 수입을 대행했던 K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였고, 이에 K사가 자신들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K사 자신의 책임여부를 질의해 왔다.

A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신용장을 양도받은 대행회사는 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니지만 수출 품의 하자 등을 이유로 한 해외 바이어로부터의 클레임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책임 관계가 다르다. 즉, 대행업자는 무역거래과정 중 개입정도에 따라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개입된 경우에는 책임이 없지만, 신용장을 양수받고 선적하는 등 개입정도가 큰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예전의 판례에서는 수출대행자에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 하였으나,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사례에서는 대행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본 건에서는 대행자가 신용장을 양수받고 선적을 행하는 등 수출활동에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사례에서는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영미법의 금반언 법리에 따라 수출대행업자는 상관습 상 해외 바이어의 클레임에 대하여 1차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행계약 체결 시 단순대행이라는 사실을 바이어에게 통지하여 면책사실을 미리 알려놓는 것이 좋으며,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대행회사는 수출실적의 증대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대행을 의뢰하는 위탁자의 신용, 재무 상태를 조사할 것과 바이어의 클레임에 대비한 구상권 행사조항을 대행계약서상에 마련해 두고, 필요한 경우 담보권 실행을 위한 조치도 강구해 두는 것이 수출대행에 따른 바이어의 클레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수출대행자

1. 수출대행의 정의 및 유형과 법률적 성질

수출대행이라 함은 국내의 매도인이 외국의 매수인과 사이에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국내법의 규제상 적법하게 수출할 수 없거나 자금조달의 편의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수출경험이 있는 다른 무역업자에게 그 신용장을 양도하고 그자의 명의로 당해 계약 물건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수출대행을 의뢰하는 업자가 수출신용장을 개설 받은 때에는 수탁자인 대행자와의 사이에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신용장양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수출대행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 기본형(단순대행)

신용장을 위탁자명의로 개설 받아 이를 수출입업자에게 양도하되 위탁자가 일체의 책임하에 수출물을 제조 가공하여 양수인인 대행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출 및 선적에 따른 모든 절차는 위탁자가 맡아서 자기의 비용으로 하게 되며 수탁자인 대행자는 제반서류상의 명의만을 작성하여 주는 것이다.

나. 자금지원형

전 항의 방식에 따라 명의를 빌려 주는 이외에 수출금융의 융자 즉 대행자의 자체자금을 지원해주는 등 수출 및 선적절차도 도와주는 방식이다.

다. 내국신용장 개설형

수출신용장의 수의자가 대행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하고 다시 대행자로부터 이를 근거로 하여 완제품내국신용장을 발급받고 이에 의하여 소요원자재를 구입하여 수출물을 제조 가공하여 대행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의 수출대행을 하는 목적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신용장의 환어음이 Nego(매입)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 대금회수를 확실히 하고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자기명의로 금융의 융자,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자 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신용장 직접 개설형

위탁자가 신용장을 개설받아 이를 대행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거래선과 계약체결만 하고 신용장은 바로 대행자 앞으로 개설하게 하는 방식이다. 기본형의 유형으로 양도절차의 번거로움과 비용을 더는 이점은 있으나 바이어의 양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 중개형

위탁자가 대행자를 통하여 Selling Offer를 발급함으로써 상당이 진행되어 대행자가 바로 매수인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장을 대행자 앞으로 개설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해외 정보에 밝은 종합상사에게 제품이나 바이어 선정 등의 역할을 맡기고, 바이어가 선정된 이후의 가격, 수량, 규격등 계약의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이 맡도록 할 경우에 이용된다. 수출대행의 법률적 성질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위탁받은 어느 물품의 수출과 그 대금회수를 대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당해 물건의 수출에 따른 수출실적과 일정한 수수료를 줄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도급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대행자는 수출계약의 이행의 보조와 대금수령을 보조하는 계약 관여자라 할 것이다.

2. 신용장 양도의 효과

신용장 양도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여러 설이 있지만 수의자가 발행은행에 대하여 취득한 추상적 권리의 양도로서 일종의 채권양도계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상거래에서는 매매계약이 위주가 되며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래의 원활화를 위하여 생겨난 것이 신용장제도이다. 그러나 일단 신용장이 발행되면 계약당사자가 아닌 은행이 신용장의 당사자가 되어 신용장거래의 한계 내에서 독특한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신용장 양도의 효과에 관한 국내법원의 판례를 보면 매도인, 매수인, 신용장 양수인 3자의 합의가 있어야 매매계약이 양도될 수 있으며 신용장의 양도로 인하여 당연히 매매계약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라 고 한다.

3. 명의대여자의 책임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24조는 외관을 신뢰한 제3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영미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에 해당한다.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영업주체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을 갖기가 수월하지 않고, 오히려 막연히 영업주체를 인격화하여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고, 더 나아가서 상거래상의 복잡성이 더해감에 따라 외관적 사실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수출대행회사에게 상법 제24조를 적용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대행회사의 클레임 대책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이어의 클레임에 대하여 대행회사가 상관습 상 혹은 명의대여자로서 수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판정·판례의 추세이기 때문에 대행회사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처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을 대행하는 회사는 바이어로부터 사전에 단순절차대행이란 확인을 받아놓거나, 사후에도 바이어가 자기를 단순대행자로 믿고 원계약자와 클레임을 해결하려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클레임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금반언의 법리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estoppel)]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모순된 선행행위를 한 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영미법에서 "estoppel의 법리"로 발전된 것이 독일법에 수용되어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가 되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Q6
오퍼상의 법적지위
오퍼상의 당사자 적격문제

사례

국내에서 오퍼상을 경영하는 K는 실수요자 P산업으로부터 중국산 의류를 수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대금지급방법은 취소불능 신용장으로 하는 조건이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K는 중국에 소재하는 T사에 의류에 관한 물품매도계약서(오퍼장)를 발행하여 이를 P산업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P산업이 일부 의류에 대해서만 신용장을 발행하고 나머지 의류에 관해서는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자, K는 P산업에 대하여 미발행분에 관한 수입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한편, 공급업자 T사는 K로부터 주문받은 의류 전량을 선적부두에까지 운반하여 보세구역 내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P산업의 계약위반으로 미화3만2천불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T사는 오퍼상 K를 상대로 위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하였는데, K는 이를 수락하고 우선 USD15,000을 배상해 주었으며 잔액은 추후 배상하기로 하였다.

K는 T사의 손해가 P산업의 계약위반 때문이라고 보고 P산업을 상대로 하여 자신이 T사에게 수락한 클레임액 전액을 보상하라 하였으나 P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K사는 이 클레임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

A

오퍼상은 외국의 물품 공급자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물품매도계약서(오퍼장)를 발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퍼장을 발행·교부한 것은 외국의 물품공급자인 수출상을 대리하여 한 행위이다. 따라서 오퍼상이 수출상을 대리하여 국내 수입상과 체결한 수입계약의 효력은 대리행위의 본질 상 본인인 외국의 수출상에게 미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퍼상은 무역계약의 대리인이다.

위 사례에서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K사는 T사에게 책임지지 않아도 될 손해이며 그 손해는 당연히 실 계약자인 P산업이 부담할 것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고 K사는 자신이 마치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손해배상을 T사에 약속하고 일부 지급 까지 하였으므로 이제 와서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T사에 할 수 없게 되었다(이를 금반 언의 원칙이라 한다). 아울러 K사는 본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고, T사와의 약속은 자신의 법적 지위인 계약체결의 의무를 벗어난 월권 행위로서 P산업에게는 클레임 청구를 할 수 없다.

TIP

오퍼상의 책임한도

오퍼상이란 무역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해당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책임과 발생한 비용은 권한을 위임한 본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도 권한을 위임한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대리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질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클레임에 대한 권한까지 위임받아야 한다.

Q7 OEM 수출계약 OEM 수출에서의 권리침해

사례

국내수출상 A사는 미국수입상 B사와 OEM방식에 의한 수출계약서를 작성하고 T-shirt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물품공급이 지연되어 선적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 수입상은 계약서상 선적기일이 지났으므로 계약목적물을 선적할 필요가 없다면서 계약을 취소하였다. 이에 수출상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제작된 물품을 전매할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출상은 이 제품을 미국지역에 전매하기 위하여 수입상에게 전매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수입상은, 수출상이 미국내에 전매를 할 경우,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전매 불가 통보를 하여 수출상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A

국내수출상은 본 상품을 전량 폐기하거나 다시 반송하여 상표를 바꿔 달아 전매하여야 한다. 이는 OEM수출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례로서, 수출상은 해외바이어와 협상을 통하여 상당한 할인을 해주더라도 바이어가 인수하도록 하여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제 지적재산권으로부터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인데, 이는 상표나 브랜드 등도 지적재산권의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약서상에 전매조항(Product Release Clause)과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 등을 적절히 잘 활용하여야 한다.

TIP**OEM 계약시 전매조항**

OEM수출이란 외국의 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품에 외국 수입업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기 때문에 만일 어떠한 이유로 외국의 수입업자가 물품의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는 다른 업자에게 전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 심한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만일 수입업자가 어떠한 이유로건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그 상표를 부착한 상태로 다른 바이어에게 전매할 수 있음을 명기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OEM 계약시 전매조항 및 권리침해조항의 예문**

OEM방식에 의한 수출품은 수입상의 상표나 브랜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수입상이 마켓 클레임을 제기하거나 운송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제품인수 및 물품대금 지급을 거절할 경우에 수출상은 큰 손해를 입는다. 이와 같이 수출상에게 발생하고 있는 OEM방식의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출 시에 선적기일 엄수와 운송서류작성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OEM방식으로 수출을 할 경우 유의사항으로는 계약서에 바이어가 어떠한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당 제품의 인수를 거절할 경우 등 제품을 제3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는 문언을 명시하여야 하고 아울러 수입상은 수출상의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매조항(Product Release Clause)을 삽입해야 이로 인한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문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매조항(Product Release Clause)

"In the event of cancellation of this contract or rejection of the goods, seller shall be entitled to resell or otherwise dispose of the goods to third parties, regardless of the trademark, design, patent, copyright, utility model etc., thereon buyer shall not raise any objection to such disposition."

또한 매수인이 지정한 상표, 디자인, 특허 및 기술 등을 채택하여 제조·공급한 물품에 향후 예기치 않은 특허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미리 계약서 내에 명시하여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권리침해조항이라 한다. 즉 매수인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제3자가 특허권을 보유한 경우라도 매도인은 이에 대해 면책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활용방안으로 공업소유권 등에 관한 권리침해에 대해 면책문언을 약정한 것과 미국이나 선진국 등에 수출할 경우 필히 동 조항에 대한 약정을 계약서에 삽입시켜야 한다.

권리침해조항(Infringement Clause)

"The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to the Buyer for any infringements, alleged or otherwise, of patent, utility model, design, trademarks or any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 or copyright,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s, except for infringements of any Korean patent, utility model, design, trademarks or copyright. The Buyer shall, however, hold the seller harmless from any such infringements of the said Korean right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any instruction given by the Buyer to the Seller regarding design, copyright, pattern or specification."

용어**OEM : (주문자상표부착 거래,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출업자가 매매계약상에 수입업자가 요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Q8 품질불량 클레임 품질불량 클레임에 대한 합리적 대응

사례

일본 A사는 한국 B사가 생산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그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B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사는 계약내용에 따라 제품의 생산을 완료하였고 약속된 날짜에 선적을 마쳤다. 수출한지 5개월만에 수입업자는 차기거래를 요구하여 왔고 수출자는 이번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이를 정해진 날에 선적하였다. 그러나 수입자는 최초에 수입한 물품의 품질불량을 이유로 차기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A사로부터 최초 수입한 물품의 품질이 문제가 되어 자회사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손해가 그들이 지급하여야 할 차기거래의 물품대금보다 크다는 것이다.

B사는 A사의 계속되는 클레임 청구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또한 차기 선적 분에 대한 물품대금을 어떻게 회수하여야 하는지?

A

한국의 B사가 선 수출한 물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매매계약인 차기 거래 건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상계 처리하겠다는 수입업자 A사의 주장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만약 이러한 손해배상을 한국의 B사가 인정하고 일본의 A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본의 A사는 차기 거래에 대한 물품대금을 계약서의 물품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먼저 이루어진 거래에 대한 클레임의 제기는 차기 거래의 물품대금 지급과는 별도로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실무상으로는 본 상담 건의 경우와 같이 차기 거래의 물품대금을 담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금지급조건이 이러한 후지금 송금방식이거나 D/A방식인 경우에는 수입자는 물품대금을 담보로 이러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특히 마켓 클레임인 경우도 상당수 있다.

본건에서는 일단 한국의 B사는 A사에게 클레임의 제기시한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면

서 이미 A사는 클레임의 제기권을 상실하였다고 답변하여야 한다. 또한 설사 A사의 클레임이 사실이어서 B사에게 하자담보책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래도 A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억지를 쓰는 경우에는 결국 일본의 A사의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참고

1. 하자의 입증

하자의 입증을 위하여는 통상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공인된 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Survey Report)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사전에 당사자가 합의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 이용할 검사기관을 사전에 약정해 두는 것도 사후 분쟁 해결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검사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검사 년, 월, 일, 및 검사인의 서명, 검사장소, 검사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품 도착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한 검사는 정확하다 할 수 없으며 검사 장소가 이동된 경우라면 동일 물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마켓 클레임

마켓 클레임이란 수입업자가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시황에 따른 손해를 보거나 또는 극히 미소한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업자의 사소한 과실을 구실로 객관화를 요구해 오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오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마켓 클레임은 수입업자의 부당한 클레임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마켓 클레임을 제기하여 오는 경우, 수출업자는 입증자료를 요구함은 물론 검사보고서 등이 제시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여 정당한 클레임인가 아니면 마켓 클레임인가 그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

실제 실무에서는 클레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좋은 경우에는 클레임화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사소한 하자를 트집잡아 클레임으로 발전하게 된다.

3. 하자의 통지시기

물품인도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클레임이 제기되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위 상담건의 경우 수입자는 물품을 수령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차기거래를 요청하고 그 차기거래의 물품대금 지급의 시점에 이르러 물품의 품질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마켓 클레임일 가능성이 크다.

용어

무역계약의 당사자들이 계약서 상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을 약정해 둔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상의 임의규정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적용이 된다. 위 사례의 경우 국내업체인 B사가 일본 A사와의 계약서 상에 클레임 조항을 삽입하면서 클레임의 제기기한을 물품 도착 일로부터 일정한 기일 내로 약정해 두었다면 물품을 수출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수입업자가 물품의 품질을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하여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만약 물품이 변질되기 쉬운 물품일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유리하다. 따라서 한국의 B사는 차기 거래 시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품질불량에 관한 클레임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매수인의 하자통지 시기와 관련한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의 수량부족 또는 하자를 발견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두 가지 의무, 즉 수령한 물품을 자체 없이 검사할 의무(CISG 제38조 1항)와 나아가 검사결과 발견한 수량부족 또는 하자를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통지할 의무(CISG 제39조 1항)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상법 제69조에서도 매수인의 목적을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69조 1항) “매수인이 검사의 무와 하자통지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69조 1항 1문 후단) 즉, 설사 물품에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만약 매수인이 이를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내에 검사하여 그 결과를 매도인에게 즉시 통보하는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일본 상법상의 규정 또한 위 한국상법의 규정과 동일하다.

4. 클레임의 해결방법

본간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① 우선 대한상시중재원의 대외알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알선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만약 수입자가 알선 절차에 응하지 않아 합의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② 국제채권추심회사를 이용(서울, 고려, 미래 신용정보주식회사, P&L Korea 등)하는 방안도 있다. ③ 위의 두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결국 수출자인 B사는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만약 계약당시 계약서 상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중재합의를 한 경우라면 계약서 상에 약정된 중재기관에 중재신청을 하여 본 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건의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의 해결방안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알선 단계에서 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실패할 경우 수출자인 B사는 불가피하게 국제채권추심회사를 이용하거나 국제소송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무역클레임은 통상 당사자 간의 협상이나 알선과 같은 우호적 분쟁해결방법에 의해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국제채권추심회사를 이용하도록 해 보고 그래도 안될 경우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중재 신청을 할 수 없다면 분쟁 당사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상대방 국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그러나 무역 분쟁은 상이한 국가 간의 분쟁이므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 또한 많이 소요된다. 이러한 연유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분쟁 당사자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계약 당시에 분쟁해결의 방법으로써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국내거래는 물론이거니와 국제무역에 있어 사후의 분쟁 발생 시에 효과적 분쟁해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p.157 부록에 협약 번역문 첨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동산물품의 매매계약에 관해 그 성립문제와 매도인 및 매수인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2005년 3월1일부터 이 협약이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재 협약 체결국은 67개국이다.

CISG

CISG는 물품매매계약에 대하여 적용되고 노무 기타 서비스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 CISG에서 특히 유의할 점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체약국인 일본, 영국과 계약하면서 CISG를 적용할려고 할 경우 준거법을 한국법으로 합의하거나, 계약서에 CISG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한다. 2) 서면으로 준거법을 합의할 경우에 팩스와 이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제19조를 특별히 주의하여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서류에 변경이 있는지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없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4) 승낙이 연착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의 성부에 대하여 상대방과 반드시 확인을 해 두어야 한다. 5) 물품의 부적합이 있으면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적합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라는 단기간 내에 통지를 하여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매수인의 입장에서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특정이행이 가능하도록 계약체결시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7) CISG에서 이자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에서 이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8) 매도인에게도 물품의 보관의무가 인정된다.

II 대금결제 관련 클레임

Q 9	각종 미수금의 해결 방안	34
Q10	중국 무역 분쟁 해결 방안	37
Q11	송금방식 거래 시 유의사항	41
Q12	D/A조건 수출계약시 은행의 담보 요청	43
Q13	D/P에 의한 결제방식의 문제점	46
Q14	주심은행의 실수에 의한 물품대금 미회수	49
Q15	수입자가 서명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신용장 조건	52
Q16	개설은행의 서류 불일치 통지 시한	54
Q17	은행의 L/G발급 후 지급거절 가능 여부	56
Q18	신용장의 조건 변경	58
Q19	하자 네고와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61
Q20	신용장의 유효기일	64

Q & A

Q9 미수금 각종 원인으로 발생한 미수금의 해결방안

사례 1

당사는 예전부터 미국에 “아이롱” 미용기구를 수출해오고 있습니다. 대금결제방식은 계약시에 50%를 받고 선적 후에 50%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해 왔는데 거래할 때마다 조금씩 대금 잔액이 남았는데 이 돈이 약 100만불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잔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미국 수입회사는 경기가 나빠 회사 지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사례 2

일본에 사는 한국인과 아는 사이라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PVC원료를 수입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였는데 물품을 선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품대금 3,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있는지요?

사례 3

당사는 은행 CD기계를 제작 수출하는 회사로 미국 바이어와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바이어는 선수금방식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유독 미국 바이어만 후지금방식으로 거래를 요구해 와서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미국 바이어는 물품을 인수한 후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사례 4

당사는 한국의 제조업체이며 일본에 수출하여 거래를 해오던 중 그 전에 2건 거래했던 물품대금 약 1억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수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사례 5

09년 7월과 8월에 영국으로 물품을 수출하였는데, 총 5,700만원 물품 대금 중 2,360만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3,340만원은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1. 분쟁해결기관을 통한 해결방안

거래를 하시면서 미수금이 회수가 지연되면 자금회전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분쟁 해결 방안으로 3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대한상사중재원에 대외알선을 신청하는 방안
둘째, 국제채권주심회사에 의뢰하는 방안

셋째, 현지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 (만약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중재를 신청하여 쉽게 해결)

- 1) 비용이 무료인 대외알선은 대한상사중재원에 의뢰하면 된다.
(홈페이지 www.kcab.or.kr)
- 2) 알선으로 해결이 안될 경우 국제채권주심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서울, 고려, 미래 신용정보주식회사, P&L Korea 등)
- 3)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상대방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보전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필수적이다.

* 무역거래에서 특히 첫 거래인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필히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서에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해두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2. 자체적인 예방 방안

- 1) 미수금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
 - 품질 등 클레임 발생 요인 사전 제거 및 관리 철저
- 2) 대금회수 안전도를 높이는 신용장 활용
 - 선적서류 등을 정확하게 작성
- 3) 수출보험에 부보(보험료는 무역협회 및 각 지자체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활용하면 부담 경감 가능)
- 4) 신용조사의 적극적인 이용

- 수출보험공사(신용정보팀)	1588-3884	http://www.keic.or.kr
- 신용보증기금(해외업무팀)	1588-6565	http://www.kodit.co.kr
- P&L KOREA	02-2201-5200	http://www.pnlkorea.com

-(주)나이스디앤비(NICE D&B) 02-2122-2500 <http://www.nicednb.co.kr>

5) 계약서 작성

- 클레임 제기기간, 제기방법, 해결방법 기재
- 독소조항 삭제 및 변경 요구
- 조건의 해석에 대한 기준, 중재조항 및 준거법 기재

TIP

대금미회수 대처 방안

- 가. 거래 전에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해두어야 한다.
- 나. 계약상 대금결제방법은 선금이 가장 좋지만 이는 상대방이 잘 동의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신용장 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 다. 계약서에는 필히 분쟁발생 시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을 삽입해 두는 것이 좋다.
- 라. 수출 전에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험에 부보해 두는 것이 좋다.

참고

수출대금 미회수 증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무역여건이 악화되면서 미수금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출업체 4개중 1개 비율로 수출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보험 사고율도 2009년에 전년대비 2.5배 정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런 수출미수금 리스크 증가는 금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소기업들은 수출계약 협상 시 상대방 신용조사 실시와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업체들이 이를 등한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수출보험 부보 등 제도적인 방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특히 바이어에게 무조건 끌려가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사전송금 또는 신용장거래의 결제조건 변경 등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Trade Focus」 Vol.9 No.17, 2010. 4. 5.)

Q10

중국 무역 분쟁

중국 무역 분쟁 해결 방안

사례 1 [샘플과 다른 품질의 물품 선적]

한국의 K사는 중국 광저우에서 열렸던 전시회에서 중국 S사의 직물류 제품을 보고 샘플 요청을 하였다. 샘플의 품질이나 가격면에서 볼 때 타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 K사는 미화 16,000 달러에 달하는 오더를 하였다. 그러나, 실제 물품이 선적되어 인수를 하였으나, 샘플과는 전혀 다른 불량률 100%의 제품이었다. 이에 K사는 수차례에 걸쳐 물품을 다시 제작해 보낼 것을 요청하였으나, 다음 오더시 10%의 D.C.를 해주겠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어 더 이상의 협의요청이 의미가 없음을 알고, K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다.

사례 2 [제품불량임에도 불구하고 선적 강행]

한국의 M사는 2009년 1월 2일 중국의 산동성 석도항에서 H해운 선편으로 활꽃게 3,120KGS를 선적하여 2009년 1월 3일 인천항에 도착하여 수입통관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검역을 한 결과 전량 폐사된 상태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폐기처분(소각)함으로써, 물품대금, 통관비용, 및 폐기처분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폐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선적 당시 산동성의 기온이 급강하하여 혹독한 한파가 있었고, 이로 인해 양식장의 꽃게들이 전량 동사하게 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및 선박이 예약되어 있고, 서류상 수출절차를 마쳤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선적을 강행하였다. 이에 M사는 수출자인 중국 Y사의 귀책으로 인해 물품의 통관 불합격 처분과 폐기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액 26,136달러를 Y사에게 제기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여러번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 문제에 대한 책임있는 사람과의 통화가 실패함에 따라 해결 방안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사례 3 [무역거래에서 종개인에 대한 수수료 미지급]

한국의 A사는 실충제 원료의 수입 Offer업을 주로 하는 무역회사로, 한국의 수입업체가 중국의 제조사로부터 직접 수입을 할 수 있도록 Offer Sheet(물품매도 확약서)를 발행하고, 거래의 이행이 끝난 후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수출자에게 대금청구서를 발행하여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A사는 중국 C사에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6건의 Offer Sheet를 발행하여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C사는 A사가 발행한 대금청구서로 인하여 발생한 수수료 미화 4,700달러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

고 있었다. 수차례 지급독촉에도 불구하고 C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자, A사는 해결방안이 있는지 문의하였다.

사례 4 [선적서류 사본으로 물품인수 후 대금지불 거부]

내국의 K사는 2009년 4월 중국 Q사에 미화 90,000 달러 상당의 기계류를 수출했다. 선적을 무사히 끝내고 중국 수입자의 요청대로 선적서류 사본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K사는 국내 매입은행을 통해서 L/C 네고를 했고, 중국 Q사의 대금결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네고 후 10여일이 지나자 국내 매입은행으로부터 중국 Q사에서 대금결제를 거절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거절사유는 수입자인 Q사가 선적서류의 인수를 거절했다는 것이었으나, 수출자가 확인해 본 결과, Q사가 이미 운송회사에서 물품을 인수해 갔다는 것이었다. 즉, Q사는 B/L 사본만으로도 물품수취가 가능한 현지 통관은행과 중국은행의 묵인아래 이러한 물품의 부당인수를 해 간 것이다. 이에 K사는 Q사, L/C 개설은행, 운송업체 등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해 왔다.

A

사례 1은 중국에서 개최되는 무역 관련 전시회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회에 출품된 샘플은 양질의 물품을 전시하여 많은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지만, 실제 선적한 물품은 저질의 물건을 보내 우리 기업들이 많이 당하는 경우이다.

사례 2는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관행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미 컨테이너 및 선박이 예약되고, 수출절차를 마무리 된 상태에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선적중단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다. 심지어는 1차 선적분이 불량하여 2차 선적분을 선적하지 말라고 요청하여도 일방적으로 선적한 후에 은행에서 대금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적 전에 물품을 검사하여 합격된 물품에 대해 선적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신용장 조건에 국제적인 검정기관의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사례 3의 경우, 중국기업들은 단순 거래 알선으로 인한 대가의 지불에 매우 인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 물품 거래 당시에는 수수료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가 한꺼번에 많은 수수료 지급을 하게 되면 아깝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기업과 무역 중개로 인한 수수료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거래 직후 즉시 수수료를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사례 4에서 Q사의 행위는 전형적인 무역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행위는 수입자, 운송회사, L/C 개설은행이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상호 묵인 아래 행해진 공동행위로 볼 수 있다. 본 사례의 최종책임이 있는 Q사는 회사를 폐쇄한 상태였고, 운송회사와 L/C 개설은행은 묵묵부답이라 원만한 분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해결방법으로는 먼저 선하증권 원본을 받지 않고, 물품을 바이어에게 인도해 준 운송회사에게는 권리증권인 선하증권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인도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법과 신용장 대금지급을 거절한 개설은행에게는 만약 서류작성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신용장의 추상성에 의거하여 신용장과 일치한 서류를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해결 절차로는 운송회사 또는 은행을 상대로 대외알선 신청하거나, 국제채권추심회사를 활용하거나, 마지막으로 중국 현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뿐이다.

TIP

중국 관련 클레임은 사후 해결보다는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이제까지 발생했던 클레임 유형들에 대한 분석 및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 마련 후에는 얼마든지 상대사의 악의적인 부당한 무역행위를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 사전에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 필수
- 국제검정기관의 검사보고서 첨부
- 대한상사중재원 표준중재조항과 신청인주의 중재조항 활용

검정기관으로는 한국SGS(주)(02)709-4500, 협성검정(주)(Lloyd's 대리점 02)752-2964, (주)고려검정공사 (KIMSCO, 02)774-8201, 국제검정공사(INTECO, 02)752-2126 등이 있다.

참고

중국과의 무역량이 증가함과 더불어 무역분쟁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① 운송서류 사본만으로 상품인수 후 대금지급 거부 ② 샘플로 제시한 품질과 본 선적 분 품질간의 상이 ③ 2차 선적분에 대한 대금지급 거절 ④ 수량이나 품질불량 제품의 검사 전 선적 강행 ⑤ Undervalue한 물품대금 차액의 미지급 ⑥ 도착지 현금결제방식 계약 후 할값 인수 유도 ⑦ 통관료 지불 거부 ⑧ D/A 계약 후 품질불량을 이유로 대금결제 거부 등이 있다.

이러한 분쟁 유형들은 대개 중국 기업의 악의적인 사기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실질적인 구제가 매우 어렵고, 또한 중국 기업들의 비협조로 인해 분쟁해결을 위한 알선 과정에서도 원만한 해결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과의 알선사건의 성취율이 매우 낮아, 상담 의뢰자가 미리 클레임 제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어

신청인주의 중재조항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와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내용의 조항으로 한국기업이 중재를 신청할 확률이 많을 계약일 경우에 사용하는 조항이며, 표준중재조항은 무조건 한국에서 중재를 진행하는 내용의 조항을 말한다.(조항 내용은 p. 108 참조)

Q11

송금결제방식
송금방식 거래 시 유의사항

사례

국내 수출상은 선박의 기자재를 수출하는 업체로서 그리스에 본부(B업체)를 두고 있는 영국 소재의 A업체로부터 자사 선박의 기자재를 구매하겠다는 거래제의를 받았다. 대금결제는 물품을 인수하고 2개월 후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 T/T)한다는 조건이었다. 수출상이 물품인도를 마치고, 대금결제일이 도래하여 수입상 A업체에게 대금 지급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수입상 A업체는 수입된 기자재는 본사 B업체의 선박에 사용한 것으로 B업체에게 대금을 청구하라고 하고, B업체는 자신은 A업체로부터 기자재를 구입하였을 뿐이므로, 매매계약당사자인 A업체에게 대금청구를 하라는 것이다. 본사와 지사간에 대금결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대금지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A

위 거래는 수출상과 영국의 A업체와의 수출입계약과 영국의 A업체와 그리스 본사인 B업체와의 물품공급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내수출상이 A업체에 물품을 공급하고, 이 물품을 A업체가 B업체에 공급하는 관계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영국의 A상사가 계약당사자로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관계로 볼 때 수출상과 B상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따라서 A상사가 계속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결국 A상사를 상대로,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으면 중재조항에 따라 중재신청을 하고, 만일 중재조항이 없으면 영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국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소액클레임의 경우에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용이 없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에 대외클레임 알선을 요청해보는 것과 국제채권추심회사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1. 송금결제방식

T/T 결제 방식과 유의점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이란 수입상이 물품대금을 외국환은행에 입금함과 동시에 수출상에게 외화로 지급해 줄 것을 위탁하면, 지급지시를 받은 채권자의 환거래은행은 송금수취인인 수출상에게 송금 도착을 통지하여 송금액을 수취하도록 한다. 이 때 외국환은행간 지급지시서(Payment Order)가 전신일 경우를 전신환이라고 한다. T/T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물품을 송부하고 난 후 대금을 받기로 하는 사후 송금방식거래는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거래금액이 큰 거래를 하거나, 신용이 확실하지 않은 수입상과 거래하거나 또한 처음 거래시에는 사후송금방식거래는 가급적 피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적인 책임문제에 대하여는 이를 확실하게 계약서에 명시하여 후일 대금지급거절 등의 분쟁 등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전송금방식 과 사후송금방식

사전송금방식(Advance Remittance Basis)

수출상이 상품을 인도하기 전·후 또는 인도와 동시에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매매관계에서 수출상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거나 수출상의 신용에 대하여 수입상이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용된다. 본 결제방식은 대체로 소액 거래나 미리 만들어져 있는 물품에 대한 거래의 경우에 사용된다.

사후송금방식(Open Account)

단순송금방식과는 정반대로 수출상이 먼저 상품을 선적하고 상업송장을 보낸 후 수입상이 결제하는 방식이다.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으로 이용되는 결제수단은 수표(Check), T/T(Telegraphic Transfer), M/T(Mail Transfer)방식이 있다.



무역대금결제방식 선택 시 유의사항

원래 무역거래에서는 격자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제조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민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는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방식을 선호해 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을 때에 은행권에서 신용장이나 추심어음을 대한 매입을 중지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송금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방식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그 방식이 지금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송금방식은 본지사간의 거래 등 대금결제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에 사용되어야만 한다.

이 송금방식은 사전송금방식인 경우에는 수입자가 전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고 사후송금방식인 경우에는 수출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국제거래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시에는 구제방법이 마땅치가 않으며, 특히 소액의 경우에는 거의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수출 시에는 사후송금방식보다는 신용장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이다.

Q12

추심결제방식 D/A 조건 수출계약 시 은행의 담보요청

사례

당사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 바이어와 L/C 및 CAD(금액이 적을 시에) 거래가 지속하고 있는데 최근 바이어로부터 D/A 60days거래 제의를 받아, 은행과 상의하니, 거래은행이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어는 위 조건을 수락하면 물량을 증가시켜 주겠다는 제의를 하고 있는데 왜 은행은 담보를 요청하는 것이고, 당사가 수입상과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는지?

A

D/A조건은 “deliver documents to buyer against drawee's acceptance of draft”의 의미로서 추심한 결제방식이다. 즉, 수입상의 어음인수에 대하여 선적서류를 내주는 방식이다. D/A방식은 추심은행(수입지은행)이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여 주고 그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수출지은행)에 송금하여 주는 거래방식으로서 자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어음에 서명을 한 수입상에 의존한다.

따라서 은행은 수출상이 선적 후 발행하는 화환어음을 매입해 주지만 외국바이어가 만일의 경우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국내수출상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D/A거래는 상대방의 신용이 확실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가능한 바이어에게 Usance L/C를 요구하거나, D/A거래에 따른 대금미회수를 cover하기 위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가입하면 후일 문제 발생 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L/C (신용장, 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인서이다. 즉, 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독자적인 책임으로, 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이행 또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증서를 말한다.

Usance L/C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환어음(usance bill)을 지급인에게 제시하면, 이 환어음을 인수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만기일)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을 말한다.

D/A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기한부 환어음(documentary usance bill or time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보내어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업자로부터 어음의 인수를 받으며 서류를 인도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아 추심을 의뢰하여온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1. D/A거래시 환어음결제에 적용되는 환율은?

- 일람출급환어음매입을 = 전산환매입을 - 우편일수/360 x 년환기료율 x 장부가격)
- 60days after sight: 일람출급환어음매입을 - 60/360 x 년환기료율 x 장부가격
- 60days after B/L date: 전신환매입을 - 60/360 x 년환기료율 x 장부가격

2. 환어음이 발행된 경우 무역대금채무와 어음채무의 독립성

어떤 거래나 기타 채권 혹은 채무에 기인하여 어음이 발행되는 경우에 그 어음은 유통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그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거래나 채권·채무관계와는 독립적이다. 그러므로 어음발행 후에 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의 지급인이나 배서인들은 어음의 최종 소지인에 대한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게 된다.

1. D/A거래에서 환어음 발행인, 수취인 및 지급인은 누가 되는가?

환어음의 당사자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으로 구분된다. 환어음의 발행인은 수출상이 되며, 환어음의 지급인은 수입상이 되며, 어음의 수취인은 어음 추심은행이 된다.

2. D/A거래에서 수출상, 수입상,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의 의무

수출상은 계약에 약정된 기간 내에 약정된 물품을 수입상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수출국에 있는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추심을 의뢰할 의무가 있다.

수입상은 추심은행으로부터 어음을 인수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추심은행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수입국에 있는 추심은행에 송부하고, 수입상이 지급한 수입대금을 추심은행으로부터 받아 수출상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받은 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고 수입상이 환어음을 인수하겠다는 서명을 받고, 선적서류를 내준 후 만기일에 수입상으로부터 수입대금을 받아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출상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추심의뢰은행과 추심은행은 서류와 돈을 수출상과 수입상 사이에서 전달해주는 의무만 있고, 지급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다.

3. 매입과 추심의 개념 및 차이점

매입이란 어음을 사주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어음을 매입하는 사람은 어음대금이하로 어음을 할인하여 구입하고, 어음의 만기일에 어음지급인에게 어음대금을 지급받게 되며, 만약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는 자신에게 어음을 판 사람에게 어음대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추심이란 어음발행인을 대신하여 어음을 어음지급인에게 제시하고, 지급인이 지급한 어음대금을 어음발행인에게 전달해주는 것을 말한다.

매입과 추심의 차이점으로는 환어음을 매입한 수취인은 환어음의 선의의 취득자(bona fide holder)로서 어음의 지급인에게 어음대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어음이 부도난 경우에는 자신에게 어음을 양도한 자에게 어음대금을 상환받을 권리와 반면에 추심인 경우에는 단순히 어음발행인과 지급인에서 어음과 돈을 종개하는 역할만을 갖는다.

4. 매입과 추심매입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과 그 부속 선적 서류 내용이 신용장에 적혀 있는 조건과 완전히 일치하면 수출상 거래은행은 그 어음을 매입 어음(Bill Bought)으로 매입에 응해 준다. 그러나 어음과 그 첨부 선적 서류 내용이 신용장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과 불일치(Discrepancy)할 경우, 은행은 그 어음을 추심 어음(Bill of Collection)으로 처리해 수입자가 그 어음에 대한 지급을 완료하기 전 까지는 수출상에게 어음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심 어음일 때에는 추심은행에 의한 추심이 완료될 때까지 수출상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므로 수출 대금 회수가 매입 어음일 때에 비해 매우 늦어져 수출상에게는 불리하다.

CAD결제방식

CAD(Cash against Documents)란 무역결제시 수출국에 수입상의 본·지점이나 대리인이 있어 수출상이 선적과 동시에 이들에게 B/L 등 선적 서류를 제시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결제방식을 말한다.

Q13

추심결제방식 D/P에 의한 결제방식의 문제점

사례

국내 수출상은 베트남 수입상과 일정 기간 동안 원단을 선적하기로 하는 계약내용을 협의 중에 있다. 그런데 수출상은 D/P거래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L/C 거래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입자는 D/P 결제조건을 요구하고 있어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만약 수입상이 요구하는 D/P거래로 할 경우 반드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되는지?

A

수입상이 왜 L/C 조건을 기피하는지를 확인하고, 그래도 D/P조건을 고집한다면, 한국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에 부보하고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수출보험공사에서 기본적인 신용조사까지 대신 해주므로 수출상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강제적인 국제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D/P거래시에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어야 하나, 외국환은행간 협정에서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된다.



1.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D/P 조건은 "deliver documents to buyer against drawee's payment of draft"라는 의미로서 수입국에 있는 은행(추심은행)이 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상과 어음대금과 교환하여 선적서류를 내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 방식은 수출상이 선적 후 어음을 발행하여 수출국의 은행을 통하여 추심을 의뢰하면 수입국에 있는 추심은행이 수입상에게 서류의 내용을 점검시킨 후 선적서류에 대한 대가로 어음대금을 받고 이를 수출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2. 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지급확약서이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인 무역거래의 대금지급과 상품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은행이 개입하여 수출상에게는 대금회수를 수입상에게는 물품인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신용장은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신용장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자시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환어음과 요구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신용장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증서를 말한다.

3.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56년 제정, 1967, 1978년에 개정을 거쳐 1996년 세계 각국에서 시행토록 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은 신용장 거래시 준거규칙에서 삼고 있는 신용장통일규칙(UCP)과 같이 추심어음 결제거래(D/P, D/A)에서 어음이나 서류의 추심사무를 통일화시킴으로써 무역대금결제를 원활히 하고자 마련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추심결제방식에서는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보다는 상업어음거래약정이나 행위지의 국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4. D/P usance

D/P거래는 D/P at sight, D/P usance가 있다. 전자는 은행이 서류를 받는 즉시 수입상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반면에 후자는 지정된 일자에 수입상에게 서류를 인도하면 된다. D/P usance는 수입상이 물품은 도착하지 않았는데 추심서류가 너무 일찍 도착한 경우 대금결제를 물품도착 후에 함으로써 자금부담의 회피와 수출상의 물품미인도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용된다.

5. D/P usance와 D/A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D/P거래는 선적서류와 수입대금을 교환하는 동시불 결제방식이고, D/A는 선적서류를 먼저 내주고, 대금은 차후에 받기로 하는 외상거래 결제방식이다. D/P usance는 usance 기간 동안 은행이 선적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지급한 후에 선적서류를 내주는 방식인 반면에 D/A는 수입상이 선적서류를 먼저 인수하여 물품을 판매한 후 결제하는 방식으로서 수출상의 입자에서는 D/P거래가 대금미회수의 위험이 낮다 하겠다.

참고

D/P와 L/C의 차이점

D/P와 L/C는 모두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한 후 환어음을 발행하여 은행을 통해 대금을 회수하는 대금결제방법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D/P는 환어음의 지급인(drawee)이 수입상이 되는 반면에 L/C는 은행이 된다.

둘째, D/P는 L/C보다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이 부도날 가능성이 크다. 즉, D/P는 수입상이 환어음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은행의 책임이 없는 반면에 L/C는 수입상과 상관없이 은행이 수출상이 발행한 환어음에 대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부도날 가능성이 적다.

셋째, D/P는 추심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L/C는 매입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진다.

넷째, D/P는 일람불방식(at xx days after sight)으로 발행되지만, L/C는 일람불외에 기한부방식(at 60 days after sight) 발행이 가능하다.

용어

at sight(일람출금환어음)

지급인에게 어음이 제시되는 즉시 지급하라는 것으로 환어음상에 "at xxx sight"라고 표시한다. 환어음상에 일람출금 또는 기한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일람출금환어음으로 간주한다.

Usance (기한부)

일람출금(at sight)에 대해서 어음기한이 붙어 있는 어음을 말한다.

D/P (Documents Against Payment, 지급인도조건)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자신의 책임 하에 선적한 후, 관련서류가 첨부된 일람불환어음(documentary sight bill)을 수입업자를 지급인(drawee)으로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에 추심을 의뢰하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은 그러한 서류가 첨부된 환어음을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으로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그러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은 그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서 서류를 인도하고, 지급받은 대금은 추심을 의뢰하여 온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결제하는 방법이다.

Q14

추심결제방식

추심은행의 실수에 의한 물품대금 미회수

사례

국내 수출업체는 싱가폴 수입업체로부터 배관설비에 대해 결제조건은 D/P방식, 가격조건은 CIF Singapore USD59,200으로 하는 purchase order(매입주문서)를 받고 2008. 6. 29.에 선적을 완료하였다. 선적을 완료한 수출업체는 운송서류를 추심 의뢰하고 물품대금을 기다렸으나 오히려 수입업체로부터 받은 것은 제품의 재질이 상이하다는 클레임 통지였다. 따라서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의 통지내용만 믿고 추가로 항공편으로 대체물품을 선적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은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다. 수입업체에게 어떤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A

D/P거래는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하여야 운송서류를 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상이 물건을 인수하였다면 수입지의 은행 즉 추심은행이 수입대금을 받지 않고, 운송서류를 내주었거나 운송인이 B/L 없이 물품을 인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은행의 과실이어서 추심은행에 대금결제를 요구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운송인이 B/L 없이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후자의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TIP**D/P의 대금결제과정**

- ① 수출상과 수입상간의 D/P로 결제를 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② 수출상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들을 첨부하고 수입상을 지급인으로 한 화환어음을 발행한다.
- ③ 자신의 거래은행과 외국환거래협정을 체결하고, 화환어음을 추심의뢰한다.
- ④ 추심의뢰은행은 수입지의 추심은행에게 환어음을과 선적서류들을 송부한다.
- ⑤ 추심은행은 화환어음을 수입상에게 제시하여, 수입상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선적서류를 내준다.
- ⑥ 추심은행은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받은 수입대금을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출상에게 지급한다.

D/P 거래의 특징

D/P 방식은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수입상이 대금결제할 때까지 화물을 소유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수입상 입장에서는 수입국에 있는 은행에 대금결제를 하고 선적서류를 수령하여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수출상은 선적 후 수입상이 운송서류를 찾아 가지 않고 대금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며, 수입상은 서류를 통해 대금결제를 하기 때문에 인도받은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참고**D/P 거래에서 추심은행의 역할**

D/P거래는 수출상이 발행한 일람불 환어음(sight draft)을 추심하여 결제하는 방식이다. 수입지에 있는 추심은행은 수출상이 환어음의 대금을 결제하여야만 운송서류를 내주며,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서류를 자신이 갖고 있다가 수출상에게 반송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은행은 서류전달시 대금을 회수하여 수출상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금지급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1. 환어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급기한을 표기하는 방법은?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란 국제거래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채권금액의 기명인 또는 소지인에게 일정한 시일 및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요식유기증권이다. 지급기한을 표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1) 일람불(요구불)어음(sight bill or demand bill)

환어음의 지급기일이 일람출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 어음이 지급지에서 지급인에게 제시(presentation)되었을 때 즉시 지급하는 어음이다. 이러한 환어음을 발행하도록 요구될 때 신용장에서 일람출금신용장, 추심결제방식에서는 D/P방식이라 한다.

2) 기한부어음(usance bill or after sight bill)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조건의 환어음이다. 기한부 어음은

수입상이 수입품을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어음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한부어음에서는 어음의 인수(acceptance)행위가 수반되는데, 어음의 인수는 곧 기한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명행위인데, 대부분의 경우 인수인은 만기일에 가서 지급인이 된다.

- ① 일람후 정기불(after sight) : 어음이 수입업자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 후, 즉 30일 또는 60일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통 30days after sight(30d/s), 60days after sight(60d/s) 표시된다.
- ② 일부후 정기불(after date) : 어음이 발행되고 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불되는 어음, 예컨대 30days after B/L date와 같이 표시된다.

용어**Purchase Order (P/O, 매입주문서)**

Order Sheet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일종의 개별계약서이다. 매매계약이 성립된 후에 계약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업자가 작성하여 수출업자에게 송부한다.

Q15

신용장결제방식

수입자가 서명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신용장 조건

사례

국내 수출자 A는 중국의 수입자 B로부터 신용장을 수령하였는데, 그 신용장의 제시조건에는 수입자나 그 수입자가 지명한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조건은 수출자와 수입자가 계약한 사항은 아니었다. 이에 수출자 A는 위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A

신용장은 독립·추상성의 원칙하에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다. 독립성이란 신용장은 수출상과 수입상간의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지만 일단 L/C가 개설되면 L/C는 매매계약에서 독립되어 그 자체로써 별도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라는 원칙이다. 추상성은 신용장은 서류에 의한 거래라는 원칙이다. 즉, 신용장 거래에 있어, 개설은행이나 수익자이나 모든 관계 당사자는 상품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만약 수출자가 신용장의 요구서류에는 있지만, 계약조건에서 언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동 서류를 갖추지 못한다면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로 지급거절 사유가 된다. 신용장 통일규칙 제4조를 살펴보면,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 기초가 되는 매매 또는 다른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은행은 그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그 계약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장에 의한 결제(honour), 매입 또는 다른 의무이행의 확약은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개설의뢰인의 주장이나 항변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수출자는 그 신용장 조건대로 제시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든지 아니면 수입자와 협의하여 수입자나 그 수입자가 지명한 대리인이 서명한 검사증명서를 공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로 대체하는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용장 조건에 수입자나 그 수입자가 지명한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공급할 물품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끔 수입자가 부도덕한 마음으로 자국내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장에

따른 결제의무를 면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불능신용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언제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취소가능신용장과 다를 바가 없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장의 독소조항이 있는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와 약정한 계약서대로 물품을 생산하여 선적을 완료한 후 수입자에게 검사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검사증명서를 수령하지 못하여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수입자가 물품대금의 할인을 요청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신용장의 독립성원칙에 의하여 당사자간 계약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상에 검사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항이 있는 신용장을 수령한 경우에는 반드시 이 조건을 충족시켜야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입자의 검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토록 요청하거나 굳이 검사증명서가 필요하다면 계약목적물과 관계되는 공정한 제3의 검사기관(SGS 나 Lloyd's)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도록 신용장을 amend할 것을 수입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TIP

신용장통일규칙 제4조 Credits v. Contracts(신용장과 원인계약)

- 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Banks are in no way concerned with or bound by such contract, even if any reference whatsoever to it is included in the credit. Consequently, the undertaking of a bank to honour, to negotiate or to fulfil any other obligation under the credit is not subject to claims or defences by the applicant resulting from its relationships with the issuing bank or the beneficiary. A beneficiary can in no case avail itself of the contractual relationships existing between banks or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issuing bank.
-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 기초가 되는 매매 또는 다른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은행은 그 계약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그 계약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용장에 의한 결제(honour), 매입 또는 다른 의무이행의 확약은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개설의뢰인의 주장이나 항변에 구속되지 않는다.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들 사이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사이의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 An issuing bank should discourage any attempt by the applicant to include, as an integral part of the credit, copies of the underlying contract, pro-forma invoice and the like.
-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이 원인계약이나 견적송장 등의 사본을 신용장의 일부분으로 포함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Q16

은행의 지급거절통지 시한
개설은행의 서류 불일치 통지 시한

사례

국내 수출자는 매입은행을 통하여 취소불능신용장과 운송서류를 개설은행에 제시하였다.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내도된 운송서류를 심사한 결과 서류불일치의 사유를 발견하고 수입자에게 하자의 용인여부를 의뢰하였으나, 수입자는 하자의 용인여부 답변을 미루다가 20여일 후에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 통보를 해 달라고 개설은행에 요청하였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매입은행에 부도통보를 하였다. 수출자는 매입은행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듣고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되는가?

A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내도된 운송서류를 신용장통일규칙에 따라 심사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류심사기간은 서류접수일 다음영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5 은행영업일 이내이다. 만약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과 협의한 후 서류심사 결과 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도 이 5일 이내에 수출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건에서 개설은행이 제5 영업일을 경과하여 매입은행에게 부도통지를 한 것은 신용장통일규칙에 위배되므로 운송서류의 불일치로 인한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설은행의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부도통지가 부당함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TIP

지급거절통지기한에 대한 신용장통일규칙조항

제16조 Discrepant Documents, Waiver and Notice (하자 있는 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 d. The notice required in sub-article 16 (c) must be given by telecommunication or, if that is not possible, by other expeditious means no later than the close of the fifth banking day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 d. 제16조 (c)항에서 요구되는 통지는 전신(telecommunication)으로, 또는 그것의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영업일의 종료시보다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Q17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은행의 L/G 발급 후 지급거절 가능 여부

사례

수입자 A는 운송서류가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착항에 도착한 물품을 찾기 위하여 개설은행으로부터 L/G를 발급받아 수입통관을 하였다. 그러나 수입자 A는 물품의 품질 불량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 경우 개설은행에 품질불량을 이유로 지급거절통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급거절통보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여야 하는지?

A

신용장거래는 독립성원칙에 의하여 매매계약이나 기타 계약과 관계가 없으며 상품거래와도 관계가 없다. 즉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이나 기타 계약에 그 근거를 두고 있더라도 이와는 별개의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포함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 않는다. 이러한 신용장의 특성 때문에 수입자는 계약상의 품질조건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입자는 운송서류가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설은행으로부터 L/G를 발급받아 물품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도(설사 도착한 서류가 불일치하다고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본건에 있어서, 수입자 A는 물품대금 지급거절을 할 수 없으며, 단지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서 상의 품질조건에 따라 수출자에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TIP

신용장의 독립성

신용장개설약정에 따라 개설은행이 신용장을 유효하게 개설하게 되면, 그 신용장은 신용장개설의 원인이 된 수익자와 개설의뢰인간의 매매계약, 용자계약 및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간의 신용장개설에 관한 계약과는 별도로 독립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장의 특성을 독립성의 원칙이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 제4조에서는,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또는 기타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은행은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참조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미국통일상법전 제5편 제103조 (d)와 제108조 (f)에서도 이러한 취지에 대해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하에서 은행이 행하는 각종의 지급이행 또는 매입 또는 다른 모든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 관계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개설의뢰인의 클레임이나 항변에 지배받지 않고, 또한 수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 상호간 또는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에 존재하는 계약관계를 원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독립성의 원칙이 준수되지 못한다면, 특히 지정은행은 신용장에 의한 금융이나 매입행위를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Q18 신용장의 조건변경

사례

스카프 수출업체인 한국의 A상사는 프랑스 수입업체인 B사로부터 개당 단가 USD30 의 스카프 10,000pcs, 총액 USD300,000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A상사는 자신을 수익자로 되어 있는 6월 15일자 신용장을 수취하고 상품을 제작하였다. 상품의 제작이 거의 완료될 무렵 A상사는 7월 15일자로 된 조건변경서의 통지를 받았다. 조건변경서의 내용은 제품의 단가를 USD25로 감액하라는 내용이었다.

수출자인 A상사는 즉시 수입자인 B상사에게 연락을 취해 이에 대해 문의하였고, 수입자인 B사는 자신의 경쟁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USD25로 수입하고 있다고 하면서 B사가 동일 제품을 USD30에 수입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경쟁회사에 비하여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니, A상사는 변경된 단가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매입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이행치 않으면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겠다고 알려왔다.

수출자 A상사는 수입자인 B상사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건변경에 대한 수락 및 거절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채 신용장의 매입시점에 이르러 원신용장의 단가대로 Invoice를 작성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입시켰고, 개설은행으로 서류를 발송하였다.

개설은행은 서류를 접수한 후 서류의 단가가 개설은행의 7월 15일자 조건변경서의 단가와 상이함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였고, 매입은행에게 상환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A사는 이러한 경우 개설은행이 A사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조건변경서를 이유로 지금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인지?

A

신용장은 수익자가 어떤 일정한 조건에 맞는 서류들을 제시되면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조건변경의 당사자도 원 신용장과 같이 개설은행과 수익자가 되는 것이므로 처음 조건변경통지가 왔을 때 이의 수락을 거부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는 길이다. 본 사례에서는 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부 의사 표시 없이 바이어하고만 의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수익자가 조건변경통지서를 수취한 후 이러한 조건변경신청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

고, 원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한다 할지라도, 이는 그 서류를 제시하는 시점이 그 조건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거절의사의 표시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수익자가 조건변경통지서를 수취한 후 조건변경신청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매입시점에 이르러 변경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한다면 그 시점이 그 조건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수락시점이 되는 것이다.

비록 수익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것을 묵시적 승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건변경서를 받은 수익자는 그 조건변경서를 수락 또는 거절하기로 결정한 때, 그러한 조건변경서를 통지했던 은행, 즉 통지은행에 기급적 빨리 그 조건변경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를 접수받은 통지은행은 즉시 그러한 사실을 개설은행에 알림으로써 향후의 분쟁발생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TIP

UCP 600의 제10조 c항

제10조 Amendments(조건변경)

- c.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original credit (or a credit incorporating previously accepted amendments) will remain in force for the beneficiary until the beneficiary communicates its acceptance of the amendment to the bank that advised such amendment. The beneficiary should give notification of acceptance or rejection of an amendment. If the beneficiary fails to give such notification, a presentation that complies with the credit and to any not yet accepted amendment will be deemed to be notification of acceptance by the beneficiary of such amendment. As of that moment the credit will be amended.
- c. 원신용장(또는 이전에 조건변경이 수락된 신용장)의 조건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통지한 은행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수락한다는 뜻을 알려줄 때까지는 수익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수익자는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수익자가 위 수락 또는 거절의 뜻을 알리지 않은 경우, 신용장 및 아직 수락되지 않고 있는 조건변경 내용에 부합하는 제시가 있으면 수익자가 그러한 조건변경 내용을 수락한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순간부터 신용장은 조건이 변경된다.

UCP 10조 e항 관련조항

Partial acceptance of an amendment is not allowed and will be deemed to be notification of rejection of the amendment.

조건변경에 대하여 일부만을 수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조건변경 내용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로 본다.

확인은행의 조건변경 동의

원신용장이 확인신용장인 경우에 조건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에 대하여 확인은행의 동의를 받아야만 조건변경이 유효하게 성립된다.

참고

무역현장에서 신용장 amend 관행

일반적으로 상담자들이 조건변경의 수락 및 거절에 대하여 오해를 하는 이유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조건변경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익자가 명시적으로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수락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는 그 조건변경이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수입상들은 조건변경서를 받은 수익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무시적인 동의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익자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서를 보낸 개설은행은 반드시 그 조건변경에 대한 수익자의 수락 여부를 받아두어야 한다.

조건변경서의 수락 및 거절의 경우, 수익자는 일련해서 오는 조건변경서들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변경서만을 선별하여 수락할 수 있다. 즉, 어느 수익자가 신용장의 1차 조건변경서를 받은 후 이러한 조건변경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락하였는데, 다시 2차 조건변경서가 내도되어 있으나,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변경서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이 2차 조건변경서에 대하여 수락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익자가 7월 15일자로 선적기일을 연장하는 조건변경 통지서를 받고, 며칠 뒤인 7월 20일에 단가를 감액하자는 내용의 조건변경 통지서를 받은 경우, 7월 15일의 조건변경은 수락하고 7월 20일의 조건변경은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조건변경서에 두 가지 이상의 조건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선별적 선택을 할 수 없다. 즉, 하나의 조건변경서에 포함된 두 가지 이상의 조건변경사항들은 그들을 모두 수락하든지 모두 거절하든지 양자택일하여야 한다.

용어

Invoice (송장)

수출업자가 무역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할 것을 해외의 수입업자 앞으로 증명하는 화물의 명세서를 말한다.

확인은행

발행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을 수권받았거나, 요청받은 제3의 은행으로서 지급, 인수 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매입하기로 확약한 경우 이 은행을 확인은행이라 한다.

Q19 신용장의 독립성 하자 네고와 개설은행의 지급거절

사례

중국 수출자 A는 국내 수입자 B와 원단을 가격은 CIF조건으로 운송서류 원본 1부를 직접 수입상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수출자는 선적지연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입자에게 선적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수입자는 개설은행에게 하자서류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할테니 물건만 선적해달라고 하였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입자와의 거래관계를 믿고 신용장의 조건변경 없이 선적을 완료한 후 운송서류 1부를 직접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개설은행에 하자 서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수출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류불일치로 지급거절 통보를 받았다. 한편, 수입자는 수출자가 직접 송부한 운송서류를 운송업체에게 제시하고 물품을 인도받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수출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수출자가 개설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대금청구를 할 수 있는지, 또한 수출자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송업체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

A

신용장은 계약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해 개설이 되지만, 신용장은 계약서와는 별개의 계약관계를 갖는다. 즉, 신용장의 모든 관계 당사자는 상품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의 거래를 한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간의 서면합의나 구두상의 언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용장의 조건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설은행은 서류 불일치의 이유로 지급거절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구두상으로 하자 Nego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요청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본 건에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타당하다.

수출자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송업체가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에 대하여는 수입자가 원본 선화증권을 제시하였는지 여부에 따

라 다르다. 선하증권이란 운송인, 선장 또는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가 서명을 한 해상운송계약 및 운송인의 화물수취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일 뿐만 아니라, 운송인이 그와 상환으로 소지인에게 운송화물을 인도해 줄 것을 약정하고 있는 인도청구권을 의미하고 있는 권리증권이다. 따라서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한 자가 선하증권을 제시하고 물품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운송업체는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소지인에게 운송화물을 인도하여야 하지만, 선하증권의 제시없이 물품을 인도하였다면 운송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본 건에 있어서는 수출자가 개설은행과 수입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는지 또는 지급받지 못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자가 수출자가 자신에게 직접 송부한 선화증권을 운송업체에게 제시하고 운송화물을 인도받았기 때문에 운송업체는 과실이 없다.

따라서 수출자는 계약당사자인 수입자에게 물품대금 지급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수입자가 여타의 사유를 제시하면서 물품대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회피하는 경우에, 수출자는 수입자를 상대로 수입자가 소재하는 관할법원의 법적 절차를 통해, 또는 양 당사자간에 약정한 중재합의가 있으면 그 중재합의를 근거로 중재절차를 통하여 물품대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Clean Nego와 하자 Nego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되는 서류를 제시하여 매입시키는 것을 Clean Nego라 한다. 이 경우에 개설은행은 모든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므로 지급거절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신용장의 수의자, 즉 수출자는 부득이 하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수출자는 소위 L/G Nego를 하게 된다. 이를 하자 Nego라 한다. 이러한 하자 Nego를 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는 매입은행에 만일 하자 Nego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매입을 하게 되는데, 후일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하는 때에는 수출자는 매입대금을 매입은행에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은행들의 관례에서는 Clean Nego를 하는 경우에도 수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이러한 각서를 징구하는 사례가 많다.

용어

consignee(수화인)

“...made out to order of...”와 같이 신용장 문면상에 지시식 선하증권의 발행을 요구하는 문구에서 order of 다음에 수화인의 이름이 명기되는데, 그가 곧 운송화물을 받아 보는 사람 또는 실질적인 소유권자이다.

TIP

신용장의 특성에 위배되는 신용장 조건

- 항공운송의 경우 consignee가 수입자로 된 경우
- 선하증권 원본을 직접 수입자에게 송부할 것을 요청하는 조건
- nego를 제한하는 문구(예: 수입자가 지정한 자의 I/C를 요구한다던가, 현지에 도착 후 수입자가 발급하는 I/C를 요구하는 경우 등)
- 계약내용과 상이한 조건, 요구되는 서류의 상호간에 불일치 혹은 실현불가능한 내용
- 계약조건과 신용장조건이 불일치하는 경우
- 지나치게 상세하게 조건을 많이 요구하는 신용장
- 수입자가 선적지시 혹은 선명지정 후에 nego하도록 하는 경우

Q20 신용장의 유효기일

사례

수출자 A사는 통지받은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Credit expires on 15 December 2008 at our counters”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동년 12월15일에 자기의 거래은행에 매입(Nego)시켰다. 그런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Credit expired(유효기일 경과)”로 지급거절(Unpaid)통보를 받았다. 이 경우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타당한 것인가?

A

본건 신용장은 유효기일이 개설은행에서 종료되는 것으로 수익자는 그 유효일까지 개설은행에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에 서류가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미 유효기일을 경과하였을 것으로 개설은행이 지급거절하는 것은 당연하다.

선적서류가 지정된 일자(유효기일과 서류제시기일 중 먼저 종료하는 일자)까지 어느 장소에서나 제시된다고 하여 유효한 것은 아니다. 유효기일만 확인하고 최종제시장소는 확인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수익자와 관련은행은 서류가 그 지정일까지 어느 장소에 제시되어야 유효한 것인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UCP관련조항

제6조 Availability, Expiry Date and Place for Presentation(이용, 유효기일, 제시장소)

- d. i. A credit must state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An expiry date stated for honour or negotiation will be deemed to be an expiry date for presentation.
- d. ii. 신용장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용장 대금의 결제(honour) 또는 매입을 위한 유효기일은 제시를 위한 유효기일로 본다.
- ii. The place of the bank with which the credit is available is the place for presentation. The place for presentation under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is that of any bank. A place for presentation other than that of the issuing bank is in addition to the place of the issuing bank.
- iii. 신용장이 이용가능한 은행의 장소가 제시를 위한 장소이다. 모든 은행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장에서의 제시장소는 그 모든 은행의 소재지가 된다. 개설은행의 소재지가 아닌 제시장소는 개설은행의 소재지에 그 장소를 추가한 것이다.
- e. Except as provided in sub-article 29 (a), a presentation by or on behalf of the beneficiary must be made on or before the expiry date.
- e. 제29조 (a)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익자에 의한 또는 수익자를 위한 제시는 유효기일 또는 그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III 무역운송 관련 클레임

Q21	B/L의 발행일	68
Q22	동일항차, 동일선박상에 이루어진 분할선적	70
Q23	앞선 할부선적 위반시 뒤의 선적분에 대한 계약 해제 여부	72
Q24	운송인의 화물 분실 시 책임 소재	74
Q25	컨테이너의 하자로 인한 화물손상 책임	77
Q26	CIF조건에서의 화물멸실 책임	79
Q27	운송회사의 도착지연에 관한 클레임	82
Q28	B/L과 FCR의 차이	85
Q29	Surrender B/L과 수입화물선취보증서	89
Q30	항공운송 중 박스 손상 발생	92

Q & A

Q21

B/L
B/L의 발행일

사례

A사는 미국으로부터 신용장을 수취하였는데 운송서류로서 본선적재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선적기일 7월10일, 유효기일 7월20일이고 운송서류 발행일 후 10일 이내 (within 10days after the date of issuance of transport documents)에 제시하라는 조건이 있었다. A사는 물품을 6월 20일 선박회사의 지정창고에 입고시킨 후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을 발급받았으나 본선의 입항이 늦어져 7월5일에 본선적재를 하고 기발행 받았던 B/L에 별도의 “on board notation(본선적재부기)”을 받은 후 7월10일에 거래은행에 내고하였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B/L발행일자가 6월20일이고 선적서류가 7월 5일에 은행에 제시되었으므로 B/L발급 후 10일이내에 제시하라는 특수조건을 위반하였다(서류제시기일 경과)라는 이유로 부도통보를 보내왔다. 개설은행의 부도처리는 정당한 것인가 ?

A

신용장 거래에서 운송서류로서 본선적재 해상선하증권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서류제시기간의 기산일인 B/L의 발급일자는 수취선하증권의 발행일인 6월20일이 아니고 B/L상의 “on board notation”的 날짜인 7월5일이므로 개설은행의 부도통보는 부당하다.

신용장에서 유효기일이외에 서류의 제시를 위한 서류제시기간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다. 서류제시기간이라 함은 운송서류의 발행일 후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TIP

B/L date 관련조항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ill of Lading(선하증권)

- a. ii.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a named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by:
 - pre-printed wording, or
 -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 The date of issuance of the bill of lading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unless the bill of lading contains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in which case the date stated in the on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 a. ii. 물품이 신용장에서 명시된 선적항에서 기명된 선박에 본선적재 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미리 인쇄된 문구 또는
 - 물품이 본선적재된 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
 - 선하증권이 선적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선하증권에 본선적재표기가 된 경우에는 본선 적재표기에 기재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용어

B/L (선하증권,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화물을 선적한 사실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그 화물을 수취한 사실을 증명하고, 도착항에서 그 B/L원본과 상환으로 수화인이나 그 지시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이다. 이는 적재된 화물을 환제화한 것으로서 선하증권의 인도는 바로 화물에 대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화물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B/L 원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Q22

분할선적

동일항차, 동일선박 상에 이루어진 분할선적

사례

공장이 인천, 군산과 부산에 있는 A사는 미국의 B은행이 개설한 신용장금액이 US\$100,000인 L/C를 수취하고서 다음과 같이 선적하였다.

항 구	수 량	선적일	금 액	선 박
인 천	10,000 pcs	9. 20	US\$20,000	한국호
군 산	20,000 pcs	9. 21	US\$40,000	..
부 산	20,000 pcs	9. 22	US\$40,000	..

9월24일 거래은행에 선적서류를 매입(Nego)시켰으나 개설은행으로부터 분할선적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할선적이 되었다는 이유로 부도(Unpaid)통지를 받았다.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 ?

A

신용장통일규칙상 신용장에서 분할선적을 금지하더라도 동일항차, 동일선박상에 이루어진 수회의 선적은 분할선적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개설은행에 부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부도를 철회시켜야 한다.

분할선적이라 함은 물품을 일시에 선적하지 않고 2회 이상 분할하여 선적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본 사례에서와 같이 동일선박의 동일항차에 의한 수회의 선적은 비록 선적일자와 상이한 선적항이 기재된 경우에도 분할선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TIP

UCP 관련조항

제31조 Partial Drawings or Shipments(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b. A presentation consisting of more than one set of transport documents evidencing shipment commencing on the same means of conveyance and for the same journey, provided they indicate the same destination, will not be regarded as covering a partial shipment, even if they indicate different dates of shipment or different ports of loading, places of taking in charge or dispatch.

If the presentation consists of more than one set of transport documents, the latest date of shipment as evidenced on any of the sets of transport documents will be regarded as the date of shipment. A presentation consisting of one or more sets of transport documents evidencing shipment on more than one means of conveyance within the same mode of transport will be regarded as covering a partial shipment, even if the means of conveyance leave on the same day for the same destination.

같은 운송수단에서 개시되고 같은 운송구간을 위한 선적을 증명하는 두 세트 이상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그 운송서류가 같은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는 한 비록 다른 선적일자 또는 다른 선적항, 수탁지 또는 발송지를 표시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보지 않는다.

제시가 두 세트 이상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지는 경우 어느 운송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가장 늦은 선적일을 선적일로 본다. 같은 운송방법 내에서 둘 이상의 운송수단상의 선적을 증명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세트의 운송서류로 이루어진 제시는 비록 운송수단들이 같은 날짜에 같은 목적지로 항하더라도 분할선적으로 본다.

Q23

할부선적

앞선 할부선적분에 대한 위반이
뒤의 선적분에 대한 계약해제 사유가 되는지?

사례

A사는 다음과 같이 할부선적(Instalment shipment)을 요구하는 신용장을 받았다.

차 수	금 액	할부선적기간
1차	US\$100,000	4월
2차	US\$100,000	5월
3차	US\$100,000	6월

1차 할부분 US\$100,000을 4월말까지 선적하지 못하여 개설은행의 승인을 받고 네고(Nego)하여 대금이 입금되었다. 5월 20일에 2차 할부분 US\$100,000을 선적하고 네고하였던 바 개설은행이 1차 할부분이 할부선적기간인 4월말 이내에 선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거절을 통보하여 왔다.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인가?

A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하면 할부선적신용장에서 어떤 할부분을 지정기간 내에 선적하지 못하면 당해 분 및 차후 분에 대하여 신용장이 해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에서는 1차분 US\$100,000을 기간 내에 선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입자와 개설은행의 승인을 받고 네고하였으므로 1차분의 선적지연을 이유로 기간 내 선적한 2차분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즉, 은행은 1차분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던가 아니면 대금을 지급할 당시 향후에 선적되는 것은 이미 효력이 없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설의뢰인이 할부선적을 요구하는 목적은 수입상품이 계절상품이거나 수입상의 자금사정, 판매계획, 창고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전량을 수입할 수 없거나 동일물품에 대하여 번거롭게 계속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입상의 입장과 고려하여 수출상은 정확히 할부선적 기간 중 어느 하나를 어기게 되면 그 선적분은 물론 그 이후의 할부선적분에 대해서도 신용장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TIP

신용장통일규칙 관련조항

제32조 Instalment Drawings or Shipments(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If a drawing or shipment by instalments within given periods is stipulated in the credit and any instalment is not drawn or shipped within the period allowed for that instalment, the credit ceases to be available for that and any subsequent instalment.

신용장에서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도록 명시된 경우 동 할부 거래를 위하여 배정된 기간 내에 할부청구나 할부선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 신용장은 해당 할부분과 향후 할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다.

참고

할부선적과 분할선적의 차이

할부선적(Instalment shipments)은 분할선적(Partial Shipments)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할선적은 수출자가 임의로 선적기일 내에 분할하여 상품을 선적하면 되지만 할부선적은 할부선적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신용장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매월 며칠에 얼마씩 선적하도록 지정되어 있다면 이것은 할부선적이다. 그러나 신용장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에 나누어 선적하는 것은 분할선적이다.

Q24 운송인의 화물 분실에 대한 책임 운송인의 화물 분실 시 책임 소재

사례

저희는 유럽의 수출상과 Ex-works 조건으로 일년에 십여차례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운송은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를 통해 항공으로 하고 있으며, 통상 화물에 대한 보험부보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항공화물이 국내에 도착된 후 화주에게 인도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분실·도난 등에 대하여는 정말로 선적전 보험부보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항공운송인이나, 포워더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A

우리나라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책임)에 의하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항공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판단하여 운송약관에 따라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cargo agent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공회사를 상대로, consolidate 또는 forwarder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혼재업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운송인은 운송중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여러 가지 면책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화주가 직접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운송인이 쉽게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운송인이 면책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그러한 모든 판단이나 조치는 보험회사에게 맡기고 화주는 보험금을 받고 손해를 보전하는 것이 편리하다.

TIP

상법 제135조

제135조 (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참고

1. Ex-Works, 당사자의 기본 의무

(1) EXW : Ex Works (named place)작업장 인도조건

매도인의 영업장소나 작업구내에서 계약물품을 buyer에게 인수 가능한 상태로 두었을 때 매도인의 물품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조건이다.

2. 항공운송의 운송계약 대리인의 형태

항공운송의 운송계약체결은 항공회사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항공회사를 대신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해주는 항공화물대리점(cargo agent)과 자신의 운송약관을 가지고 운송인의 자격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혼재업자(consolidator)로 구분된다.

(1) Air cargo agent : 항공화물 운송대리점

항공사 또는 총 대리점(general sales agent)을 대리하여 항공사의 운송약관, 규칙, 운임율표(tariff)와 일정에 따라 항공화물의 판매, 항공화물 운송장의 발행 등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

주요 업무로는 1. 수출입 항공화물의 판매 및 유통, 2. 운송을 위한 준비 – 항공화물 운송장 작성 / 운송 서류준비 / 포장, 포장별 확인작업 / 포장별 레이블(labeling)작업, 3. 수출입 통관 대행, 4. 트럭운송 주선 및 기타 서비스 활동

(2) Consolidator : 혼재업, 항공운송주선업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로서 항공사와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물을 혼재 및 운송을 하는 사업(항공법 제2조)으로 항공운송주선업자는 항공사발행 화물운송장(master air waybill)에 의거 자체 운송약관과 운임표를 가지고 송화인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혼재업자용 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을 발행한다.

가. 주요업무 (수출/수입화물)

1. 화물의 출발, 환적(transit), 도착화물의 이동에 대한 추적
2. 실화물(bulk cargo)을 팔레트 또는 컨테이너화하여 단위화물작업
3. 통관과 문전 서비스 (door to door service)를 위한 조치
4. 수하인을 위한 수입 통관 주선

5. 재수출상품에 대한 제반서류작성과 운송수단 결정과 운송의뢰
6. 국내보세운송 주선

3.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

프레이트 포워더는 운송을 위탁한 고객을 대리하여 화주의 화물을 통관, 입출고, 집화, 환적 또는 배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주가 요구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송하는 자이다.

프레이트 포워더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 | | |
|-------------------|---------------------|
| · 화주에 대한 전문적 조언자 | · 운송계약의 체결 및 선복의 예약 |
| · 수출입 관련 서류의 작성 | · 통관대행 |
| · 운임 및 기타 비용의 입체 | · 포장 및 창고보관 대행 |
| · 보험의 수배 | · 화물의 집화/분배/혼재 |
| · 수출입 업자를 위한 시장조사 | |

Q25 컨테이너 운송계약 컨테이너(Container)의 하자로 인한 화물손상 책임

사례

폐사는 수입하는 업체로서 FOB조건으로 거래를 하였다. 컨테이너를 개봉하여 보니 컨테이너 내부에 내부 벽 및 천장에 물방울이 맺혀 있는 등 습기 문제로 상품에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선박회사, Shipper들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면서 각종 이유를 들어 책임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 1. 컨테이너 도착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문 2. 컨테이너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원인과 원인제공자가 어느 측 인지 등)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있는지?

질문 3. 상품의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A

질문 1과 2 :

컨테이너 도착 시 적하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이 기재되어 있는 검정회사의 검사원 입회 하에 개봉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검사보고서를 발급받아 선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

질문 3 :

상품의 피해는 FOB조건이므로 검사보고서 상 선적 시점이후에 발생된 사고라면 수입업자가 책임지고, 그 전이라면 수출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본 건처럼 컨테이너운송인 경우에는 FOB 조건보다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FOB 조건은 INCOTERMS 서문에서도 물품을 선측 난간을 통과하여 인도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수출자의 영업장이나 CY/CFS에서 인도되므로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본 건에서는 컨테이너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결로현상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므로 특수컨테이너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FOB조건과 FCA조건 차이점**

FOB조건 및 FCA 조건 모두 INCOTERMS의 F 군에 속하는 조건으로서, FOB는 해상운송에만 사용되며, 선축난간을 통과할 때에 물품이 인도되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컨테이너 운송인 경우에는 FOB 조건을 사용하지 말고 FCA 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FCA 조건은 예전의 FOR, FOT, FOB Airport 조건을 합친 조건이다. 따라서 FCA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조건에 사용되며, 물품이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에 인도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FCA 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Container[컨테이너]**

반복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격화된 수송도구로 화물의 단위운송(unit load)을 실현시켜 주는 혁신적인 수송도구이다. 크기별로 다양한 분류는 20feet container 와 40feet container 가 있으며, 구조 및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는 ① Dry Container ② 냉동(Reefer) Container ③ Solid Bulk Container ④ Open Top Container ⑤ Flat Rack Container ⑥ Tank Container ⑦ Ventilated(Pen) Container가 있다.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선적(본선의 난간을 유효하게 통과)할 때까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며 그 이후의 절차와 비용, 위험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FCA(Free Carrier, 운송인도조건)

매수인이 수출통관한 물품을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그 이후의 절차와 비용, 위험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1개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의 인수, 인도, 보관 또는 LCL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적입(stuffing, vanning)하거나 끄집어내는(unstuffing, devanning) 작업을 하는 장소이다.

Q26 CIF조건과 운송 CIF조건에서의 화물멸실 책임

사례

저희는 중동지역에 L/C 결제방식과 CIF조건으로 수출하였다. 최근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공습이 운운되고 있는데, 만약 CIF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해상운송 중 어뢰에 의해 선적품이 멸실되었을 경우 화물멸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A

CIF조건은 운송중 화물의 멸실에 대한 책임은 수입상에 있으나, 보험계약은 수출상이 대신 부여해주는 조건이다. 이때에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수출자는 ICC(C) Clause 만 가입하면 된다. 즉, 전쟁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전쟁위험에 대한 특약을 해야만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전쟁위험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쟁으로 인한 화물의 멸실이나 파손에 대하여 수입상에게 책임이 있다.

TIP**해상적하보험약관**

런던보험협회(ILU)가 제정한 적하보험에 관한 약관이다. 협회화물약관이라고도 한다. ILU에서는 1981년 이전까지는 협회화물약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① 협회적하보험약관(전위험담보) : Institute Cargo Clause(A/R)
- ② 협회적하보험약관(분순담보) : Institute Cargo Clause(W.A.)
- ③ 협회적하보험약관(단독해손담보) : Institute Cargo Clause(F.P.A.).

그러나 약관의 내용이 지나치게 고어체와 난해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전위험담보약관의 담보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분순담보약관과 단독해손부담보약관의 담보범위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분명하지 못한 점이 많았다. 그러므로 1978년에 UNCTAD(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 작성된 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에 따라서 협회적하보험약관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81년 7월 1일에 새로 개정된 협회적하보험약관의 초안은 영국과 기타 국가의 보험회사에게 공람시켜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그 해에 확정되었다. 보상범위의 명칭도 A/R을 (A), WA를 (B), FPA를 (C)로 바꾸었다.

- ① 협회적하보험약관(A) : Institute Cargo Clause(A)
- ② 협회적하보험약관(B) : Institute Cargo Clause(B)
- ③ 협회적하보험약관(C) : Institute Cargo Clause(C).

적하보험약관 (A)에서는 면책위험 외에는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는 포괄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참고**1) CIF조건**

운임보험료포함조건으로 수출국에서 수출항의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이다. 수출상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모든 책임을 지고, 본선의 난간을 통과한 이후에는 수출상은 운송비와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고, 위험은 수입상이 부담하는 조건이다.

2) CIF조건에서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 체결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CIF조건에서는 수출상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지불할 책임이 있고, 해상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CIF조건에서 위험의 이전시기, 보험조건 및 보험당사자

CIF조건에서 화물의 멀실이나 손상의 위험은 본선의 난간(ship's space)를 통과할 때, 실무적으로는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면 수출상에서 수입상으로 이전되어 운송중에 책임은 수입상이 진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수출상이 체결하므로, 보험계약자는 수출상, 피보험자는 수입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수출상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달리 특약이 없는 한 송장금액의 110%에 대하여 런던보험업자협회(ICC)의 구약관의 최저보상조건인 FPA나 신약관의 최저보상조건인 (C)로 부보하면 된다.

용어**Institute Cargo Clause**

ICC(협회적하약관) 런던보험업자협회에서 제정한 화물해상보험 특별약관으로서, 구약관에는 FPA, WA 및 A/R이 있으며, 신약관은 ICC(A), ICC(B), ICC(C)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A/R(All Risks, 전위험담보조건)

적하보험조건의 구약관으로써 제품의 고유한 하자, 선박의 자연, 원자력 피해, 전쟁, 동맹파업 등을 제외한 모든 우발적 사고가 담보되는 조건으로, 그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WA(With Average, 단독해손 또는 분순담보조건)

ICC(Institute Cargo Clause: 협회적하약관)의 구약관 중 기본약관의 하나로 신약관인 ICC(B)에 해당된다. 이는 특정 해난 이외의 해난에 기인하는 손해 및 비용(전손, 단독해손, 공동해손, 구조비 등의 해난)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를 보험자가 전보하는 조건이다.

Q27 운송지연 운송회사의 도착지연에 관한 클레임

사례

우리 회사는 독일에서 철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회사이다. 얼마 전 물건을 주문하였는데 일정(schedule)이 5월 19일날 독일에서 비행기가 출발하여 20일에 들어오기로 되어있었다. 무척이나 급한 오더였고 물건이 도착한 즉시 고객(client)에게 납품을 하기로 되어있어서, 물건을 추적해본 결과 아직까지도 독일에 있고 오늘 23일에 비행기로 보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일단 급한 물건을 먼저 특급배송(T.N.T)로 추가로 주문하여 내일정도 물건을 급한대로 받을 수 있고, 오늘 독일에서 출발하는 물건은 다음 주나 되어야 들어올 것 같다고 한다. 우리 회사가 추가로 주문한 특급배송 비용과 회사의 아주 큰 고객인 거래처에 대한 신용저하 등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클레임을 걸어 보상받아야 하는지?

A

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경위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지만, 일단 본 건은 두 가지 경우로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는, 항공운송인이 운송을 위하여 물품을 받아 놓고 미쳐 항공기에 선적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운송인은 자신의 과실로 운송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도착지연으로 인하여 실제로 어떠한 손해가 발생되었는지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아마도 특급배송(T.N.T.)비용정도 보상이 가능할 것 같다. 거래처의 신용저하에 대하여서는 보험보상이 되지 않고 운송인도 그러한 손해까지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 또한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거래는 항공으로 운송되는 거래이므로 아마도 FCA, CIP, CPT 등의 거래조건 중 하나로 이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어떠한 조건이 사용되었다라도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후에는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손해배상의 청구나 보험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수출자가 선적자체를 지연시킨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간매매계약상의 문제이어서 수출자가 선적지연으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당사자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의 클레임해결조항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로 발생된 통상의 손해의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신용실추에 대한 손해의 배상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TIP

AWB와 B/L의 차이점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 Bill)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서, 해상운송에서의 선하증권(B/L)에 해당되며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 부른다. 기본적인 성격은 선하증권과 전혀 다르다. 선하증권이 화물의 수취를 증명하는 동시에 유가증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유통이 가능한 반면, 항공운송장은 화물의 수취를 증명하는 영수증에 불과하며 유통이 불가능하다.

운송계약은 항공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시점, 즉 AWB에 서명하거나 항공사 또는 해당 항공사가 인정한 항공화물취급대리점이 AWB에 서명한 순간부터 유효하며 AWB상에 명시된 수화인(Consignee)에게 화물이 인도되는 순간 소멸된다. 운송장은 화물과 함께 보내져 화물의 출발지, 경유지, 목적지를 통하여 각 지점에서 적절한 화물취급 및 운임정산 등의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화주들이 항공운송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업무의 혼란을 가중시키거나 손해를 입는 사례가 있으므로 항공운송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항공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차이점>

항공화물운송장(AWB)	선하증권(B/L)
비유통성	유통성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한 화물수취증	유가증권
기명식	지시식
수취식(창고에서 수취하고 발행)	선적식(분선 선적 후 발행)
송하인이 작성함이 원칙	선사가 작성

**복합운송인의 책임**

복합운송인의 책임관계를 살펴보면, 복합운송인은 물품을 인수한 시점에서 이것을 인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물품의 멸실, 손상, 인도지연이 자기 자신 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 또는 태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멸실, 손상 및 인도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인도의 지연은 물품이 명시적으로 합의된 시일 내에 인도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성실한 복합운송인에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일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때에 발생한다.

만일 물품이 정해진 인도기일로부터 90일 내에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권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물품을 멸실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다.

**FCA(Free Carrier)**

운송인도조건으로 매수인이 수출통관한 물품을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 등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그 이후의 절차와 비용, 위험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한다.

CPT(Carriage Paid To)

지정목적지 운임지급인도조건으로 CFR 조건과는 달리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래조건으로 여러 명의 운송인이 사용되는 복합운송인 경우에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되었을 때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지정목적지 운임·보험료지급인도조건으로 CPT 조건과 양당사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며 그 이외의 책임과 비용부담은 CPT 조건과 같다.

Q28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B/L과 FCR의 차이

사례

저희가 물건을 선적한 후 B/L을 보내주었더니 바이어쪽에서 굳이 FCR을 보내달라하는데, 거의 기능이 비슷하지 않은지?

만약 L/C상에 FCR을 요구하는데 B/L을 발행하여 은행에 제시하게 되면 하자 NEGOG가 되는지?

A

선하증권이란 특정선박에 특정화물이 적재되었다는 것을 선주, 선장 또는 선주의 대리인에 의해 서명된 문서이며 아울러 그 화물을 화제화한 유가증권이므로 선하증권은 선적된 화물을 대표하게 된다. 따라서 선하증권은 매매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이에 대하여 FCR(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은 말 그대로 운송주선인이 발행하는 운송주선인의 화물수취증이다. B/L은 선박회사가 발행하지만, FCR은 forwarder가 발행하는 것으로 만약 이를 L/C상에서 요구하는 문구가 있다면 B/L과는 별개로 FCR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바이어쪽에서 FCR을 요구하였을 경우 FCR을 제시하여야 하며, FCR없이 B/L만 제시한 경우는 하자 NEGOG가 된다.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의 요건

제21조 Non-Negotiable Sea Waybill(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a. A non-negotiable sea waybill, however named, must appear to:

a.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은 어떤 명칭을 사용하던 간에 다음과 같이 보여야 한다.:

i.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and be signed by:

- the carri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 the master or a named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Any signature by the carrier, master or agent must be identified as that of the carrier, master or agent.

Any signature by an agent must indicate whether the agent has signed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or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i. 운송인의 명칭이 표시되고 다음의 자에 의해서 서명되어야 한다.

- 운송인 또는 운송인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 선장 또는 선장을 위한 또는 그를 대리하는 기명대리인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은 운송인, 선장 또는 대리인의 서명으로서 특정되어야 한다.

대리인의 서명은 그가 운송인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또는 선장을 위하여 또는 대리하여 서명한 것 인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ii. indicate that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a named vessel at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by:

- pre-printed wording, or
-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n which the goods have been shipped on board.

The date of issuance of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unless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contains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in which case the date stated in the on board notation will be deemed to be the date of shipment.

If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contains the indication "intended vessel" or similar qualification in relation to the name of the vessel,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date of shipment and the name of the actual vessel is required.

ii. 물품이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에서 기명된 선박에 본선적재 되었다는 것을 다음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미리 인쇄된 문구 또는
- 물품이 본선적재된 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이 선적일자를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일을 선적일로 본다.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에 본선적재표기가 된 경우에는 본선적재표기에 기재된 일자를 선적일로 본다.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이 선박명과 관련하여 "예정선박"이라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선적일과 실제 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적재표기가 요구된다.

iii. indicate shipment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redit.

If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does not indicate the port of loading stated in the credit as the port of loading, or if it contains the indication "intended" or similar qualification in relation to the port of loading, an on board notation indicating the port of loading as stated in the credit,

the date of shipment and the name of the vessel is required. This provision applies even when loading on board or shipment on a named vessel is indicated by pre-printed wording on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iii.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하역항까지의 선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이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을 선적항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선적항과 관련하여 "예정된"이라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과 선적일 및 적재선박명을 표시하는 본선적재 표기가 요구된다. 이 조항은 기명된 선박에의 본선적재가 미리 인쇄된 문구에 의하여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에 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iv. be the sole original non-negotiable sea waybill or, if issued in more than one original, be the full set as indicated on the non-negotiable sea waybill.

iv. 유일한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원본이거나 또는 원본이 한 통을 초과하여 발행되는 경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에 표시된 전통(full set)이어야 한다.

v. contain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or make reference to another source containing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short form or blank back non-negotiable sea waybill). Contents of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will not be examined.

v. 운송조건을 포함하거나 또는 운송조건을 포함하는 다른 출처를 언급하여야 한다(약식 또는 뒷면 백지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운송조건의 내용은 심사되지 않는다.

vi. contain no indication that it is subject to a charter party.

vi.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어떤 표시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b.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ranshipment means unloading from one vessel and reloading to another vessel during the carriage from the port of loading to the port of discharge stated in the credit.

b. 이 조항의 목적상, 환적은 신용장에 기재된 선적항으로부터 하역항까지의 운송도중에 한 선박으로부터 양하되어 다른 선박으로 재적재되는 것을 의미한다.

c. i. A non-negotiable sea waybill may indicate that the goods will or may be transshipped provided that the entire carriage is covered by one and the same non-negotiable sea waybill.

c. i.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은 전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에 의하여 포괄된다면 물품이 환적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ii. A non-negotiable sea waybill indicating that transhipment will or may take place is acceptable, even if the credit prohibits transhipment, if the goods have been shipped in a container, trailer or LASH barge be evidenced by a container, trailer or LASH b

ii. 환적이 될 것이라거나 환적될 수 있다고 표시하는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은, 물품이 컨테이너, 트레일러, 래시 바지에 선적되었다는 것이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비록 신용장이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수리될 수 있다.

d. Clauses in a non-negotiable sea waybill stating that the carrier reserves the right to tranship will be disregarded.

d. 운송인이 환적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기재한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의 조항은 무시된다.

참고

선하증권(B/L)

물품을 선박에 선적하면 선박회사에서는 물품을 대신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이 선하증권은 화물을 화체화한 것으로 물품을 대신하는 유가증권이며, 물품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처분증권이고, 선하증권을 양도함으로써 타인에게 물품을 양도할 수 있는 유통증권이다.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물품은 선하증권을 통해서만 양수·양도나 매매될 수 있다.

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서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선하증권은 원본이 보통 3통이 발행되어 운송인에게 제일 먼저 제시되는 선하증권에 대하여 물품을 인도하고 그 순간에 나머지 선하증권원본들은 효력을 상실한다.

용어

FCR(Forwarder's Cargo Receipt or 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 운송주선인 화물수령증)

이것은 B/L이 아니므로 Received B/L과는 성격이 다르며 단지 운송주선인의 화물에 대한 Receipt에 불과하다. 통상 수출업자가 미리 운송주선인을 지정하여 놓고 운송 건마다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이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편의상 신용장상에 FCR을 인정할 때 양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통 가능한 운송서류로서 그 효력이 발생한다.

Forwarder(운송주선인)

운송의뢰자(화주)를 위하여 물품의 운송에 참여하여 화물을 집화·분배하는 무선박운송인(non-vessel carrier)을 말한다.

Q29

Surrender B/L 과 L/G

써랜더(권리포기) 선하증권과 수입화물선취보증서**사례**

국내 A사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수입상에게 후지급 T/T방식으로 가공된 우피를 수출하였다. 긴급히 물품이 필요한 중국의 수입상은 물품이 도착하였는데, B/L이 없어 물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자, B/L을 SURRENDER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국내 A사는 수입상의 신용을 믿고 B/L을 SURRENDER 해줬는데 수입상은 물건을 찾아가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좋은 해결방법이 있는지?

A

B/L Surrender란 선적서류 없이 물품을 찾을 때 이용되는 것으로 원본 B/L을 포기하고, 물품을 인도받기 위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처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적서류보다 물품이 먼저 도착하여 바이어의 요청으로 선적서류 없이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때 B/L을 Surrender하게 된다.

선박회사에서는 B/L의 원본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해야 하지만, 물품이 B/L 원본보다 먼저 도착하였을 경우, 바이어의 요청으로 선적자(수출자)가 선박회사에 의뢰하게 되면 B/L 사본에 Surrender라는 도장을 찍어 팩스 등으로 바이어에게 보내주고, 바이어가 이것을 선박회사에 제시하면 B/L 원본없이도 물품인수가 가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B/L 원본은 효력이 포기(Surrender)되므로 Surrender B/L이라 부르게 된다.

위 사례에서 수입상이 이미 물건을 찾아 잠적한 경우는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고 하겠다. 본 건에서는 수입상이 현재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라면 계약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재조항에 따르고 중재조항이 없다면 중국 현지의 상대방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소송을 해서 채권을 받아오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출상은 외상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상의 신용을 100% 신뢰할 경우에만 Surrender B/L을 승인해 주어야 한다.

TIP**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

해상운송에서 화물을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했을 때,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 요청하여 발급받는 서류로서, 개설은행이 운송인에게 수입업자에게 선하증권원본이 없더라고 물품을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만일 이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운송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서이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특히 거리가 가까운 국가에서 수입할 때 많이 발생될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에 담보력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수출업자로부터 여신을 공여받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L/G는 사실 화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수하인이 L/C 발행신청인으로서 original B/L상의 실제 수하인을 은행이 증명해주는 보증서에 불과한 서류로서 관행서류일뿐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L/G가 부정 사용된 경우 선박회사는 original B/L 소지인에게 물품인도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도 “L/G의 상관습은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운송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선하증권 소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입장에 있다.

Surrender B/L과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Surrender B/L은 수출상의 위험부담으로 수입상이 물품을 찾아가는 것이어서 운송인도 아무런 위험부담이 없다. 그러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은행과 운송인이 거의 연대적으로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Surrender B/L은 주로 T/T결제방식에서, L/G는 신용장방식에서 이용된다.

Surrender B/L과 Original B/L의 관계

Surrender B/L은 화물에 대한 주인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B/L상에 Surrender라는 문구를 찍어준다. 그러면 이 B/L의 복사본 만을 가지고도 화물을 수취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런게 없으면 Original B/L 없이는 화물을 수취할 수 없다. 단순히 그 차이이며, 통상 가까운 국가간의 거래시에 확실하게 믿을수 있는 거래시에만 Surrender B/L을 발행한다. 가까운 국가간의 거래시 선적 서류를 수출자가 포워딩으로부터 받아서 수입자에게 보내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대금을 먼저 받았을 경우 Surrender B/L을 fax로 보내주면 그것으로 수입상이 통관 및 화물 수취 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참고**L/G 발급신청서류**

- ① 수입담보화물대도(선인도)신청서
- ② 수입담보 화물처분 약정서(공증인의 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 ③ 선하증권(B/L) 사본
- ④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사본
- ⑤ 포장명세서(P/L) 사본
- ⑥ 신탁양도증서(공증인의 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 ⑦ 수입신용장 사본
- ⑧ 기타 개설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상법 제6절 운송증서 제852조 ~ 864조 참조

용어**Surrender B/L(권리양도 선하증권)**

운송회사가 선하증권 원본(Original B/L)을 발급하여 화주에게 주지 않고 “Non-Negotiable Copy”에 자신의 Sign방을 찍어 이것으로 수입업자가 물품을 찾을 수 있도록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다.

L/G (Letter of Guarantee, 화물선취보증서)

수입지에 선적서류 원본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자가 서류도착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입화물을 통관하려고 할 때 신용장 개설은행이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Q30 항공운송 항공운송 중 박스 손상 발생

사례

항공운송으로 물건을 CIF 인천 조건으로 수입을 하였는데, 물건을 받아보니 외부박스 가 물에 젖어서 내부의 개별박스까지 다 스며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항공운송회사 측에서는 자신들이 물품수령 당시 우천으로 인해 발생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포장손상 또한 무척 민감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지?

A

CIF조건이란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으로 수출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물품 이 인도되는 조건이다. 수출상은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을 부담하고, 물품가격에는 도착항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선에 선적된 이후에 발생되는 위험은 수입상이 부담하게 된다. CIF조건에서 는 수출상이 수입상을 위하여 해상위험에 대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주지만 위험은 수입상이 지게 된다.

이렇게 CIF조건은 해상운송에 적용되는 무역조건이기 때문에 항공운송 시에는 이 조건 을 선택하여서는 안된다. 항공운송시 CIF와 비슷한 상황 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은 CIP조건이다.

본 건의 경우 처음부터 불합리한 조건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으 로 아래와 같이 유추판단할 수 밖에 없다.

본 건에서는 운송중의 사고가 항공운송인이 내륙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받는 과정에서 발생된 손해이며 항공기에 적재되기 이전에 발생된 손해이다. CIF조건에서는 물품이 본선 난간을 통과한 시점에 물품이 인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본건 손상의 발

생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물품의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은 수출상이 져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사실적인 문제로 따져보면 운송인들은 대부분 복합운송주선인들로서 운송인은 수출국과 수입국의 내륙운송과 해상운송을 한꺼번에 인수받아 일괄운송을 하게 된다.

따라서 운송인은 수출자의 영업장이나 CFS에서 물품을 인수받게 되며, INCOTERMS 의 CIF조건의 원래의 뜻은 운송인이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인수받는 순간에 수입자에 게 물품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수출자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 물품이 자신의 관할을 떠난 후에 발생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

만일 이 조건의 계약서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의 위험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수출상이 수출지의 내륙운송구간 동안 자신들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사항도 발생되게 된다.

원래는 이 거래에서는 당사자간에 CIP조건을 사용하였더라면 복합운송인이 수출자의 영업장 혹은 CFS에서부터 수입자의 창고까지 창고간 운송을 하였을 것이고 그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도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받는 장소인 수출자의 영업장 또는 CFS에서부터 보험구간이 개시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다.

본건에서는 손상의 발생이 물품이 운송인(복합운송인)의 관할 하에 있을 때 발생된 것 이기 때문에 운송인이 손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다만 운송인에게 청구를 누가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운송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라고 한다면 그 손해 를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러나 아마도 복합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복합운송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면 복합운송인은 수출국의 내륙운송인에게 손해를 청구할 것이다.

용어**CFR(Cost and Freight)**

지정목적항 운임포함인도조건으로 CPT 조건과 유사하나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으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도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CFR조건과 마찬가지로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지정목적지 운임보험료지급 인도조건으로 복합운송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지정 목적지까지 전 운송비 및 보험료를 매도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이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컨테이너 1개를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의 인수, 인도, 보관 또는 LCL화물을 컨테이너 안에 적입(stuffing, vanning)하거나 끄집어내는(unstuffing, devanning) 작업을 하는 장소이다.

TIP**항공수출화물의 취급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항공화물대리점을 통하여 육로로 화물터미널에 도착 및 장치장에 반입
- (2) 화물의 척량 검사 및 수출화물 반입계 발급.
- (3) 세관에 수출화물 반입계 제출후 보세구역 장치 지정 및 승인
- (4) 수출신고서, 신용장원본, 수출승인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검사증 등을 첨부하여 수출 신고
- (5) 수출신고서류의 심사 및 화물 검사
- (6) 수출면허
- (7) 항공사에 운송장 및 화물의 인계
- (8) 항공기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적재 용기에 적재작업 실시
- (9) 항공기에 탑재 작업은 통관지와 항공기의 출발지가 같은 경우는 대리점이 직접 운송하여 반입을 하며, 다른 경우는 탑재항공사의 보세장치장에 반입이 된다.
- (10) 적하목록 (manifest) 및 환적 적하목록(transfer manifest)작성
- (11) 항공기 출발 및 도착지 중간 기항지의 탑재내용, 특수화물의 명세, 수하인 및 탑재위치 등의 통보

참고**국내 경제 관련 사이트**

대한상공회의소	www.korchem.net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KITA.net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KOTRA	www.kotra.or.kr
바이코리아	www.buykorea.org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한국은행	www.bok.or.kr
수출입은행	www.koreaeexim.go.kr
재정경제부	www.mofe.go.kr
자식경제부	www.mocie.go.kr
관세청	www.customs.go.kr
통계청	www.nso.go.kr/newnso
WTO(세계무역기구)	www.wto.org
한국개발연구원(KDI)	www.kdi.re.kr
DDA(도하개발아젠더)	www.wtodata.net
경제개방정책포럼	http://elpf.kiep.go.kr
한국복합운송협회	www.kiffa.or.kr
한국수입업협회	www.koima.or.kr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2004/index.php
기술표준원	www.kats.go.kr
부산항	www.portbusan.or.kr
부산항만공사	www.pba.or.kr
부산신항만 주식회사	www.pncport.com
schedulebank	www.schedulebank.com
Hutchison Korea Terminals	www.hktl.com
EC플라자	http://www.kr.eckorea.net
(주)한국콤팩스	http://www.kr01.kompass.com
T Page	www.tpage.com
The European Business 디렉토리	www.europages.com
미국의 주요 대기업 정보	www.hoovers.com

IV 전자무역 관련 클레임

Q31	온라인 무역업체의 카드사기	98
Q32	전자무역에서의 대금지급 거절	100
Q33	가격 오기에 따른 계약 취소 청구	103
Q34	구매한 물품이 표시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급된 경우	106

Q & A

Q31

On Line 카드사기 온라인 무역업체의 카드사기

사례

모장신구, 보석류 제조, 수출업체인 S사는 2000년초부터 인터넷상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한 온라인 무역전문 B2B 쇼핑몰을 국내 정보통신업체인 D사와 연계하여 구축하였으며, 이 업계에서 꾸준히 성장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이지리아 바이어로 부터 결제된 카드대금이 5~6개월 후에야 D사로부터 부도처리 되었다고 통보를 받고 현재 물건대금으로 받아야 할 입금 예정액 중에 그 때 발생된 부도카드 금액이 차감된다 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 회사에서는 카드대금이 모두 자사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모두 제작, 생산해서 선적하였는데 5~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카드가 부도처리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A

이는 e-Market Place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업체와 이곳에 쇼핑몰을 올리는 수출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정보통신업체에서도 해외 카드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다시 돈을 반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정보통신업체에서는 수출자인 쇼핑몰 운영업자와의 계약에 책임전가조항을 삽입해 놓았기 때문에 수출자는 어쩔 수 없이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으며, 아직은 전자무역을 위한 국제적인 안전장치가 미흡하므로 거래당사자 각자가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

용어

B2B [Business to Business]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TIP

전자무역에서의 사기 예방 방법

한국통상정보학회가 발표한 '인터넷 무역 사기와 예방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무역협회, 실크로드 21 등의 기관 및 업체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전자무역 사기 사건은 인터넷의 특성 및 바이어의 의도적인 접근으로 인한 피해도 있으나 이러한 상황을 철저히 대처하지 못한 무역업체들의 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인증 인프라의 부족 등의 기술적인 문제와 국가간의 제도 미비로 피해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고서가 발표한 피해사고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신용조사 부재

전자무역은 거래상대방의 익명이 보장되기 때문에 거래제의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수다. 그러나 거래성사에만 급급한 나머지 상대방이 높은 가격에 수입하겠다거나 대규모의 거래를 제의하는 경우, 또는 상식 이하의 낮은 제품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제의에도 의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e메일에 의한 거래에만 의존하는 경우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연락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으며,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연락처에는 수신희사명이 아닌 개인이름을 알려주고 연락처도 회사번호가 아닌 휴대폰번호만 알려주는 경우 등은 사기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2) 결제방식의 문제

전통무역과 마찬가지로, 전자무역에서도 결제방식으로 송금방식을 택할 경우 대금회수나 물품인수에 대한 리스크가 매우 높다.
수출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수표로 결제를 요구하거나 사후송금을 요구하거나 또 수입의 경우 해외공급자가 선지급을 요구하면 사기의 가능성성이 높다. 피해사례의 대부분은 송금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외수입상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품이나 샘플을 미리 인수하기 때문에 국내 수출상으로서는 대금회수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신용방식은 그 자체의 한계로 인해 전자무역은 물론 전통무역에서도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개설은 행에 확인을 한다거나 신용조사를 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3) 중소무역업체의 증가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퇴사한 무역업 종사자 중 다수가 무역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98년부터 소규모 중소무역업체 수가 크게 증가했다. 연간 수출규모가 1000만달러 이하의 무역업체 수가 97년 2만4879개였던 것이 98년말에는 3만4522개로 크게 증가했고, 99년에는 3만1089개사로 더욱 늘어났다. 이들 중소무역업체들은 대기업과 달리 해외 정보망이 취약한데다 무역실무에 익숙하지 못해 거래상대방의 사기행각에 쉽게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4) 거래실적에 대한 집착

사기행각은 주로 거래조건이 양호하거나 매력적인 경우가 많아 국내 무역업체 종사자들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특히 자사상품에 대한 해외수요가 비수기이거나 판매가 부진할 경우 거래실적에 집착하여 이러한 사기행각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Q32 전자무역의 결제방법 전자무역에서의 대금지급 거절

사례

정보통신관련 단말기개발업체인 국내 M사는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해외에 수출하였다. 온라인 상에서 인도네시아인이 동 제품을 구입했고, 이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서비스업체 P사를 통해 국내 A카드사로 보내졌으며, A카드사는 인도네시아의 agent인 B 카드사로 카드승인 요청을 하였다.

인도네시아의 B카드사로부터 승인이 오자 M사는 제품을 배송했고, 대금이 결제되었다. 대금결제는 인도네시아의 B카드사로부터 국내 A카드사로 송금되었고 다시 온라인 서비스업체 P사를 통해 M사로 입금되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카드 소유자는 물품의 수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서 자신은 그런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대금결제를 거부한다고 하였다. 아마도, 분실카드를 이용했거나 아니면 카드번호를 도용한 사기꾼들이 한 짓인 것 같기도 하나 명확하지는 않다.

어찌되었건 인도네시아의 B카드사는 국내 A카드사에 대금반환을 요구하고 다시 국내 A카드사가 온라인 서비스업체 P사에 반환을 요구하고, 온라인 서비스업체 P사는 M사에게 대금반환을 요구하여 왔다. M사는 이미 카드승인에 따라 제품까지 발송을 끝냈는데(약 1억원 이상) 다시 대금반환을 할 수는 없다고 항의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업체 P사가 주장하는 것은 "해외발급카드의 경우 M사의 고객이 사용한 해외카드의 부도 발생시 그 금액의 손실은 M사에게 귀책한다"라는 계약서상의 조항을 근거로 대금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M사가 책임이 있는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A

전자무역이라고 하여 일반 off-line무역과 법률적으로 크게 다를 것은 없다. 본 건에 있어서 매수인과의 문제를 인터넷서비스업자나 신용카드회사에 전가하기 위해서는 처음 거래 시에 인터넷서비스업체에서 제시한 거래약관과 그 인터넷서비스업체와 신용카드 회사 간에 맺어진 계약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의뢰자가 말하고 있는 위 약관에서 대금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등에 관한 조항들을 확인하여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쇼핑몰의 약관을 비롯하여 다른 관련 약관이나 계약조항들도 대부분 B to C(Business To Customer, 기업과 소비자간 전자상거래)거래를 위주로 만들어진 약관들이므로 무역대금결제와 관련된 특별한 조항은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되며, 특히 위업체는 일반 소비자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B to B로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본 사건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외국의 매수인과의 문제이며, 그 매수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되지 않는 한 그 매수인의 소재지 국가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여야 하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매수인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사기를 행할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는 이미 물품도 없고 매수인이 변제능력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지의 법 절차에 따라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만일 매수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확실하다면 형사고발을 하는 방법도 물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매수인과 연락을 취하여 그 매수인이 처음부터 사기의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며, 만일 그러한 사기의 의사가 아니었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지에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현지에서의 민사소송절차는 절차가 번거롭고 복잡할 뿐 아니라 비용과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분쟁을 자신이 옳다고 하여 무조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은 이윤이 목표인 만큼 가장 손해를 적게 해결하는 것이 상거래의 특성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무역이라는 것은 일반 국내교역과 달리 매도인의 물품인도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있어 시간적·공간적 격차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무역에서 이러한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무역거래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존의 off-line무역에서는 오랜 동안의 관행들이 INCOTERMS나 신용장통일규칙(UCP) 등의 형태로 정형화되었지만 전자무역에서는 아직 세계적으로 통일된 관행이나 관습이 없을 뿐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모두 예측하여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하여 두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즉, 매도인은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대금을 먼저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확실한 대금수령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며, 반대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물품을 받거나 최소한 자신이 요구하는 물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보통 전자무역은 B to C거래를 위주로 하여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 매수인이 먼저 대금을 입금한 후에 물품이 송부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소액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본 건에서와 같이 대금이 1억이 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러한 통상의 B to C거래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거래의 안정성이 문제가 된다.

특히 대금지급방법에 있어서 기존의 off-line 거래에서의 무역결제방식인 D/A거래나 D/P거래 등 추심방식의 거래에서는 은행이 중간에 개입을 하여 추심을 행함과 동시에 금융의 편의까지 제공함으로써 무역거래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시간적·공간적 격차를 해결하여 수출자는 선적과 동시에 물품대금을 결제 받으며, 수입자는 물품수령 시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추심방식의 거래에서는 상대방의 신용문제와 관련한 거래의 안정성까지 보장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에서는 거래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시간적·공간적 격차 뿐만이 아니고 당사자간의 신용문제까지도 해결함으로써 명실 공히 국제무역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결제방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직 전자무역에서는 이러한 국제적 관습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안정성 있는 제도의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신용카드를 비롯한 전자지급제도(Electronic Payment System)가 개발이 되고 그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논의차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무역거래에서는 전체 거래절차를 전자무역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매매계약서의 작성, 대금결제, 물품의 인도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off line 무역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eUCP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사회 각분야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무역거래에서도 전자무역의 현실화로 인하여 2000년 5월 개최된 국제상업회의소 은행기술실무위원회는 향후 전자무역의 발달에 대비하여 당시 UCP500과 종이신용장에 상응하는 전자적 자료처리에 있어 가교역함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기술적 변화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UCP규칙을 개정 혹은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은행위원회는 UCP의 추록으로 적절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하여 UCP, 전자무역, 법적문제 그리고 운송관련 산업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였다. 은행위원회는 이러한 권고안을 승인하였고 18개월에 걸친 작업반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전자적 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의 새로운 주제 즉, eUCP(The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 for Electronic Presentation)를 제정하여 2002년 4월 1일 제정·공표하였다.

Q33 전자무역에서의 계약 가격오기에 따른 계약 취소 청구

사례

신청인 L씨는 C인터넷 쇼핑몰에서 PDA를 현금 할인가 57,000원에 구입 신청하고 해당 쇼핑몰로부터 구매 확인 메일을 받고 송금 완료하였으나, 당일 C쇼핑몰에서 가격에 오류가 있었다는 메일을 보내왔다. 신청인은 계약이 유효하므로 물건을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다시 보냈다. 다음 날, 해당 쇼핑몰의 사장으로부터 직원의 실수로 인해 가격이 잘못 입력되었으니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식 가격으로 구매해달라는 요청의 전화를 받았다. 쇼핑몰 측에서는 실수에 대해 사과하여 왔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송금액을 환불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오랜 시일이 경과하였는데 환불액이 입금되지 않았고, 계좌번호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되지 않았다. 현재 어떠한 연락도 없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신청인이 물품 인도를 청구하게 되었다. 이의 해결 방법은?

A

일반적으로 전자거래상에서의 의사표시는 송신자의 입력 → 저장 → 전송 → 수신자의 컴퓨터에 입력 → 수신자의 확인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전자거래의 경우도 기존 계약과 마찬가지로 양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침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다.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문서는 작성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이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송신된 것으로 보며, 수신자가 지정한 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수신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수신자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성립된 계약에 대하여 컴퓨터 입력착오나 전송결함으로 표의자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전자거래가 성립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 경우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므로 표의자의 컴퓨터 입력착오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속하므로 취소가 안되고, 전송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본 건의 경우 인터넷 쇼핑몰 상의 청약에 대해 L씨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판매자는 인터넷상에 게시된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본 건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구·한국전자거래진흥원)내의 전자거래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피신청인측에서 담당자의 불찰을 충분히 인정하고 환불 조치를 즉시 이행 할 것과 업무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신청인에게 가능한 시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원래 가격의 절반을 보상책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신청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합의 종료되었다.

TIP

1. 컴퓨터를 통한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가?

전자상거래에서는 의사표시가 단순히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입력의 오류나 버튼을 잘못 클릭하거나 전자데이터의 전송시의 에러, 불도달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화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전자매체에 입력된 자료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둘째, 프로그램(Program)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경우.

셋째, 전자매체의 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위의 경우를 차례로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방이나 제3자의 사기나 협박에 의해 전자매체에 입력된 자료 자체에 하자가 발생된 경우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둘째,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입력된 수치들을 연산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잘못된 수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과 같이 프로그램 자체의 잘못으로 전자화된 의사표시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로 보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셋째, 그러나 전자화된 의사표시의 하자와 관련하여 전자매체인 정보통신망의 문제로 전자화된 의사표시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는 전자화 된 의사표시의 하자로 볼 것이 아니라 전자적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발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우리나라 민법 제109조, 제110조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② 전 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란?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구·한국전자거래진흥원)내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 그 피해를 구제하여 전자거래의 신뢰성 제고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도모하는 분쟁조정기구이며, 본 위원회의 조정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비공개 원칙하에 진행되고 있다.

Q34

전자무역에서의 하자담보책임

전자무역으로 구매한 물품이 규격이 상이하고
표시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지급된 경우

사례

거위알 공예 전문가인 국내 수입상은 미국의 거위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위알을 주문하여 물품을 배송받았다. 그러나, 배송된 물품을 확인해 본 결과 거위알의 경우 사이즈에 따라 각각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데 주문한 사이즈에 포함된 거위알 중 반 이상이 해당 사이즈의 규격보다 작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또한 처음 물품 주문시 표시된 배송료보다 200달러 이상 비싼 가격으로 카드 결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의 해결방법은?

A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은 청약에 대하여서는 그대로 지켜야 하므로 사후에 사정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이트 개설자는 그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인정하고 순순히 배상에 응한다거나 협상에 응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사이트의 약관에 의한 관할지에서 중재나 소송을 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이트개설자 국가의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상 현재 전자상거래가 B to C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금액규모가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소액의 클레임 때문에 타국에 가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자무역의 경우에는 off line 거래보다 더 신중하게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나 기타 의심가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된 뒤에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청인인 국내수입상은 주문시 표시된 배송료와 결제된 배송료의 차액 및 사이즈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불을 청구한 반면에 피신청인은 거위알의 크기를 정확히 맞추기는 힘들지만 신청인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크기의 차에 따른 차액은 환불해줄 수 있지만, 배송료의 경우 표시된 금액은 대략적인 가격이고, 청구된 배송료는 물품의

포장에 따라 배송업체가 책정하여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피신청인 업체에서 차액을 환불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본 건은 배송료 부분에 대한 피신청인 측의 설명에 따라 거위알의 크기에 따른 차액의 환불에 신청인이 합의함으로써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졌다.

TIP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외국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의 수입절차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외국제품 구매방식은 일반적으로,

-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상품전시 → 소비자의 주문 → 쇼핑몰관리자가 외국에 주문
- 외국에서 물건 확보 → 대금입금 → ① 외국에서 물건을 한국소비자에게 직접 우편물로 배달,
- ② 외국에서 우편으로 한국의 쇼핑몰 사무소로 물건을 배달
- 한국의 쇼핑몰 사무소에서 다시 한국의 소비자에게 배달

의 형태를 갖게 된다.

V 무역사기

Q35	사기거래로 법원에서 지급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110
Q36	지급거절된 수입물품의 반송	112
Q37	위조된 서류에 대한 대금지급정지 가처분신청	114
Q38	선하증권 원본을 수입상에게 직송하도록 한 신용장	116
Q39	운송서류 위조	118
Q40	품질하자로 이유로 대금결제 거부	120

Q & A

Q35 신용장사기 사기거래로 법원에서 지급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사례

한국의 갑사는 필리핀으로부터 알미늄 크랩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대금지급조건은 신용장조건이었다.

계약조건인 CIF부산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선적을 하였고 서류가 도착하기 전에 물품이 부산에 먼저 도착하여 갑사는 은행에서 L/G를 발급받아 물품을 찾아서 보니 물품의 90%가 품질불량인 저급품이 선적된 것을 알았다.

이에 갑사는 즉시 법원에 대금지급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 법원에서는 본 신용장의 서류가 아직 도착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수출자가 추심 nego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개설은행에서도 이를 근거로 nego은행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거절을 통지하였으며, nego은행도 추심 nego이므로 아직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을 거절하였다. 이 후에 수출자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찾아가고 왜 대금지급이 안되는지 몇 번 문의가 오다가 소식이 단절되었다고 한다. 갑사는 대금지급은 막을 수 있었지만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거래처와 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었으므로 법원에 본안 소송을 하여 도착된 물품에 대하여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A

본간에서는 사기거래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고 다행히 수출자가 추심 nego를 하여 nego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만일 수출자가 추심 nego를 하지 않고 정식으로 nego를 하였다면 아무리 사기거래라는 것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개설은행은 nego은행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종종 아무 생각없이 은행 L/G를 받아 물품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사전에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LG를 제출하고 물품을 찾아야 한다. 일단 L/G를 제출하고 물품을 찾은 경우에는 대금지급거절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수인인 갑사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찾아온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나 매도인이 연락

이 되지 않고 있다. 매수인으로서는 국내 개설은행을 상대로 신용장대금 상환의무없음에 대한 확인소송을 하고 매도인에게는 물품대금지급의무없음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만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인정된다면 찾아온 물품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매도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을 해놓아야 할 것이다.

개설은행은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가 불일치할 경우 서류를 반환하던지 아니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적서류와 관련하여서는 운송인에게 L/G를 제시하고 물품을 찾아왔으므로 운송인에게 B/L원본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남아 있다. 이 의무는 신용장과는 별개의 운송인과의 화물의 권리증권인 B/L과 관련된 문제로서, L/G를 발행한 은행은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운송인에게는 B/L을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TIP

물품대금지급정지가처분신청

원래 신용장관련 대금에 대하여서는 가집행을 선고하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신용장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이기 때문에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므로 신용장을 신뢰하고 행동하는 선의의 제3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신용장 방식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을 정식 통관하기 전에 물품검사를 하여 수량부족, 품질불량이 확인되면 즉시 물품대금 지급을 막기 위해서 법원에 신용장 개설은행을 상대로 물품대금지급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상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용어

Letter of Guarantee L/G(수입화물 선취보증서)

수입지에 선적서류 원본보다 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 수입업자가 서류도착 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입화물을 찾으려고 할 때 신용장개설은행이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Nego (매입)

수출업자가 수출통관 과정을 거쳐 선적을 완료하고 요구되는 제반 운송서류를 갖추어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외국환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이 환어음을 할인하여 사주는 행위를 말한다.

Q36 신용장사기 지급거절된 수입물품의 반송

사례

수출자가 신용장에 명시된 선적일이 지나서 선적을 했고 폐사는 이를 이유로 지급거절을 개설은행에 통지하였으며, 개설은행은 최종적으로 지급거절통지를 수출자에게 하였다.

이에 따라 폐사는 부산항에 하역된 2컨테이너 제품을 인도로 다시 반송코자 한다. 그런데, 반송하려고 하니 선박회사는 B/L 없이는 인도로 반송할 수 없다고 하고, 개설은행은 대금지급거절을 한 상태이므로 B/L 서류를 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두 컨테이너를 인도로 반송시킬 수 있는지?

A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지급거절을 한 경우에는 도착된 물품은 매수인의 물품이 아니다. 물품을 가져갈 것인지 가져가지 않을 것인지 여부는 매도인의 몫이다.

은행이 지급거절통지를 할 때는 매도인에게 제출된 서류(선하증권포함)가 매도인의 임의처분 하에 있음을 알리게 된다. 따라서 그 후에는 매도인이 자신의 물품을 반송하던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전매하던지 알아서 할 일이다. 단지 반송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동의서를 발급해주는 정도로 협조를 하면 된다.

이때 수입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하여 반송하는 경우에는 별도 수출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않고 세관장의 확인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TIP

제19조(수출입승인의 면제)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등으로서 외교관이나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거나 입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등
 - 가.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물품 등으로서 정상적인 수출·수입 절차를 밟아 수출·수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등
 - 나.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된 수출 또는 수입에 부수된 거래로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
 - 다.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
 - 라. 무상(무상)으로 수출·수입하여 무상으로 수입·수출하거나, 무상으로 수입·수출할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등
 - 마.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거나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 등
 - 바.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 등이거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따로 수출·수입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 등
 - 사.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
3. 외국환 거래 없이 수입하는 물품 등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등
4.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를 위하여 반출하는 원자재, 시설재 및 장비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

(출처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806호 2009.11.02 일부개정)

Q37 신용장사기 위조된 서류에 대하여 신용장 대금 지급정지 가처분신청

사례

중국에서 수입하기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는데 은행을 통하여 내도된 서류가 위조된 선하증권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일단은 법원에 지급정지 가처분신청을 해놓았지만 nego은행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문이 왔으며, 국내의 개설은행에서는 100% 개설은행이 패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A

은행에서는 서류를 문면 상 검토할 뿐이지 그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개설은행의 말대로 100% 패소할 것이다. 원래는 신용장대금에 대하여서는 법원의 가처분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보여져 아마도 개설은행이 한국 법원에 가처분 취소신청을 하면 취소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단은 시간은 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이 그 돈을 다 소진해버리거나 잠적해버리기 전에 중국의 공안당국에 형사고발을 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은행의 서류검토의무와 관련된 UCP조항

제14조 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서류심사의 기준)

- f. If a credit requires presentation of a document other than a transport document, insurance document or commercial invoice, without stipulating by whom the document is to be issued or its data content, banks will accept the document as presented if its content appears to fulfil the function of the required document and otherwise complies with sub-article 14 (d).
- f. 신용장에서 누가 서류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그 정보의 내용을 명시함이 없이 운송서류, 보험서류 또는 상업송장 이외의 다른 어떠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한다면, 그 서류의 내용이 요구되는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밖에 제14조 (d)항에 부합하는 한 은행은 제시된 대로 그 서류를 수리한다.

Q38 신용장사기 선하증권 원본을 수입상에게 직송하도록 한 신용장

사례

당사는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상으로, 얼마 전 파나마 수입상과 칼라 TV 10,000 대를 일람불 신용장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용장은 통지은행을 통하여 당사에 도착되었는데, 신용장상의 선하증권과 관련한 내용은 “Full set of clean on board Bill of Lading made out to King Power Co.”라고 되어 있었고, Special Instruction란에는 “One set of Original Shipping Documents must be sent to Account by Courier Service”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당사는 신용장을 받고 물품을 선적한 후 네고은행에 네고를 원료하였지만 개설은행은 서류상의 허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에 따라 당사는 선하증권 원본을 되돌려 밤고, 화물을 찾으려고 운송회사에 연락을 하였더니, 수입상이 이미 물건을 갖고 도망을 친 이후이어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의 해결방법은?

A

신용장은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수익자(통상 수출자)에게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신용장조건에 일치하게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이 독립적으로 지급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서류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의뢰인(통상 수입자)과는 무관하게 수익자에게 독립적인 지급의무를 갖는다. 개설은행은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만일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서류들을 그대로 수익자에게 반송하면 개설은행으로서의 의무는 다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는 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거절한 것이며 제시된 서류를 수출자에게 반송한 것이다.

본 사례에서는 수출자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선하증권의 원본 한부를 수입자에게 직접 송부를 하였고 더구나 선하증권의 consignee가 수입자로 되어 있으므로 수입자는 은행과는 무관하게 물품을 찾아갈 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은행이나 선박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입장이며, 오직 수입자에게만 그 책임 즉 물품을 수령해갔으니 대금을 지급하라고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수입자가 물품을 찾아 잠적해 버렸기 때문에 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

TIP

1. 신용장 상의 독소조항

신용장의 내용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이행하기 어려운 문구 즉, 독소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상에게 이를 amend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amend된 신용장을 받고 선적을 해야 한다. 정정 요구시 주의할 점은 수입상의 약속은 신용장과는 별개이므로 반드시 개설은행으로부터 서면으로 amend가 내도되어야 한다.

선하증권 원본을 별도로 직접 송부해주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꼭 선하증권상의 consignee를 개설은행 지시식으로 해두어야 한다. 그래야 수입상이 은행의 동의없이는 물품을 찾아갈 수 없게 된다. 특히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consignee를 은행으로 해 두어야 한다.

또한 선적 전에 수입상이나 그가 지시하는 자의 검사보고서나 approval을 요구하는 신용장 조건은 가능한 피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오더를 받아 제품을 생산하고도 선적을 못해 네고가 불가능해지는 사태를 초래 할 수 있다.

2. 신용장의 주요 독소조항의 예

- Certificate issued by Korean Port Authorities at loading port
- Certificate from the carrier, master, or their agents issued after the date of sailing of the carrying vessel from the port of loading
- Bill of Lading issued by at the port of loading
- Bill of Lading showing shippers load and count not acceptable
- Fax transmission report is accompanied the original documents
- Relevant postal receipt is accompanied the original documents
- Relative courier receipt is accompanied the documents

용어

amend 정정 신용장 조건을 변경하는 것

consignee 수하인 운송계약에 있어 물품을 받는 자

approval 승인

Q39

신용장사기
운송서류 위조

사례

선하증권을 위조하여 매입 후 잠적

프랑스 수출상은 고풋탄 5,110발을 CIF조건으로 한국으로 수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주문한 물품이 아닌 고철을 선적한 후 선하증권을 위조하여 매입(네고)을 하였다. 매입은행은 서류검토한 결과 선적이 지연되었고, 송장가격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발행은행에 통지하였고, 발행은행은 수입상에게 지급여부를 문의하였다. 수입상은 선적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출상이 서류를 위조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잠적한 사실을 알고, 수입상은 상기 통지해 온 하자사항 이외에 도착항, 수화인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고자 발행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A

본 건의 경우는 수입상이 수출상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이 이루어져 발생한 사기사건이다.

본 건에서 수입상이 지급지시를 하였고,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차로 하자사항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용장거래의 기본 메카니즘을 무시한 것이다.

신용장거래에서 수익자인 수출상에 대한 지급여부는 전적으로 은행이 판단할 문제이다. 통상 발행은행은 하자서류를 발견할 경우 수입상에게 수리여부를 문의하여 수입상의 의사에 따라 주는 것이 관례이며, 본 건에서는 수입상이 서류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지시를 하고 물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은행의 과실은 없다.

또한 발행은행이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에는 한번에 모든 하자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이미 매입은행이 지적해 온 하자사항은 불문에 부치기로 하고 대금지급을 한 후에, 후일 다시 다른 하자내용을 이유로 대금 거절을 할 수는 없다.

수출상은 신용장을 받으면 신용장 내용과 매매계약에서 명시된 내용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신용장 내용에 독소조항이 있는지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신용장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TIP

컨테이너 운송에서 운송인은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shipper의 신고내용에 의존하여 선하증권 상에 내용물의 명세를 기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선하증권 상 물품명세가 기재된 곳에 "이곳에 기재된 내용물들은 운송인이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고 shipper가 그러한 내용물이 있다고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소위 부지약관을 삽입하여 두고 있다. 수출상이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여 선하증권과 상이한 물품을 적입하여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물품대금을 수취하여 잠적하는 방법의 사기사건이 발생하면 운송인은 이러한 부지약관에 의하여 면책이 되기 때문에 수입자가 고스란히 그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용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조건)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말하며 매도인이 지정한 목적항구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한다.

서명감 (List of authorized signatures, 暫名鑑)

환거래은행간의 모든 왕복문서, 지급수단 등의 진위판별을 위하여 환거래은행 간에 서명권이 있는 임직원의 서명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하여 서로 교환하게 되는데, 이를 서명감이라 한다.

부지약관 (Unknown Clause)

컨테이너선적의 경우에 shipper가 컨테이너에 물품을 적입할 때에 선박회사가 입회하여 확인하지 않으므로 선박회사는 내용물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에 선박회사에서는 컨테이너 내부의 내용물에 대하여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구를 의미하는 말이다. 통상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에는 "Said to Contain"이라는 문구를 많이 사용하고, 재래선으로 산적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Shipper's Load & Count"라는 문구가 많이 사용된다.

Q40 D/A 사기 품질하자를 이유로 대금결제 거부

사례 1 물품수령 후 품질하자를 이유로 잔금 결제거부

어망을 제조 수출하는 J사는 모로코에 체류하는 한인 K로부터 커미션 5%를 지급해 주면 수출을 주선해 줄 수 있다고 했다. J사는 K씨와 대금결제조건으로 50%는 At Sight L/C로 하고 나머지는 D/A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화 8만불 어치를 선적하였다. J사는 대금결제일만 기다리고 있던 차에 J사로부터 모로코 수입상이 색상이 변하고 제품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잔금지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고 대체품을 보내주겠다는 등 클레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수입상은 상식 밖의 주장만 거듭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사례 2 품질하자를 이유로 결제거부

방직업계 시황을 낙관하고 기계를 수입하였던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동남아 사태로 불황이 겹쳐 물품대금 지급이 어렵게 되자 품질불량을 트집잡아 일제히 대금지급을 거절한 사례이다. IMF이후 중국의 수십개의 방직업체가 6개의 중국 국영수입 대행업체를 통해 국내 3개 기업과 D/A조건으로 미화 2백2십만불어치의 수입 상담을 추진했다. IMF이후 수출실적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있던 국내업체들은 기계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 앞다투어 외상거래 조건을 제시했다. 선적도 무시하고 대금결제만 기다리고 있던 차에 중국업체들로부터 일제히 기계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대금지급을 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였다.

A

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위험이 매우 크다. 무역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를 하기 전이나 거래중에도 상대방에 대하여 신용조사를 행하여야 한다. 신용조사는 전문신용평가기관, 한국공관, 수출보험공사(신용정보팀), 신용보증기금(해외업무팀), P&L KOREA, NICE D&B 등을 통하여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해외 바이어들 중 첫 거래는 T/T베이스로 선지급 조건으로 거래해 신뢰감을 준 후, 현지 거래관행을 내세우며 D/A를 제안하여 수입하고는 차일피일 잔금 결제를 미루고 하자물품의 반환에도 응하지 않는 수법을 자주 쓰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IMF구제금융 사태 당시, 추심거래이건 신용장거래이건 간에 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해주지 않아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이 성행하게 되었고 그 관행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경우 전액 후지급 방식도 사용되고 조금 개선되어 반은 선지급 반은 후지급 방식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사실 무역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후지급은 매우 위험한 방법이다. 예전에는 본지점 간의 거래나, 신시장 개척목적으로 소량의 시험수출할 때에나 사용되던 방법이다.

D/A조건도 실제로 외상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은행에서 Clean하게 Nego하였다고 하더라도 만기일에 수입업자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에는 Nego한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대와는 가능한 D/A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At Sight L/C를 고집하기 곤란한 경우는 D/A조건보다는 가능한 Usance L/C를 최후의 양보선이라고 보고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특히, 부득이 D/A 또는 D/P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용과 평판 등에 대한 주변조사를 최대한 실시함과 동시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필히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TIP

T/T 혹은 추심결제방식(D/P, D/A)에 의한 수출시 수입상 check list

아무리 완벽한 신용조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출거래를 하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반드시 외상수출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수출보험에 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T/T 혹은 추심결제방식(D/P, D/A)에 의한 수출시 수입상 check list는 다음과 같다.

- ① 상대 수입상이 필요이상 말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 ② 상대 수입상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납기를 독촉하지는 않는가?
- ③ 독촉하는 이유가 타당한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 ④ 상대 수입상이 거래하는 주요 은행을 잘 알고 있는가?
- ⑤ 상대 수입상의 주거래선 중 최소한 2곳을 알고 있는가?
- ⑥ 소규모 거래를 몇 차례 해오던 수입상이 갑자기 대량구매를 급히 요청해오는 경우는 아닌지?

참고

P&L KOREA 02) 2201-5200 <http://www.pnlkorea.com>

미국에 본사를 둔 P&L은 전 세계를 하나의 Network로 구성하여 전세계 특수 전문 정보를 조사해 드립니다. 해외 부실 채권의 경우, 정확한 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부실 채권 회수 서비스도 해주고 있다. P&L KOREA는 1998년 11월 2일 설립되어 외국인, 외국기업, 해외 교포에 대한 신원조사, 신용조사, 재산 조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P&L은 국내 대기업의 수출 대금을 깊지 않고 2년 동안 잠적한 홍콩의 바이어를 2주만에 찾아서 원벽한 재산 조사를 마쳤고, 정부 투자기관에 접근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사취하려던 가짜 미국 변호사를 적발하였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한국의 기업에게 거액을 투자하겠다는 것을 미끼로 선불을 요구하던 미국의 투자 회사가 사실 회사라는 것도 밝혀냈다.

P&L 홈페이지는 무역인들을 위하여 해외 바이어 리스트를 매일 Update하고 있고, 현재 미국, 캐나다, 중남미 지역에서 활동하는 가짜 은행, 가짜 투자회사들에 관한 정보 수집을 완료했다. 이 정보는 관련국 정부의 확인을 마쳤다. 현재 'Trade Site' 하단에 게재 중이다. P&L에 의하여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이 Database는 그들이 발견되는 대로, 관련국 정부의 확인 후 Update될 예정이다. 그 외 무역인들을 위한 P&L만의 독창적인 전문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

수출보험공사(신용정보팀) <http://www.keic.or.kr>

신용보증기금(해외업무팀) <http://www.kodit.co.kr>

(주)나이스디앤비(NICE D&B) 02) 2122-2500 <http://www.nicednb.co.kr>

Dun & Bradstreet (D&B)는 1841년 설립되어 미국 뉴저지의 본사를 중심으로 전세계 140여 개국의 지사 및 에이전트에서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 신용 정보 회사이다.

67년 역사의 D&B는 전세계 1억 4천 만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업자료의 분석기법을 이용한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의 세계적인 표준을 확립하고 있다.

NICE D&B는 1995년 D&B한국지사로 시작하여, 2002년 10월 국내 최고의 신용 평가 기관인 한국신용정보(www.nice.co.kr)가 D&B의 국내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우리나라의 한신정, 일본의 TSR, 미국의 D&B가 제휴하여 **(주)나이스디앤비**를 설립하였다.

· 신용정보 서비스(Credit Service) 및 국가분석서비스(Country Risk Review)

용어

at sight (일람출급, 一覽出給)

어음이 지금인에게 제시되는 날이 만기가 되는 것을 말한다. 수출입거래에서 수입자에게 일람출급어음이 내도하면 "일람 즉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usance L/C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 어음인 경우.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자기 신용으로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는 했으나 화물의 도착과 동시에 대금지불을 못하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할 때 수출업자의 양해를 얻어 일람 후 30일, 60일 등과 같이 기한부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한다.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인수인도조건

수출자가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하여 주심은행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제시하면 수입자는 어음상에 "Accept"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하고 환어음을 인수. 주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선적서류를 인도하며, 주심은행은 어음의 지급만기일에 어음지급인(수입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주심의뢰 은행에 송금하면 수출자가 대금을 영수하는 거래방식이다.

VI 중재와 클레임 제기절차

Q41	중재란?	126
Q42	소송과 비교하여 무슨 장점이 있는지?	130
Q43	계약서 작성시 중재조항 내용은 어떻게?	132
Q44	표준중재조항에 반대할 경우 대처 방법은?	134
Q45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138
Q46	뉴욕협약	140
Q47	중재판정 취소는 가능한지?	142
Q48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클레임 해결 방법은?	146
Q49	알선을 활용하려면?	148
Q50	클레임을 제기받을 때와 제기할 때 대처 방안은?	153

Q & A

Q41

중재 중재란?

사례

분쟁해결조항 없이 계약서를 작성 체결해오다가 작년 독일기계제작회사와 수입계약 체결하여 기계를 수입하였는데 설치 이후 기계가 하자가 발생하여 독일회사에 클레임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하다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중간에 포기한 경험이 있었다. 최근에 미국바이어와 국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분쟁해결조항으로 중재조항을 삽입할려고 하는데 중재란 무엇인가?

A

중재(Arbitration)란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 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중재이다.

중재의 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이며 중재합의가 있어야 중재신청이 가능하다.

TIP

중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중재신청서 양식

중재신청서

신청인 ABC설업(주)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11-1 대한통운빌딩 1306호
대표자 : 대표이사 흥길동
전 화 : 051-441-7036 팩스 : 051-441-7039

〈 대리인 :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
대리인 : 김삿갓 (주민등록번호 : 790723-1234567)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11-1 대한통운빌딩 1306호
전 화 : 051-441-7038 팩스 : 051-441-7039

피신청인 XYZ Co., Ltd.

주 소 : 2435, Shimoura, Amagi City, Fukuoka Province, Japan
대표자 : Mr. Tsuguo Minakata
전 화 : 81-794-12-3456 팩스 : 81-794-12-7890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앤화 9,5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2002년 10월 24일부터 이 중재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같은 중재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원 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중재신청이유

- (1) 신청인은 한국의 자동차부품 및 산업기계 제조회사인 ABC실업(주)이며, 피신청인으로부터 본건 관련 기술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입니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음식물쓰레기처리와 관련한 기술도입계약을 2002. 6. 1.에 체결하였으며 기술료를 2회에 걸쳐 엔화 9,500,000엔을 지급하였다.(갑 제1호증 계약서 및 갑 제2호증 송금증서)

(3) 한국정부의 기능검사합격 조건으로 본 계약은 체결되었으나 불합격판정을 받았고,(갑 제4호증 품질검사서) 신청인은 2002년 7월 23일 피신청인 입회하에 기능 검사를 실시한바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확인서)

(4) 신청인은 본건 해결을 위하여 피신청인에게 반원기술료 9,500,000엔 중 5,000,000엔을 2002년 10월 24일까지 분할 상환하라는 서신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응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서신)
또한 본 기술도입계약서에서는 분쟁발생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갑 제1호증 계약서)

(5)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체결한 기술계약 해제와 함께 기자급한 기술료 엔화 9,500,000엔 반환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합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계약서
갑 제2호증	송금증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송장
갑 제4호증	품질검사서
갑 제5호증	확인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각 서신

신청인 ABC실업(주)
대표이사 흥길동 (인)

대한상사중재원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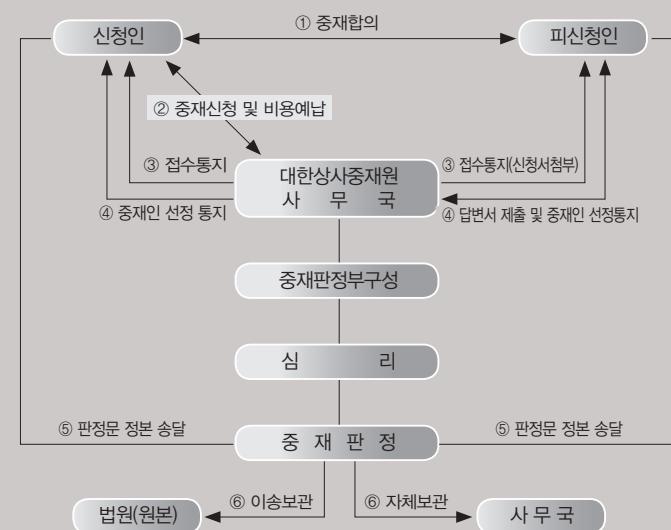
1) 중재신청서 접수 시 구비서류

1. 중재신청서
 2. 중재합의를 인증하는 서면 또는 계약서
 3.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6. 소정의 중재비용(중재자원 홈페이지(www.kcab.or.kr)에서 중재비용 검색 가능)

2) 중재신청서 제출 부수

중재신청금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 3부, 2억원을 초과한 경우 5부 제출한다.

중재절차



Q42

중재
소송과 비교하여 무슨 장점이 있는지?

사례

작성하려는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에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갑의 관할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소송 대신에 중재조항을 삽입하자고 제의해 오는데 중재로 변경할 경우 소송과 비교하여 차이점과 무슨 장점이 있는지?

A

무역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송보다는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중재와 소송제도를 비교하여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 1) 중재계약의 자율성
- 2) 단심제
- 3) 신속한 분쟁해결
- 4) 저렴한 중재비용
- 5) 국제적인 효력
- 6) 전문가에 의한 판단
- 7)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 8) 충분한 변론기회 보장
- 9) 심리 비공개
- 10) 민주적인 절차 진행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 1)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의 결여
- 2) 상소제도의 결여이다.



중재법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 중재가 좋은 이유

- 1) 시간이 절약된다.
 - 3심으로 시간을 끄는 소송과 달리 단 한번의 중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평균 5~6개월(신속절차로 진행하는 1억원이하는 2개월)이면 사건이 종결된다.
- 2) 효력이 국내·외에서 인정된다.
 -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중재법 제35조).
 - 소송과 달리 해외에서도 집행이 보장된다(뉴욕협약).
- 3) 비용이 저렴하다.
 - 특히 소액사건은 1심 소송비용보다 최고 55%까지 저렴하다.
 -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 4) 전문가에 의한 판정이 가능하다.
 - 법조계, 실업계, 학계 등 전문직 종사자 등에 의해 현실성있는 판정을 기대할 수 있다.
- 5) 비밀이 보장된다.
 -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영업기밀이 노출되지 않고, 사생활도 보호받을 수 있다.
- 6)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
 -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한 변론기회가 주어지므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은 물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2. 중재제도에 대한 오해

- 1) 소송하기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중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중재판정이 이루어지면 법원 확정판결효력이 인정되며, 또 다시 소송으로 해결할 수 없다.
- 2) 상사간의 분쟁해결만 가능하다.
 - 정부, 공공기관, 개인 간의 분쟁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3) 국제사건(무역)에만 적용된다.
 - 국내·외의 모든 거래가 해당된다.
 - 무역, 건설, 부동산, 물류, 금융, 보험 등 모든 거래에 적용될 수 있다.
 - 남북경제교류 관련 상사분쟁도 남측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 4) 소송에 비해 결과예측이 어렵다.
 - 법률에 근거해 판정하므로 소송과 차이가 없다.

[관련 중재 자료]	1. 대한민국 중재법	2. KCAB 중재규칙	3. KCAB 국제중재규칙
	4. ICC 중재규칙	5. 중국 중재법(1995)	6. 영국 중재법(1996)
	8. 워싱턴협약	9. UNCITRAL 모델중재법	7. 뉴욕협약

〈상기 자료 출처〉

http://www.kcab.or.kr/service/kcab_kor/medsharebrd/1000?sb_clsf=1&sNum=1&dNum=0&pageNum=5&subNum=2

Q43 종재 계약서 작성시 종재조항 내용은 어떻게?

사례

일본과 큰 액수의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려던 A씨는 예전 일본의 다른 기업인 C사와의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던 때를 상기했다. 그때 당시 계약서에 종재조항만 있었어도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을 후회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계약에서 만큼은 꼭 종재조항을 넣기로 생각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A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한다는 합의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계약서에 미리 종재조항을 삽입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현존하는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하는 합의이다. 전자를 arbitration agreement(종재조항)라고 하고, 후자를 submission(중재부탁합의 또는 종재부탁계약)이라고 한다.

중재의 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이며 종재합의(조항)가 있어야 종재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A씨의 경우에는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즉 종재조항)가 있을 경우에 종재 신청이 가능하다.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종재조항의 내용에는 필수적으로 3대 요소가 들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종재를 행할 종재지, 종재기관 및 적용할 준거법이 필수요소이며 선택적 기재 요소로는 종재인의 수, 종재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 종재언어 등이 있다.

TIP

대한상사중재원 표준종재조항

표준종재조항이라 함은 오늘날 대부분의 주요국가의 상설중재기관에서는 자신들의 종재기관에서 종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재조항을 만들어 이를 표준화하고 이 서식을 당사자가 계약서 중의 한 조항으로서 삽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이를 표준종재조항이라고 한다.

참고

1. 간단한 국내 종재조항의 예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종재규칙에 따라 종재로 최종 해결한다."

2.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종재조항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s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종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종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종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위의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종재조항은 분쟁발생시 종재장소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종재합의의 유효성 혹은 종재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작성된 것으로,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종재조항이다.

표준종재조항을 삽입할 경우의 장점으로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여기서 내려진 종재판정은 외국에서도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업체들에게는 매우 유리하다고 할 것이다. 그 외에도 표준종재조항이 없을 때와 비교해 볼 때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종재조항이 없다면 상사분쟁 발생 시 당사자 합의가 안되면 소송을 거쳐야하는데 그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국가 주권이라는 문제로 인하여 자국판결을 상대국에서 승인이나 집행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종재에 의할 경우 ① 분쟁이 신속, 공정하게 해결되며 ② 비용이 저렴하고 ③ 거래실정에 밝은 종재인이 판정하고 ④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⑤ 외국에서도 종재판정에 대한 집행이 보장되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Q44

중재

표준중재조항에 대해 외국기업이 반대할 경우 대처 방안은?

사례

한국 제조업체 A사는 미국 수입업체 B사에게 물품을 수출할려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유리하기 위해 분쟁해결조항으로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에 의거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제의를 하였으나 미국 수입업체 B사는 미국중재협회(AAA)에서 중재로 해결하고자 수정 제의하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해와 합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때 미국 수입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A

모든 계약서에 분쟁해결조항으로 표준중재조항을 넣도록 상대방을 잘 설득시켜야 한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을 거부할 경우에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누어 중재조항을 작성하여야 편리하다.

첫째, 피신청인주의(혹은 신청인주의)중재조항과
둘째, 제3국 국제중재의 대표격인 ICC중재조항으로 제시하여 합의를 하도록 권유하여야 하는데,

첫째 방법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면 중재신청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신청인주의 중재조항으로, 반대로 외국기업이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면 피신청인주의 중재조항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켜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면 유리하다.

참고

피신청인주의 중재조항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국가와 중재기관(중재법규)에서 중재로 해결하자는 중재조항

"All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or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respondent (a)under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b) under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Japan.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피신청인 국가에서 중재에 부탁되며, 중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르고 중재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일본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피신청인주의 중재조항을 활용할 경우 피신청인이 있는 국가, 중재기관, 중재규칙에 의거 중재가 진행하기 때문에 특히 중재판정 이후 강제 집행할 때에도 피신청인 재산이 있는 곳이라 편리한 점이 있다.

신청인주의 중재조항

신청인이 거주하는 국가와 중재기관(중재법규)에서 중재로 해결하자는 중재조항

"All disputes that may arise under or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claimant (a)under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b) under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if the arbitration is to be held in Japan.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신청인의 국가에서 중재에 부탁되며, 중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르고 중재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경우에는 일본중재협회의 상사중재규칙에 따른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가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신청인주의 중재조항은 신청인이 있는 국가, 중재기관, 중재규칙에 의거 중재가 진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확률이 높은 거래인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중재조항이며 특히 중국기업과의 거래 시에 필요로 중재조항이다.

세계 주요국가 중재기관 및 사이트

International

-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www.iccwbo.org/court/arbitration/
-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t the Hague
www.pca-cpa.org/
Provides UNCITRAL arbitration rules; court procedures and fee schedule.
-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 Arbitration Institute
www.sccinstitute.com/uk/Home

Africa

- Egypt: Cairo Regional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ww.crcica.org.eg
- Nigeria: Lagos Regional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ww.rcicalagos.org/
- South Africa: Commission for 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South Africa)
www.ccma.org.za/

Asia-Pacific

- Australian Centr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www.acica.org.au
-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www.cietac.org/index.cms
- 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www.hkiac.org/content.php
- Indian Council of Arbitration
www.ficci.com/icanet/
-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
www.jcaa.or.jp/e/index-e.html
-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www.kcab.or.kr/servlet/kcab_adm/memberauth/5000
- Mongolian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www.mongolchamber.mn/
-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www.siac.org.sg
-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www.viac.org.vn/en-US/Home/default.aspx

Europe

- Austria: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of the Austrian Federal Economic Chamber
portal.wko.at/wk/startseite_dst.wk?angid=1&dstd=8459
- Czech Republic: Arbitration Court at the Economic Chamber of the Czech Republic
www.arbcourt.cz/en_index.php
- Danish Arbitration
www.voldejtsinstituttet.dk/dk/Service/English
- England: 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www.lmaa.org.uk/

France: Arbitration Chamber of Paris

www.arbitrage.org/us/index_us.htm

German Institution of Arbitration (DIS)

www.dis-arb.de/

Hungary: Court of Arbitration at the Hungar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site available in Hungarian only]

www.mkik.hu/index.php

Italy: Chamber of Arbitration of Milan

www.camera-arbitrale.it/index.php?lng_id=14

Netherlands Arbitration Institute

www.nai-nl.org/en/

Romania: Court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t the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Romania and Bucharest

arbitration.ccir.ro/

Russia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urt Under the R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www.tpprf-mkac.ru/reglamenteng.php

Sweden: Stockholm Chamber of Commerce ? Arbitration Institute

www.sccinstitute.com/uk/Home/

Swiss Arbitration Association

www.arbitration-ch.org/

Ukraine: Ukraini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urt and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www.ucci.org.ua/arb/

United Kingdom: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www.lcia-arbitration.com

Middle East

Bahrai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www.bahrainchamber.org.bh/en/Default.aspx

Lebanon: Lebanese Arbitration Center

www.ccib.org.lb/Arbitration/Services.aspx

United Arab Emirates: Abu Dhabi Commercial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Centre

www.adcci.gov.ae:90/public/adccac/index.html

North and South America

Argentina: Arbitration Chamber of the Cereals Exchange [site available in Spanish only]

www.cabcbue.com.ar/

Canada: Arbitration and Mediation Institute of Manitoba, Inc.

www.aimim.mb.ca/

Chile: Santiag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www.camsantiago.com/en/index.htm

Mexico, Arbitration Center of

www.camex.com.mx/english

United States: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www.adr.org

Uruguay: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Services

www.cncs.com.uy/?setlang=en

Q45

중재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사례

국내A건설회사는 B전문건설회사와 건축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별조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한다”라는 중재조항이 들어 있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일부 공사설계변경 등이 발생하여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는데도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자 B전문건설회사가 중재조항도 있는 줄도 모르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계약당사자가 특정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가 된 사건은 법원이 관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상대방은 반드시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중재합의 존재”的 항변을 하면 소는 각하된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특정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참고

직소금지(소송배제)의 효력

직소금지효력이란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합의의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은 중재합의의 존재를 들어 소송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분쟁을 중재절차에 회부하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법원은 중재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청에 따라 사건을 중재에 회부하여야 하는 효력을 말한다. 위와 같이 소송절차를 방해하는 주장을 방소항변이라 한다(중재법 제9조 제1항).

방소항변의 제출 시기는 분쟁의 본안(당사자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중재법 제9조 제2항). 이 시기를 지나 방소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중재법 제9조 (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 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합의가 부존재·무효이거나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피고는 제1항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소가 법원에 계속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개시 또는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Q46 중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뉴욕협약)이란?

사례

중재합의 효력 중 국제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 소송과 비교하여 큰 차이점이라고 하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뉴욕협약이라고 하는데 뉴욕협약은 무엇이며, 몇 개국이 가입되어 있는지?

A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New York, 1958 : 일명 “뉴욕협약”)

(1) 의의 및 현황

국제적인 상거래의 활성화 목적으로 중재판정의 강제집행의 요구를 받는 국가 이외의 국가 영토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 즉 외국의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UN 주도하에 국제적으로 체결한 다자간 조약으로 뉴욕협약이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는 1973. 5. 9. 42번째로 가입하였음. 2010년 5월 1일 현재 144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1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효력

우리나라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이 외국에서도 승인되고 집행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단, 한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해서 그리고 외국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할 것을 유보선언하였다.

TIP

1. 승인·집행의 요건

- ①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어야 함
- ② 중재판정은 적법한 절차진행으로 내려져야 함
- ③ 중재판정이 판정지 국가에서 기판권(획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함
- ④ 중재판정의 내용이 집행지 국가의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함

2.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판결의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7조(집행판결)

참고

뉴욕협약가입국 현황

<2010년 5월 1일 현재 144개국>

Afghanistan	Cook Island	Iceland	Mauritania	San Marino
Albania	Costa Rica	India	Maruitius	Saudi Arabia
Algeria	Cote d'Ivoire	Indonesia	Mexico	Senegal
Antigua and Barbuda	Croatia	Iran(Islamic Rep. of)	Moldova	Serbia & Montenegr
Argentina	Cuba	Ireland	Monaco	Singapore
Armenia	Cyprus	Israel	Mongolia	Slovakia
Australia*	U. A. E.	Italy	Morocco	Slovenia
Austria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	Jamaica	Mozambique	South Africa
Azerbaijan	Czech Republic	Japan	Nepal	Spain
Bahrain	Denmark*	Jordan	Netherlands*	Sri Lanka
Bangladesh	Djibouti	Kazakhstan	New Zealand	Sweden
Barbados	Dominica	Kenya	Nicaragua	Switzerland
Belarus	Dominican Republic	Montenegro	Niger	Syrian Arab Rep.
Belgium	Ecuador	Gabon	Nigeria	Thailand
Benin	Egypt	KOREA	Norway	Trinidad and Tobago
Bolivia	El Salvador	Kuwait	Oman	Tunisia
Bosnia & Herzegovina	Estonia	Kyrgyzstan	Pakistan	Turkey
Botswana	Finland	Lao People's Democratic Rep.	Panama	Uganda
Brazil	France*	Latvia	Bahama	Ukraine
Brunei Darussalam	Georgia	Lebanon	Paraguay	United Kingdom*
Bulgaria	Germany	Lesotho	Peru	United Rep. of Tanzania
Burkina Faso	Ghana	Liberia	Philippines	U.S.A.*
Cambodia	Greece	Lithuania	Poland	Uruguay
Cameroon	Guatemala	Luxemburg	Portugal	Uzbekistan
Canada	Guinea	Macedonia Rep. of	Qatar	Venezuela
Central African Rep.	Haiti	Madagascar	Republic of Rwanda	Vietnam
Chile	Holy See	Malaysia	Romania	Zambia
China, PR	Honduras	Mali	Russian Federation	Zimbabwe
Colombia	Hungary	Malt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확대적용지역〉

- Australia : Australian Antarctic Territory, Christmas Island, Cocos(Keeling) Islands, Enderberry Island, Norfolk Island.
- Denmark : Faeroe Islands, Greenland.
- France : Comoro Islands, French Polynesia, New Caledonia, St. Pierre et Miquelon, Wallis and Futuna Islands.
- Netherlands : Netherlands Antilles.
- United Kingdom : Bermuda, Cayman Islands, Gibraltar, Gremsey, Isle of Man.
- U.S.A. : American Samoa, Canton Island, Guam, Puerto Rico, Virgin Islands, Wake Islands.
- Pakistan : 서명후 비준하지 않음.

Q47 중재 중재판정 취소는 가능한지?

사례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어떤 경위로든 알게 되었음에도 중재법 제14조에 정한 기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중재인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정한 중재인의 고지의무 절차위반이 있다는 사유로 중재판정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 는지?

A

중재판정의 효력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 (1)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정해진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의 당사자들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 자체는 중재법 제5조(의신청권의 상실)에서의 '이 법의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 (2) 중재인 등의 사무국에 대한 서면 고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직원들이 그 밖의 다른 경위로 알게 된 중재인 등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통지받은 사유에 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기피신청을 한 바 없다면, 그 중재인 등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예컨대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에 정해진 법관의 제척사유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재판정이 내려진 이후에 뒤늦게 그 중재인 등에게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사유가 있었다거나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중재인 등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중재규칙 제25조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중재법에서 정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중재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또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3) 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의 소송대리인과 같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중재인으로 선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41조 제4호의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재인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중대한 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중재판정 취소를 기각한 사례도 있다.

TIP

중재판정취소의 소 (중재법 제36조)

- ①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증명해야 하는 취소사유
 - 당사자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 무효
 -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통지 또는 본안 변론에 대한 방어권 결여
 - 중재부탁의 범위 일탈
 -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의 위반
 2. 법원의 직권 취소 사유
 - 중재대상이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을 때
 -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질서 위배
 3. 취소의 소 제기
 - 중재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또는 정정, 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기
 - 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승인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참고

중재판정의 이행과 강제집행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폐소자가 그 판정에 불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중재판정취소의 소"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중재판정에 따라 이행치 않는 승소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의 소"이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판정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판정은 외국판결과 같이 그 자체로서 집행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법원의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받아야 한다. 그리고 집행판결에 관한 소에 대하여 중재계약에서 합의한 때에는 그 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원이 관할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적용된다.

또한 중재판정에 의하여 확정된 청구권 내지 권리관계는 집행판결절차에서 다를 수 없고 그것에 관한 항변도 제출할 수 없다. 따라서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없는 한,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판결은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그대로 인용된다.
집행판결이 내려지면 그것이 미확정인 때에는 가집행의 선고에 의하여, 확정이 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중재법

제13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

- ①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체없이 이를 당사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

- ① 중재인에 대한 기피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 또는 제13조 제2항의 사유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에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인이 사임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중재판정부는 그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법원에 해당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이 법원에 계속중인 때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피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중재규칙

제25조 중재인의 부적격 고지

- ① 선정의 통지를 받은 중재인은 그 자신의 공정성 또는 독립성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체 없이 서면으로 이를 모두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사무국이 제1항의 고지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중재판정부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날로부터 또는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를 안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서면으로 중재판정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그 사정을 이유로 그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당사자의 일방이 고지 받은 사정을 이유로 그 사정이 있는 중재인을 선정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발생되는 중재인의 결원은 제26조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보충된다.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2.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鑑定)을 하였을 때
4. 법관이 사건당사자의 대리인이었거나 대리인이 된 때
5.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하였을 때. 다만,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재판정 집행판결 청구의 소장

소 장

원 고 주 소 :

피 고 주 소 :

집행판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간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 중재 제 호에 관하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년 월 일 내린 별지기재 중재판정은 이를 집행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원고와 피고사이의 중재사건 중재 제 호에 관하여 별지 기재 중재판정이 있었는데
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본소를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 중재판정문 정본 1부
2. 갑제2호증 : 정산공문 및 정산서

첨 부 서 류

위 증거서류 각 1통
소장부본 2통

2010. 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중재판정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때 사용하는 서식으로
소장을 제출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나 피신청인 거주지 관할법원에 접수시켜 된다.

Q48

클레임 제기절차

중재합의가 없는 경우 클레임 해결 방법은?

사례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이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클레임 해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A

1) 당사자간의 해결

- 클레임제기 포기(Waiver of Claim): 장래거래에 이익을 가져올 경우
- 화해(Amicable Settlement): 당사자간 자주적인 교섭과 양보로 분쟁해결

2) 제3자 개입 해결

- 알선 : 제3자 혹은 기관(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개입하여 해결되도록 조력해주는 방법(무료이며 법적구속력이 없음)
- 조정 : 제3자인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 해결(조정안에 합의하면 화해에 의한 판정으로 처리)
- 중재 :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정에 의해 분쟁 해결(중재합의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
- 소송 :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

TIP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상에서 클레임이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그러나 합리적인 선에서 우호적인 합의가 안 될 경우에, 해결하는 방법은 보통 3단계 절차가 있다고 본다.
- ① 우선 대한상사중재원의 대외알선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알선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전제로 이루 어지므로 만약 외국 상대방이 알선 절차에 응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이유를 근거로 클레임을 거절할 경우 알선을 통한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② 국제채권추심회사를 이용(서울, 고려, 미래 신용정보주식회사, P&L Korea 등)하는 방안도 있다.
 - ③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결국 전문 국제변호사를 선임하여 현지 법원에 소송 또는 중재(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를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참고

분쟁의 해결에는 보편적으로 소송이 있지만, 급격히 증대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모든 분쟁을 수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신속하고 저렴한 소송외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당사자들이 스스로 상거래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를 자주적 분쟁해결제도라 하며 여기에는 和解(화해), 調停(조정), 仲裁(중재) 등이 포함된다. 영국의 슈미토프(Clive M. Schmitoff)교수는 “중재는 소송보다 좋고, 조정은 중재보다 좋으며, 분쟁의 예방은 조정보다 좋다”고 주장하였다.

Q49

클레임 제기절차 알선을 활용하려면?

사례

국내수출기업 A사는 무역거래나 국내상거래상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서 상에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에 신속하고 공정한 클레임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1. 알선

(1) 의의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한 제3자(중재원)가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따라 개입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재조항(중재합의)이 없는 분쟁 내지 클레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원이 중간에 개입하여 해결을 도와주는 업무를 말한다.

알선은 분쟁당사자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며, 강제력은 없으나 당사자간의 비밀을 보장하고 거래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부수

중재조항의 유무에 관계없이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으로 중재원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참고 양식과 같이 분쟁당사자의 인적사항, 거래 및 분쟁발생경위, 신청금액 등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2부(대외알선의 경우 국문 1부, 영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3) 유형

① 국내알선 : 제기자와 피제기자가 모두 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인 경우의 클레임

② 국제알선

가. 대외알선 : 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이 수출입과 관련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

나. 대내알선 : 대외알선의 반대의 경우(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한국인 또는 한국기업을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

③ 비용 : 무료

④ 신청요령

– 아래 참고의 양식대로 작성하여 팩스(02) 551-2020)로 송부

– 중재원 홈페이지 신청(좌측 중간 '알선신청하기' → '온라인 신청하기'로 들어가 국내(대외)알선 양식 빙간에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자동 접수). 기타 입증 자료는 온라인으로 첨부하거나 팩스로 송부.

TIP

대외무역법 제 44조(무역거래자간 무역분쟁의 신속한 해결)

- ① 무역거래자는 그 상호 간이나 교역상대국의 무역거래자와 물품 등의 수출·수입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분쟁의 해결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역거래자에게 분쟁의 해결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그 분쟁과 관련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분쟁에 관하여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무역분쟁 당사자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仲裁) 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의 "민사소액사건 비용 지원" 제도

국내상거래상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료인 알선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민사소액사건 비용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대상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으로 5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하는 비용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전화 1577-1457).

1. 알선신청서 국문 양식

알 선 신 청 서

수신 : 대한상사중재원장
제 목 : 분쟁해결을 위한 알선 의뢰

1. 당사자 인적사항

· 제기자 : 상호 또는 이름
주 소 :
대표자 : 담당자 :
TEL : FAX :

· 피제기자 : 상호 또는 이름
주 소 :
대표자 : 담당자 :
TEL : FAX :

2. 거래 및 분쟁 경위
· 육하원칙에 맞게 기술

3. 제기자의 청구 요지

4. 손해산출내역 및 청구 금액

5. 증빙자료(상기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목록과 함께 제출)

2010. 5. .

제기자 : (상호 또는 이름)
(대표자명) (인)

2. 알선신청서 영문 양식

REQUEST FOR MEDIATION

06. May, 2010

Addressee : President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Subject : Request for Mediation

1. Information of the Parties in Dispute

* **Claimant :**
· Name of Corporation
· Address :
· Name of Representative :
· Person in Charge :
· Tel. No. : · Fax. No. :
· Agent, if Any, · Name :
· Address :

* **Respondent :**
· Name of Corporation
· Address :
· Name of Representative :
· Person in Charge :
· Tel. No. : · Fax. No. :

2. Specific Details of the Business Transaction

3. Specific of the Dispute

4. Grounds for Request
(Purport of Request, Claim or Relief Sought : Amount, if any)

5. Method of Proof
(List of documentary Evidence including Contracts, Shipping documents, Inspection documents, Payment records, etc.)

Claimant : Signature of the Claimant
Name of Representative
President
Name of Corporation

※ Enclosures : Copies of documentary evidence and A Power of Attorney, if the request is made by an Agent or Proxy

3. 민사소액사건 비용 지원

민사소액사건 비용 지원

민사소액사건, 이제는 비용 걱정말고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변호사 비용이 소장에서 판결까지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정한 변호사들이 소송을 책임집니다.
변호사 비용이 항목별로 정액화 되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보다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50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하는 비용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지원합니다.

1. 대상

-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2. 신청방법

대한변호사협회(1577-1457) 또는 변호사단에 전화 신청

3. 보수 요율표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문서 작성비	7 ~ 20만원
법정 출석비	10만원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 사건	30 ~ 50만원

· 인지대, 송달료는 본인이 실비부담 · 부가세별도

대한변호사협회 / 민사소액사건 담당변호사단 / 전화 1577-1457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1 변호사회관 5층
(지하철 2호선 서초역 8번 출구) 팩스 02) 3476-2771

Q50 클레임 제기절차 클레임을 제기받을 때와 제기할 때 대처 방안은?

■ 사례 1

국내 수출업체는 미국 수입업체에게 L/C조건으로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품질불량이라는 이유로 클레임을 제기받았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 사례 2

수입업체인 국내 A사는 T/T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중국 수출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하였으나 품질조건에 떨어지는 물품이 수입되자 클레임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클레임을 제기 받은 국내 수출업체는 품질불량이라는 클레임 원인 사실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품질불량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수입업체의 클레임진술서가 6하원칙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정기관의 보고서 자료는 첨부되어 있는지, 클레임 제기기한 내에 제기되었는지, 손해배상요구액이 과다하게 청구한 것인지 등을 확인한 후에 차기 거래나 현물배상 등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클레임에 대한 입장이나 대응 방안 내용이 기술된 답변서가 작성되었으면 법률전문가, 대한상공회의소 등 무역관련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후에 상대방에게 발송하여야 나중에 법적인 절차에 가더라도 문제가 없다.

클레임을 제기해야 할 국내 수입업체는 품질불량이라는 클레임 원인 사실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불량샘플을 상대방에게 보내 불량사실을 인정하도록 하면서 빠른 손해배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만약 중국 수출업체가 품질불량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1. 물품을 수령한 즉시 수입업체는 물품의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인된 SGS, Lloyd's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보고서(Survey Report)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2. 계약서상의 클레임제기기한 내에 클레임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사보고서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중국 수출업체에게 바로 통보하여야 한다.
3. 클레임 통보를 받은 중국 수출업체가 품질불량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클레임을 거절할 경우 한국 수입업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가. 대외알선을 신청하는 방법
 - 나. 알선에서 해결이 안될 경우 국제채권추심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 다. 마지막으로 현지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방법

참고

클레임을 제기받은 경우의 대응책

클레임을 제기 받으면 제일 먼저 클레임제기 내용을 검토하고 상대방에게 클레임 제기내용에 대한 입장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신속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전달하여야 한다.

- 가. 먼저 마켓 클레임인지의 여부 확인
- 나. 클레임 원인을 규명하여 적법한 클레임인지의 여부 판단
- 다. 클레임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경우
 - 입증자료를 검토하고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증자료 요청
 - 손해청구액이 합당한지의 여부 판단
 - 클레임 제기기간 준수 여부 확인
 - 하자의 정도가 허용비율을 초과한 것인지 확인
- 라. 물품검사는 공인검정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확인
 - 품질불량 및 수량부족 시
- 마. 최초의 답변을 보내기 전에 전문가의 자문
 -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증재원, 한국무역협회 및 법률전문가 등
- 바. 상기 내용들을 검토한 후 가능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신

검정기관

우리나라에는 한국SGS(주)(02)709-4500), 협성검정(주)(Lloyd's 대리점 02)752-2964), (주) 고려검정공사(KIMSCO, 02)774-8201), 국제검정공사(INTECO, 02)752-2126) 등 10여개 이상의 검정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클레임 제기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정

누구를 상대로 하여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 : 거래상대방, Agent, 은행, 선박회사, 보험회사 등

2. 클레임 진술서 및 제기기한

1) 클레임 사실진술서(Claim Statement) 작성 :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 거래내용, 클레임 발생경위, 구체적인 청구내용, 청구액에 대한 손실명세
 - 입증서류 : 계약서, 선하증권, 신용장, 검사보고서 등
- (* 검사보고서 : 약정시 약정된 검정기관, 불약정시 국제공인검정기관)

2) 클레임의 통지(Claim Notice)

- 클레임 제기절차 :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하면 즉시 물품의 검사와 통지 의무

(무역클레임의 제기기한 이내에 이행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클레임 서한을 상대방에게 통지)

- 국제무역거래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각종 무역계약서에 설정되고 있는 클레임 제기기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예정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면, ① 제작기간이고, ② 면책의 효과가 발생되는 면책조항이다.

가. 클레임 제기기한이 계약서 명시된 경우, 약정 기한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통상적으로 ① 하자통지(클레임통지) 및 입증자료제출기간의 설정 ② 동 기간내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으면 클레임 제기 권리포기한 것으로 본다든지 아니면 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는 클레임은 수락할 수 없다는 등의 면책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클레임 제기기한 조항 예문]

(예문1): Any claim by Buyer shall be notified to Seller within thirty(30) days after the arrival of the goods at the destination stipulated on the sales contract. Unless such notice, accompanied by proof certified by an authorized surveyor, is sent by Buyer during such above mentioned period, Buyer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any such claim.

(예문2): Claim shall be notified from Buyer to Seller fully by telex or cable in writing within thirty(30) days from actual delivery to Buyer together with a certificate of sworn surveyor or adequate samples, as the case may be.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no claim shall be entertained after changing in the state of the goods.

나. 클레임 제기기한이 계약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각국의 입법이 서로 다르다.

※ 물품 수령 → 즉시 검사 및 하자 통보 → 가장 빠른 방법 이용

가) 한국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통지 의무)

-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미국 통일상법전(UCC) 제2606조, 제2513조 : 합리적인 기간내 검사(within a reasonable time) 및 통지의무

다) 영국 물품매매법 제34조, 제35조 : 합리적인 검사기회와 기간의 경과 이전에 검사할 권리와 통지할 의무

라) 일본 상법 제526조 : 즉시 검사 곧 통지

마) 국제물품매매통일법(CISG) 제38조, 제39조 : 즉시 검사 및 통보

3. 클레임 통지방법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통신은 가능한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고 전화나 구두로 된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다.

4. 클레임의 협상

클레임이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상대방을 몰아세우기 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 가능한 상대방의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win-win 협상)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198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80)

이 협약의 당사국은,
신국제경제질서의 수립에 관하여 국제연합총회의 제6차 특별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의 광범한 목적에 유념하고,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초로 한 국제거래의 발전이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며,
국제물품매매계약을 규율하고 상이한 사회적·경제적 및 법적 제도를 고려한 통일규칙을 채택하는 것이 국제거래상의 법
적 장애를 제거하는데 기여하고 국제거래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라는 견해하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편 적용범위와 총칙

제1장 적용범위

제1조(적용의 기본원칙)

- (1)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에,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가)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나)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체약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
간의 거래나 당사자에 의하여 밝혀진 정보로부터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3) 당사자의 국적 또는 당사자나 계약의 민사적·상사적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고려되지 아니한
다.

제2조(협약의 적용제외)

이 협약은 다음의 매매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목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 (가) 개인용·기죽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
다만, 매도인이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물품이 그와 같은 용도로 구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았어야 했
던 것도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경매에 의한 매매
(다) 강제집행 그 밖의 법령에 의한 매매
(라)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마)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
(바) 전기의 매매

제3조(서비스계약 등의 제외)

- (1)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본다. 다만,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 또는 생산에 필
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협약은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의 주된 부분이 노무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있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제4조(적용대상과 대상외의 문제)

- 이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한다. 이 협약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 특히 다음과 관련이 없다.
(가)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나)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

제5조(사망 등의 적용제외)

이 협약은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에 의한 적용배제)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고, 제12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그 적
용을 배제하거나 효과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총 칙

제7조(협약의 해석원칙)

- (1) 이 협약의 해석에는 그 국제적 성격 및 적용상의 통일과 국제거래상의 신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
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제8조(당사자 진술이나 행위의 해석)

- (1) 이 협약의 적용상,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당사자의 의도를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2)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교섭,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
사자의 후속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관습과 관행의 구속력)

- (1)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
(2)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관행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의 계약 또는 그 성립에 목적으로 적용되는 것
으로 본다.

제10조(영업소의 정의)

- 이 협약의 적용상,
(가) 당사자 일방이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이나 그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에 알려거나
예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영업소로 된다.
(나) 당사자 일방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를 영업소로 본다.

제11조(계약의 형식)

매매계약은 서면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입증될 필요가 없고, 방식에 관한 그 밖의 어떠한 요건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매매
계약은 증인을 포함하여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입증될 수 있다.

제12조(계약형식의 국내요건)

매매계약,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청약·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이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제2편은 당사자가 이 협약 제96조에 따라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는 이 조를 배제하거나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서면의 정의)

이 협약의 적용상 「서면」에는 전보와 텔레스가 포함된다.

제2편 계약의 성립

제14조(청약의 기준)

- (1)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제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 (2)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안은 제안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제15조(청약의 효력발생)

- (1)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2)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경우에 회수될 수 있다.

제16조(청약의 취소)

- (1)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철회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 (2)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은 철회될 수 없다.
 - (가) 승낙기간의 지정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또는
 - (나) 상대방이 청약이 철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대방이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제17조(청약의 거절)

청약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거절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제18조(승낙의 시기 및 방법)

- (1)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는 상대방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승낙이 된다. 침묵 또는 부작위는 그 자체만으로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 (2) 청약에 대한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기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 등 거래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
- (3)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나 관행의 결과로 상대방이 청약자에 대한 통지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 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행위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9조(변경된 승낙의 효력)

- (1)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또한 새로운 청약이 된다.
- (2) 승낙을 의도하고 있고,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는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승낙이 된다. 다만, 청약자가 부당한 자체없이 그 상위(相違)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러한 취지

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약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낙에 포함된 변경이 가하여진 청약 조건이 계약 조건이 된다.

- (3) 특히 대금, 대금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당사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범위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부가적 조건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제20조(승낙기간의 해석)

- (1)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전보가 발송을 위하여 교부된 시점 또는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 서신에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청약자가 전화, 텔레스 그 밖의 同時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
- (2) 승낙기간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

제21조(지연된 승낙)

- (1)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자체 없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2) 연착된 승낙이 포함된 서신 그 밖의 서면에 의하여,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승낙이 발송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다만,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자체 없이 청약이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승낙의 철회)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

제23조(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된다.

제24조(도달의 정의)

이 협약 제2편의 적용상,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다.

제3편 물품의 매매

제1장 총 칙

제25조(본질적 위반의 정의)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은, 그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상대방에게 주는 경우에 본질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위반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고,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도 동일한 상황에서 그러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계약해제의 통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한 통지로 행하여진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

제27조(통신상의 지연과 오류)

이 협약 제3편에 별도의 명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이 협약 제3편에 따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 청구 그 밖의 통신을 한 경우에, 당사자는 통신의 전달 중에 지연이나 오류가 있거나 또는 통신이 도달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통신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28조(특정이행과 국내법)

당사자 일방이 이 협약에 따라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유사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자국법에 따라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특정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의무가 없다.

제29조(계약변경 또는 종료의정)

- (1)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다.
- (2) 서면에 의한 계약에 의한 변경 또는 종료는 서면에 의하여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 변경 또는 합의 종료될 수 없다. 다만,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신뢰한 한도까지는 그러한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30조(매도인의 의무요약)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제31조(인도의 장소)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
- (나) (가)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에 관련되거나 또는 특정한 재고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이나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
- (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

제32조(선적수배의 의무)

-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물품이 하인(荷印),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를 하여야 한다.
- (2)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 및 그 운송에서의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3)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附保)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인도의 시기)

매도인은 다음의 시기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가)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

(나)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 다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후 합리적인 기간 내.

제34조(물품에 관한 서류)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2절 물품의 적합성과 제3자의 권리주장

제35조(물품의 일치성)

- (1)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 (가) 등중 물품의 통상 사용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 (나) 계약 체결시 매도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특별한 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다만, 그 상황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하였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 (다) 매도인이 견본 또는 모형으로 매수인에게 제시한 물품의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라) 그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통상의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3)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에 물품의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모를 수 없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부적합에 대하여 제2항의 (가)호 내지 (라)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6조(일치성의 결정시점)

- (1) 매도인은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물품의 부적합에 대하여, 그 부적합이 위험 이전 후에 판명된 경 우라도,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책임을 진다.
- (2) 매도인은 제1항에서 정한 때보다 후에 발생한 부적합이라도 매도인의 위무위반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그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위무위반에는 물품이 일정기간 통상의 목적이나 특별한 목적에 맞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증 또는 특정한 품질이나 특성을 유지한다는 보증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된다.

제37조(인도만기전의 보완권)

매도인이 인도기일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그 기일까지 누락분을 인도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에 갈음하여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물품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38조(물품의 검사기간)

- (1) 매수인은 그 상황에서 실행기능한 단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 (2)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 (3) 매수인이 검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운송중에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물품을 전송(轉送)하고, 매도

인이 계약 체결시에 그 변경 또는 전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후까지 연기될 수 있다.

제39조(불일치의 통지시기)

- (1)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2) 매수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로 교부된 날부터 늦어도 2년 내에 매도인에게 제1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 기간제한이 계약상의 보증기간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제40조(매도인의 약의)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수 없다.

제41조(제3자의 청구권)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된 물품을 수령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무는 제42조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42조(제3자의 지적소유권)

- (1) 매도인은, 계약 체결시에 자신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이 다음 국가의 법에 의한 공업소유권 그 밖의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경우에 한한다.
(가) 당사자 생방이 계약 체결시에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였던 경우
에는, 물품이 전매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될 국가의 법
(나) 그 밖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
(2) 제1항의 매도인의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매수인이 계약 체결시에 그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경우
(나) 그 권리나 권리주장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기술설계, 디자인, 방식 그 밖의 지정에 매도인이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경우

제43조(제3자의 권리에 대한 통지)

- (1)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41조 또는 제42조를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2)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제1항을 원용할 수 없다.

제44조(통지불이행의 정당한 이유)

제39조 제1항과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정하여진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45조(매수인의 구제방법)

- (1)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제46조 내지 제52조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
(나) 제74조 내지 제7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청구
(2)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로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3)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제46조(매수인의 이행청구권)

- (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그 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2)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고, 그 청구가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 한한다.
(3)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매수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에게 수리에 의한 부적합의 치유를 청구할 수 있다. 수리 청구는 제39조의 통지와 동시에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제47조(이행추가기간의 통지)

- (1)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2) 매도인으로부터 그 부가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그 기간중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인도기일후의 보완)

- (1) 제49조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매도인은 인도기일 후에도 불합리하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매수인의 신급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받는 데 대한 불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은 이 협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
(2)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의 수령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요구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할 수 있다. 매수인은 그 기간중에는 매도인의 이행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할 수 없다.
(3) 특정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겠다는 매도인의 통지는 매수인이 그 결정을 알려야 한다는 제2항의 요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4) 이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매도인의 요구 또는 통지는 매수인에 의하여 수령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9조(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1)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나) 인도 불이행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2)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가) 인도지체의 경우, 매수인이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안 후 합리적인 기간 내
(나) 인도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 (1)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 (2) 매수인이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도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 (3) 매도인이 제48조 제2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이행을 수령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제50조(대금의 감액)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현실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시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적합한 물품이 그때에 가지고 있었을 가액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제37조나 제48조에 따라 의무의 불이행을 치유하거나 매수인이 동 조항에 따라 매도인의 이행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제51조(물품일부의 불일치)

- (1)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을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의 일부만이 계약에 적합한 경우에, 제46조 내지 제50조는 부족 또는 부적합한 부분에 적용된다.
- (2) 매수인은 인도가 완전하게 또는 계약에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전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2조(기일전의 인도 및 초과수량)

- (1) 매도인이 이행기 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2) 매도인이 계약에서 정한 것보다 다량의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 매수인은 초과분을 수령하거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초과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대금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매수인의 의무

제53조(매수인의 의무요약)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

제1절 대금의 지급

제54조(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하여 계약 또는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포함된다.

제55조(대금이 불확정된 계약)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를 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대의 표시가 없는 한, 계약 체결시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매도되는 그러한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56조(순증량에 의한 결정)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정하여지는 경우에,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순증량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7조(대금지급의 장소)

- (1)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소에서 매도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 (나) 대금이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와 상환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
- (2) 매도인은 계약 체결후에 자신의 영업소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대금지급에 대한 부수비용의 증가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8조(대금지급의 시기)

- (1)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 이 협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그 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를 위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
- (2)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여서만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 (3)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당시간에 합의된 인도 또는 지급 절차가 매수인이 검사 기회를 가지는 것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지급청구에 앞선 지급)

매수인은 계약 또는 이 협약에서 지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제2절 인도의 수령

제60조(인도수령의 의무)

- 매수인의 수령의무는 다음과 같다.
- (가) 매도인의 인도를 기능하게 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 및
 - (나) 물품을 수령하는 것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61조(매도인의 구제방법)

- (1) 매수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가) 제62조 내지 제65조에서 정한 권리의 행사
 - (나) 제74조 내지 제77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청구
- (2)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로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한다.
- (3) 매도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종재판정부는 매수인에게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

제62조(매도인의 이행청구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그 청구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구제를 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이행추가기간의 통지)

- (1)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 (2)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가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수령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그 기간중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다. 다만, 매도인은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로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64조(매도인의 계약해제권)

- (1)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가) 계약 또는 이 협약상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되는 경우
 - (나) 매수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매도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대금지급 또는 물품수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
- (2)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다음의 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 (가) 매수인의 이행지체의 경우, 매도인이 이행이 이루어진 것을 알기 전
 - (나) 매수인의 이행지체 이외의 위반의 경우, 다음의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
- (1)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때
- (2) 매도인이 제63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부가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 부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때.

제65조(물품형세의 확정권)

- (1)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태, 규격 그 밖의 특징을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합의된 기일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수령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이 보유하는 다른 권리를 해함이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매수인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지정할 수 있다.
- (2) 매도인은 스스로 지정하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그 상세한 사정을 통고하고, 매수인이 그와 다른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그 통지를 수령한 후 정하여진 기간 내에 다른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지정이 구속력을 가진다.

제4장 위험의 이전

제66조(위험부담의 일반원칙)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직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운송조건부 계약품의 위험)

- (1)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어 있고,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위험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교부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이 운송인에게 교부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물품이 하인(荷印), 선적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제68조(운송증매매물품의 위험)

운송증에 매도된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 체결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운송계약을 표정하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된 때부터 매수인이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시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고,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멸실 또는 훼손은 매도인의 위험으로 한다.

제69조(기타 경우의 위험)

- (1) 제67조와 제6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 매수인이 적시에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지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위반하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 (2)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여진 것을 매수인이 안 때에 이전한다.
- (3)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 물품은 계약상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0조(매도인의 계약위반시의 위험)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한 경우에는, 제67조, 제68조 및 제69조는 매수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구할 수 있는 구제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제1절 이행이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인도계약

제71조(이행의 정지)

- (1) 당사자는 계약체결 후 다음의 사유로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 (가) 상대방의 이행능력 또는 신용도의 중대한 결함
 - (나) 계약의 이행 준비 또는 이행에 관한 상대방의 행위
- (2) 제1항의 사유가 명백하게 되기 전에 매도인이 물품을 발송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취득할 수 있는 증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에게 교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이 항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물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 (3) 이행을 정지한 당사자는 물품의 발송 전후에 관계없이 즉시 상대방에게 그 정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72조(이행기일전의 계약해제)

- (1) 계약의 이행기일 전에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시간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이행에 관하여 적절한 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요건은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3조(분할이행계약의 해제)

- (1) 물품을 분할하여 인도하는 계약에서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본질적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분할부분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2) 어느 분할부분에 관한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장래의 분할부분에 대한 본질적 계약위반의 발생을 주단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해제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3) 어느 인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매수인은 이미 행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가 그 인도와의 상호 의존관계로 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당사자 쌍방이 예상했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인도 또는 장래의 인도에 대하여도 동시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절 손해배상액

제74조(손해배상액산정의 원칙)

당사자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한다. 그 손해배상액은 위반 당사자가 계약 체결시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계약위반의 가능한 결과로서 발생할 것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75조(대체거래시의 손해배상액)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해제 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체물을 매수하거나 매도인이 물품을 재매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계약대금과 대체거래대금과의 차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제76조(시가에 기초한 손해배상액)

- (1) 계약이 해제되고 물품에 시가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제75조에 따라 구입 또는 재매각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대금과 계약해제시의 시가와의 차액 및 그 외에 제74조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물품을 수령한 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시의 시가에 길음하여 물품 수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 (2) 제1항의 적용상, 시가는 물품이 인도되었어야 했던 장소에서의 지배적인 가격, 그 장소에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물품 운송비용의 차액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장소에서의 가격을 말한다.

제77조(손해경감의 의무)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그 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는 경감되었어야 했던 손실액만큼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이 자

제78조(연체금액의 이자)

당사자가 대금 그 밖의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제7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해함이 없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절 면 책

제79조(손해배상책임의 면제)

- (1) 당사자는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장애에 기인하였다는 것과 계약 체결시에 그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나 그로 인한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2) 당사자의 불이행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위하여 사용한 제3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
 - (가)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되고, 또한
 - (나) 당사자가 사용한 제3자도 그에게 제1항이 적용된다면 면책되는 경우
- (3) 이 조에 규정된 면책은 장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효력을 가진다.
- (4) 불이행 당사자는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 장애가 자신의 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불이행 당사자가 장애를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대방이 그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행 당사자는 불수령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5) 이 조는 어느 당사자가 이 협약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80조(자신의 귀책사유와 불이행)

당사자는 상대방의 불이행이 자신의 직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는 한, 상대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절 해제의 효력

제81조(계약의무의 소멸과 반환청구)

- (1)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당사자 쌍방을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면하게 한다. 해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 조항 또는 해제의 결과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계약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계약상 공급 또는 지급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2조(물품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1)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그 물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물을 청구할 권리 to 상실한다.
- (2) 제1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물품을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것이 매수인의 직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 (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8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다) 매수인이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하였어야 했던 시점 전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매각되거나 통상의 용법에 따라 소비 또는 변형된 경우

제83조(기타의 구제방법)

매수인은, 제82조에 따라 계약해제권 또는 대체물인도청구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약과 이 협약에 따른 그 밖의 모든 구제권을 보유한다.

제84조(이익의 반환)

- (1) 매도인은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금이 지급된 날부터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여야 한다.
- (2)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로부터 발생된 모든 이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가) 매수인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 (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한 상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매도인에게 대체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

제6절 물품의 보관

제85조(매도인의 보존의무)

매수인이 물품 인도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또는 대금지급과 물품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처분을 지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 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제86조(매수인의 보존의무)

- (1)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한 후 그 물품을 거절하기 위하여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그 상황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
- (2) 매수인에게 발송된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지고, 매수인이 그 물품을 거절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을 위하여 그 물품을 점유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 지급 및 불합리한 불편이나 경비소요없이 점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항은 매도인이나 그를 위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자가 목적지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이 항에 따라 물품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는 제1항이 적용된다.

제87조(제3자 창고에의 기탁)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이 불합리하지 아니하는한, 상대방의 비용으로 물품을 제3자의 창고에 임차할 수 있다.

제88조(물품의 매각)

- (1)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물품을 점유하거나 반환받거나 또는 대금이나 보관비용을 지급하는 데 불합리하게 지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매각의사를 합리적으로 통지하는 한, 적절한 방법으로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 (2) 물품이 급속히 훼손되기 쉽거나 그 보관에 불합리한 경비를 요하는 경우에는, 제85조 또는 제86조에 따라 물품을 보관하여야 하는 당사자는 물품을 매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가능한 한도에서 상대방에게 매각의사를 통지되어야 한다.
- (3) 물품을 매각한 당사자는 매각대금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매각하는 데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그 차액은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제4편 최종규정

제89조(협약의 수탁자)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가 된다.

제90조(타협정자의 관계)

이미 발효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발효하게 될 국제협정이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은 그러한 국제협정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가 그 협정의 당사국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1조(서명과 협약의 채택)

- (1) 이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의 최종일에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1981년 9월 30일까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2)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 (3) 이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날부터 서명하지 아니한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4)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92조(일부규정의 채택)

- (1) 체약국은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 제2편 또는 제3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다.
- (2) 제1항에 따라 이 협약 제2편 또는 제3편에 관하여 유보선언을 한 체약국은, 그 선언이 적용되는 편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협약 제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체약국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3조(연방국가의 채택)

- (1) 체약국이 그 현법상 이 협약이 다루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각 영역마다 다른 법체계가 적용되는 2개 이상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국가는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을 전체 영역 또는 일부영역에만 적용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새로운 선언을 함으로써 전의 선언을 수정할 수 있다.
- (2) 제1항의 선언은 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 (3) 이 조의 선언에 의하여 이 협약이 체약국의 전체영역에 적용되지 아니하고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영역에만 적용되며 또한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업소는 이 협약의 적용상 체약국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영업소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체약국이 제1항의 선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협약은 그 국가의 전체영역에 적용된다.

제94조(관련법이 있는 국가의 채택)

- (1)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법규를 가지는 둘 이상의 체약국은, 양당사자의 영업소가 그러한 국가에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을 매매계약과 그 성립에 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그러한 선언은 공동으로 또는 상호간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2) 이 협약이 규율하는 사항에 관하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비체약국과 동일하거나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법규를 가지는 체약국은 양 당사자의 영업소가 그러한 국가에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을 매매계약과 그 성립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선언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 (3) 제2항에 의한 선언의 대상이 된 국가가 그 후 체약국이 된 경우에, 그 선언은 이 협약이 새로운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제1항의 선언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새로운 체약국이 그 선언에 기담하거나 또는 상호간에 단독으로 선언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5조(제1조 제1항 b호의 배제)

어떤 국가든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이 협약 제1조 제1항 (나)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행할 수 있다.

제96조(계약형식요건의 유보)

그 국가의 법률상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입증에 서면을 요구하는 체약국은 제12조에 따라 매매계약,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의 변경이나 종료, 청약, 승낙 기타의 의사표시를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제30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 일방이 그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

제97조(협약에 관한 선언절차)

- (1) 서명시에 이 협약에 따라 행한 선언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시 다시 확인되어야 한다.
- (2) 선언 및 선언의 확인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정식으로 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 (3) 선언은 이를 행한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함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협약의 발효 후 수탁자가 정식으로 통고를 수령한 선언은 수탁자가 이를 수령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94조에 따른 상호간의 단독선언은 수탁자가 최후의 선언을 수령한 후 6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 (4) 이 협약에 따라 선언을 행한 국가는 수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정식의 통고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그 선언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철회는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날부터 6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 (5) 제94조에 따라 선언이 철회된 경우에는 그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제94조에 따라 다른 국가가 행한 상호간의 선언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98조(유보의 금지)

이 협약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99조(협약의 발효)

- (1) 이 협약은 제6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92조의 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포함하여 1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12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 (2) 10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후에 어느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경우에, 이 협약은 적용이 배제된 편을 제외하고 제6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국가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부터 12월이 경과된 다음달의 1일에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 (3) 1964년 7월 1일 헤이그에서 작성된『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1964년 헤이그성립협약)과『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통일법』(1964년 헤이그매매협약)중의 하나 또는 모두의 당사국이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이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네덜란드 정부에 통고함으로써 1964년 헤이그매매협약 및/또는 1964년 헤이그성립협약을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
- (4) 1964년 헤이그매매협약의 당시국으로서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가 제92조에 따라 이 협약 제2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선언하거나 또는 선언한 경우에, 그 국가는 이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네덜란드 정부에 통고함으로써 1964년 헤이그매매협약을 폐기하여야 한다.
- (5) 1964년 헤이그성립협약의 당시국으로서 이 협약을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는 국가가 제92조에 따라 이 협약 제3편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선언하거나 또는 선언한 경우에, 그 국가는 이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시에 네덜란드 정부에 통고함으로서 1964년 헤이그성립협약을 폐기하여야 한다.
- (6) 이 조의 적용상, 1964년 헤이그성립협약 또는 1964년 헤이그매매협약의 당사국에 의한 이 협약의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은 이들 두 협약에 관하여 당시국에게 요구되는 폐기의 통고가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협약의 수탁자는 이에 관한 필요한 상호조정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1964년 협약들의 수탁자인 네덜란드 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0조(계약에 대한 적용일)

- (1) 이 협약은 제1조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의 체약국에게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계약의 성립에 대하여 적용된다.
- (2) 이 협약은 제1조 제1항 (가)호 또는 (나)호의 체약국에게 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제101조(협약의 폐기)

- (1) 체약국은 수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정식의 통고를 함으로써 이 협약 또는 이 협약 제2편 또는 제3편을 폐기할 수 있다.
- (2) 폐기는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후 12월이 경과한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통고에 폐기의 발효에 대하여 보다 장기간이 명시된 경우에 폐기는 수탁자가 통고를 수령한 후 그 기간이 경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의 작성

1980년 4월 11일에 비엔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각 1부가 작성되었다.

그 증거로서 각국의 전권대표들은 각국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